

발간등록번호

11-1352000-000257-10

# 2014 가정위탁보호 현황보고서





## “아동최상의 이익”

대한민국 정부는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였으며 협약 비준에 의해 매 5년마다 협약 이행을 위한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정부는 각 부처의 내용을 취합해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에 대한 제3, 4차 통합 국가 보고서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했으며,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11년 10월 대한민국 제3, 4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권고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아동최상의 이익을 위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정부와 NGO, NPO 등 민간기관과 단체들이 힘을 합하여 왔으며, 이에 아동을 위한 가정위탁보호 역시 정책, 제도, 실천면에 있어서 아동최상의 이익 관점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 왔습니다.

2009년 이후 국내 보호필요아동이 감소 추세를 보이면서 가정위탁보호아동 수도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필요아동 발생 시 만 2세 미만 아동은 가정위탁으로 우선배치를 적용하면서 2012년 위탁보호 결정 시 위탁아동의 연령 1~3세 아동 비율이 3.4%에서 2014년 3.7%로 0.3%p 증가하였습니다. 이와같이 정책 및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아동의 건강한 양육 환경이 마련될 것입니다.

## “아동은 가정의 환경에서 자라나야한다”

2014년 가정위탁보호통계에 따르면 가정위탁사유로 부모의 이혼이 약 32%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아동은 부모의 보호와 긍정적인 양육 속에서 자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정체제로 인하여 가정의 환경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가정의 환경은 필요하며, 이 점에서 가정위탁보호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의 안전과 최상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이행입니다. 앞으로도 아동보호에 있어서 아동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아동의 견해를 존중함과 동시에 아동의 참여가 더욱 증진되는 가정위탁보호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고 힘을 합쳐야 합니다.

2015년 6월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관장 정필현



<b>1. 서론</b> .....	<b>11</b>
1) 주요내용 .....	11
2) 자료수집 .....	14
3) 자료분석 .....	14
<b>2.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b> .....	<b>17</b>
1) 보호필요아동 발생 및 보호조치 .....	17
<b>3. 가정위탁보호 아동</b> .....	<b>29</b>
1) 가정위탁보호 아동 .....	29
2) 신규위탁아동 .....	42
3)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 .....	50
<b>4. 위탁가정</b> .....	<b>65</b>
1) 위탁가정 .....	65
2) 신규위탁가정 .....	77
<b>5. 가정위탁 서비스 현황</b> .....	<b>89</b>
1) 지원서비스 .....	89
2) 경제적 서비스 .....	91
<b>6. 가정위탁 교육 및 홍보 현황</b> .....	<b>97</b>
1) 교육 .....	97
2) 홍보 .....	99
<b>7. 가정위탁지원센터 현황</b> .....	<b>103</b>
1) 상담원의 업무량 .....	103
<b>8. 결론 및 제언</b> .....	<b>109</b>
1) 위탁아동 .....	109
2) 위탁가정 .....	111
3) 가정위탁 서비스 .....	113
4) 가정위탁 교육 및 홍보 .....	114
5) 가정위탁지원센터 업무량 .....	114

표 2-1	연도별 보호필요아동 보호조치 .....	17
표 2-2	연도별 보호필요아동 발생사유 .....	20
표 2-3	지역별 보호필요아동 보호조치 .....	23
표 2-4	지역별 보호필요아동 발생사유 .....	25
표 3-1	연도별 위탁아동 수 .....	29
표 3-2	지역센터별 위탁아동 성별 및 연령 .....	31
표 3-3	가정위탁보호 사유 .....	35
표 3-4	위탁아동 형제배치 .....	36
표 3-5	위탁보호결정 시 위탁아동의 성별 및 연령 .....	37
표 3-6	대리양육위탁아동과 위탁부모와의 관계 .....	38
표 3-7	친인척위탁아동과 위탁부모와의 관계 .....	39
표 3-8	위탁유형별 위탁기간 .....	39
표 3-9	가정위탁보호 사유별 위탁기간 .....	41
표 3-10	연도별 신규위탁아동 수 .....	42
표 3-11	지역센터별 신규위탁아동 수 .....	43
표 3-12	신규위탁아동 성별 및 연령 .....	44
표 3-13	신규위탁아동 가정위탁보호 사유 .....	45
표 3-14	신규위탁아동 형제배치 .....	47
표 3-15	신규대리양육위탁아동과 위탁부모와의 관계 .....	48
표 3-16	신규친인척위탁아동과 위탁부모와의 관계 .....	48
표 3-17	학대피해아동의 신규위탁 .....	48
표 3-18	신규위탁아동 장애유형 .....	49
표 3-19	연도별 종결아동 수 .....	50
표 3-20	지역센터별 종결아동 수 .....	51
표 3-21	종결아동 성별 및 연령 .....	52
표 3-22	가정위탁종결사유 .....	53
표 3-23	종결사유에 따른 성별 및 연령 .....	55
표 3-24	종결사유별 위탁사유 .....	56
표 3-25	종결아동유형별 위탁기간 .....	57
표 3-26	종결사유별 위탁기간 .....	58
표 3-27	종결 후 배치 .....	59
표 3-28	종결 후 배치에 따른 성별 및 연령 .....	60
표 3-29	종결 후 배치에 따른 위탁사유 .....	61
표 3-30	종결 후 배치에 따른 종결사유 .....	62

표 4-1	연도별 위탁가정 수 .....	65
표 4-2	지역센터별 위탁가정 수 .....	67
표 4-3	위탁부모 연령 .....	68
표 4-4	위탁부모 직업 .....	69
표 4-5	위탁부모 학력 .....	71
표 4-6	위탁가정 소득 .....	72
표 4-7	위탁가정 종교 .....	73
표 4-8	위탁가정 참여 동기 .....	74
표 4-9	지역센터별 예비 일반위탁가정 수 .....	75
표 4-10	종결위탁가정 종결사유 .....	76
표 4-11	지역센터별 신규위탁가정 수 .....	77
표 4-12	신규위탁부모 연령 .....	78
표 4-13	신규위탁부모 직업 .....	80
표 4-14	신규위탁부모 학력 .....	81
표 4-15	신규위탁가정 소득 .....	82
표 4-16	신규위탁가정 종교 .....	84
표 4-17	신규위탁가정 참여 동기 .....	85
표 5-1	지역센터별 지원서비스 .....	89
표 5-2	지역센터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지원 .....	91
표 5-3	지역별 대리양육 · 친인척위탁가정 전세임대 지원 .....	92
표 5-4	지역별 가정위탁보호 아동 디딤씨앗통장 적립 현황 .....	93
표 6-1	지역센터별 교육 현황 .....	97
표 6-2	지역센터별 홍보 현황 .....	99
표 7-1	지역센터별 지원서비스 · 교육 · 홍보 업무량 .....	103
표 7-2	지역센터별 상담원 1인당 업무량 .....	104

<b>그림 2-1</b>	연도별 보호필요아동 보호조치 .....	18
<b>그림 2-2</b>	보호필요아동 보호조치 .....	19
<b>그림 2-3</b>	보호필요아동 발생사유 .....	21
<b>그림 2-4</b>	보호필요아동 발생사유(2008년, 2014년 비교) .....	22
<b>그림 2-5</b>	보호필요아동 지역별 보호조치(가정보호, 시설입소 비교) .....	24
<b>그림 3-1</b>	연도별 위탁아동 .....	30
<b>그림 3-2</b>	위탁아동 연령 .....	34
<b>그림 3-3</b>	가정위탁보호 사유 .....	35
<b>그림 3-4</b>	위탁아동 형제배치 .....	36
<b>그림 3-5</b>	위탁보호결정 시 위탁아동의 연령 .....	38
<b>그림 3-6</b>	위탁유형별 위탁기간 .....	40
<b>그림 3-7</b>	연도별 신규위탁아동 .....	42
<b>그림 3-8</b>	신규위탁유형별 위탁아동의 연령 .....	44
<b>그림 3-9</b>	신규위탁아동 가정위탁보호 사유 .....	46
<b>그림 3-10</b>	신규위탁아동 형제배치 .....	47
<b>그림 3-11</b>	연도별 종결아동 .....	50
<b>그림 3-12</b>	종결아동 연령 .....	52
<b>그림 3-13</b>	가정위탁종결사유 .....	54
<b>그림 3-14</b>	종결아동유형별 위탁기간 .....	57
<b>그림 3-15</b>	종결 후 배치 .....	59
<b>그림 4-1</b>	연도별 위탁가정 .....	66
<b>그림 4-2</b>	위탁부모 연령 .....	68
<b>그림 4-3</b>	위탁부모 직업 .....	70
<b>그림 4-4</b>	위탁부모 학력 .....	71
<b>그림 4-5</b>	위탁가정 소득 .....	72
<b>그림 4-6</b>	위탁가정 종교 .....	73
<b>그림 4-7</b>	위탁가정 참여 동기 .....	74
<b>그림 4-8</b>	종결위탁가정 종결사유 .....	76
<b>그림 4-9</b>	신규위탁부모 연령 .....	79
<b>그림 4-10</b>	신규위탁부모 직업 .....	80
<b>그림 4-11</b>	신규위탁부모 학력 .....	82
<b>그림 4-12</b>	신규위탁가정 소득 .....	83
<b>그림 4-13</b>	신규위탁가정 종교 .....	84
<b>그림 4-14</b>	신규위탁가정 참여 동기 .....	85



# 1. 서론

- 1) 주요내용
- 2) 자료수집
- 3) 자료분석





# 1. 서론

가정위탁보호사업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념을 바탕으로 친가정에서 아동이 양육될 수 없을 때 일정기간 위탁가정을 제공하여 아동을 보호·양육함으로써 적합한 가정 안에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친가정이 가족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복지서비스다. 2003년 17개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가 설치되어 가정위탁보호사업이 시작되었다.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는 위탁아동 및 위탁가정, 친부모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였다. 2004년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가 설치되어, 가정위탁보호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및 아동의 안정적 발달을 위한 서비스 지원체계 마련, 긍정적 양육환경 마련을 위한 양육보조금 및 위탁부모선정기준 강화 등 아동의 가정내 건강한 성장을 위해 노력해왔다. 가정위탁지원센터 뿐 아니라 정부에서도 보호 필요 아동의 가정 내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가정위탁의 발전 및 아동의 가정내 성장을 위한 위탁부모 및 아동,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를 초청하여 2012년 청와대 오찬 행사, 2014년 보건복지부 장관 초청 오찬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하여 위탁부모 및 종사자에게는 수고에 대한 격려와 아동에게는 용기를 북돋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정부에서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단발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가정위탁보호 현황보고서에서는 가정위탁보호사업의 현황을 비교하여 정책적 변화 및 제도 관련 효과성을 파악하고 있으며, 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가정위탁통합전산시스템의 활용을 통해 정책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및 다양한 연구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하여 보호 필요 아동의 긍정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자 한다.

## 1) 주요내용

본 보고서는 201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연도별 변화추이와 위탁아동 및 위탁가정의 위탁중현황, 신규·종결현황, 가정위탁지원센터 업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 1) 보호필요아동 발생 및 보호조치

- 연도별 보호필요아동 보호조치
- 연도별 보호필요아동 발생사유
- 지역별 보호필요아동 보호조치
- 지역별 보호필요아동 발생사유

### 2. 가정위탁보호 아동

#### 1) 가정위탁보호 아동

- 연도별 위탁아동 수
- 지역센터별 위탁아동 성별 및 연령
- 가정위탁보호사유

- 위탁아동 형제배치
- 위탁보호결정 시 위탁아동의 성별 및 연령
- 대리양육 및 친인척위탁아동의 위탁부모와의 관계
- 위탁유형별 위탁기간
- 가정위탁보호 사유별 위탁기간

## 2) 신규위탁아동

- 연도별 신규위탁아동 수
- 지역센터별 신규위탁아동 수
- 신규위탁아동 성별 및 연령
- 신규위탁아동 가정위탁보호 사유
- 신규위탁아동 형제배치
- 신규대리양육 및 친인척위탁아동의 위탁부모와의 관계
- 학대피해아동의 신규위탁
- 신규위탁아동 장애유형

## 3)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

- 연도별 종결아동 수
- 지역센터별 종결아동 수
- 종결아동 성별 및 연령
- 가정위탁종결사유
- 종결사유에 따른 성별 및 연령
- 종결사유별 위탁사유
- 종결아동유형별 위탁기간
- 종결사유별 위탁기간
- 종결 후 배치
- 종결 후 배치에 따른 성별 및 연령
- 종결 후 배치에 따른 위탁사유
- 종결 후 배치에 따른 종결사유

## 4. 위탁가정

### 1) 위탁가정

- 연도별 위탁가정 수
- 지역센터별 위탁가정 수
- 위탁부모 연령
- 위탁부모 직업
- 위탁부모 학력

- 위탁가정 소득
- 위탁가정 종교
- 위탁가정 참여 동기
- 지역센터별 예비 일반위탁가정 수
- 종결위탁가정 종결사유

## 2) 신규위탁가정

- 지역센터별 신규위탁가정 수
- 신규위탁부모 연령
- 신규위탁부모 직업
- 신규위탁부모 학력
- 신규위탁가정 소득
- 신규위탁가정 종교
- 신규위탁가정 참여 동기

## 5. 가정위탁 서비스 현황

### 1) 지원서비스

### 2) 경제적 서비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지원
- 대리양육 · 친인척위탁가정 전세임대 지원
- 가정위탁보호 아동 디딤씨앗통장 적립 현황

## 6. 가정위탁 교육 및 홍보 현황

### 1) 교육

### 2) 홍보

## 7. 가정위탁지원센터 현황

### 1) 상담원의 업무량

- 지역센터별 지원서비스 · 교육 · 홍보 업무량
- 지역센터별 상담원 1인당 업무량

## 2) 자료수집

본 자료는 17개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사례관리 중이거나, 신규 및 종결된 사례에 대해 가정위탁통합전산시스템에 입력된 자료 및 매분기 보고된 자료를 바탕으로 자료를 사용하였다.

## 3) 자료분석

가정위탁보호 아동과 신규·종결 및 위탁중인 위탁부모,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량 등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았다. 위탁아동 및 위탁부모 항목에 대해서는 유형별 빈도분석을 기본으로 하였으며, 일부항목에 대해서는 교차분석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 2.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 1) 보호필요아동 발생 및 보호조치







## 2.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 1) 보호필요아동 발생 및 보호조치

#### ■ 연도별 보호필요아동 보호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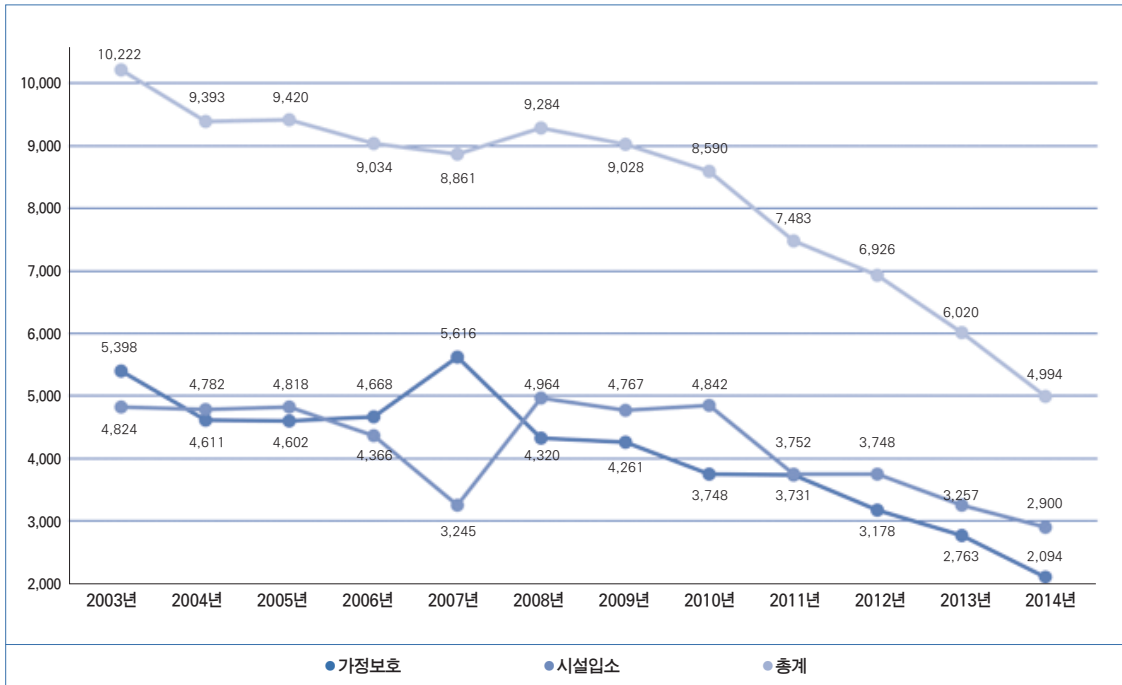
〈표 2-1〉 연도별 보호필요아동 보호조치

단위 : 명, %

구분 연도	총 발생 아동 수	귀가 및 연고자 인도	조치내용								
			계	가정 보호				시설 입소			
				가정위탁	소년소녀 가정	입양	입양 전 위탁	양육시설 등	일시보호시설	장애아동시설	공동생활가정
2014년	6,014	1,020	4,994	1,300	13	393	388	1,818	566	10	506
			100.0	26.0	0.3	7.9	7.8	36.4	11.3	0.2	10.1
2013년	6,834	814	6,020	1,749	20	478	516	1,731	801	39	686
			100.0	29.1	0.3	7.9	8.6	28.8	13.3	0.6	11.4
2012년	8,003	1,077	6,926	2,289	117	772	-	2,272	676	25	775
			100.0	33.0	1.7	11.1	-	32.8	9.8	0.4	11.2
2011년	8,463	953	7,483	2,350	128	1,253	-	2,246	862	32	612
			100.0	31.4	1.7	16.7	-	30.0	11.5	0.4	8.2
2010년	9,960	1,370	8,590	2,124	231	1,393	-	2,445	1,751	23	623
			100.0	24.7	2.7	16.2	-	28.5	20.4	0.3	7.3
2009년	10,500	1,472	9,028	2,734	213	1,314	-	2,406	1,640	35	686
			100.0	30.3	2.4	14.6	-	26.7	18.2	0.4	7.6
2008년	11,672	2,388	9,284	2,838	178	1,304	-	2,997	1,261	39	667
			100.0	30.6	1.9	14.0	-	32.3	13.6	0.4	7.2
2007년	11,394	2,533	8,861	3,378	247	1,991	-	3,189	-	39	17
			100.0	38.1	2.8	22.5	-	36.0	-	0.4	0.2
2006년	16,008	6,974	9,034	3,101	308	1,259	-	4,313	-	53	-
			100.0	34.4	3.4	13.9	-	47.7	-	0.6	-
2005년	18,468	9,048	9,420	2,322	407	1,873	-	4,769	-	48	1
			100.0	24.7	4.3	19.9	-	50.6	-	0.5	-
2004년	20,357	10,964	9,393	2,212	299	2,100	-	4,680	-	38	64
			100.0	23.5	3.2	22.4	-	49.8	-	0.4	0.7
2003년	21,882	11,660	10,222	2,392	500	2,506	-	4,747	-	42	35
			100.0	23.5	4.9	24.5	-	46.4	-	0.4	0.3

출처 : 보건복지부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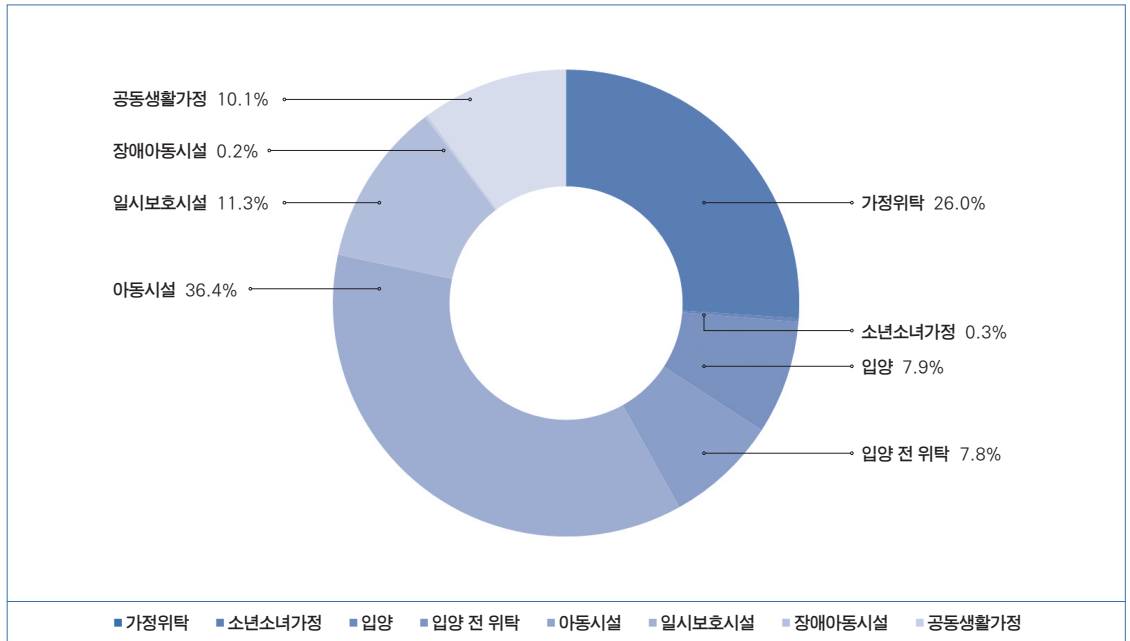
〈그림 2-1〉 연도별 보호필요아동 보호조치



〈표 2-1〉은 보호필요아동의 보호조치를 연도별로 나타내고 있다. 2014년 보호필요아동은 6,014명 발생하였고, 그 중 1,020명은 귀가 및 연고자 인도하였으며, 4,994명은 보호조치 되었다. 보호조치는 가정보호와 시설입소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가정보호 중 가정위탁은 1,300명(26.0%)으로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배치율이 감소되고 있다. 2014년도에는 특히 양육시설 등에 입소한 아동이 전체 보호필요아동의 36.4%로 2013년 28.8% 대비 7.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은 연도별 보호필요아동의 총계와 가정보호(가정위탁, 소년소녀가정, 입양, 입양 전 위탁), 시설입소(양육시설 등, 일시보호시설, 장애아동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조치 현황을 비교하여 나타내고 있다. 2009년 이후 보호필요아동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총 발생한 아동 수에서 귀가 및 연고자 인도를 제외하고 보호배치된 아동은 2003년 10,222명에서 2014년 4,994명으로 2배 이상(5,228명 감소) 감소하였다. 아동복지법과 아동분야사업안내에서 지속적으로 가정보호 우선조치를 강조하고 있음에도 2008년 이후로 가정보호보다 시설입소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2013년부터는 가정보호 중에 입양 전 위탁(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을 일시위탁하는 것)을 구분하여 조치하고 있으며 작년 516명에서 올해 388명으로 128명 감소하였다.

〈그림 2-2〉 보호필요아동 보호조치



〈그림 2-2〉는 2014년 보호필요아동의 보호조치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아동시설이 36.4%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가정위탁이 26.0%, 일시보호시설 11.3%, 공동생활가정(그룹홈) 10.1% 순으로 나타났다.

## ■ 연도별 보호필요아동 발생사유

〈표 2-2〉 연도별 보호필요아동 발생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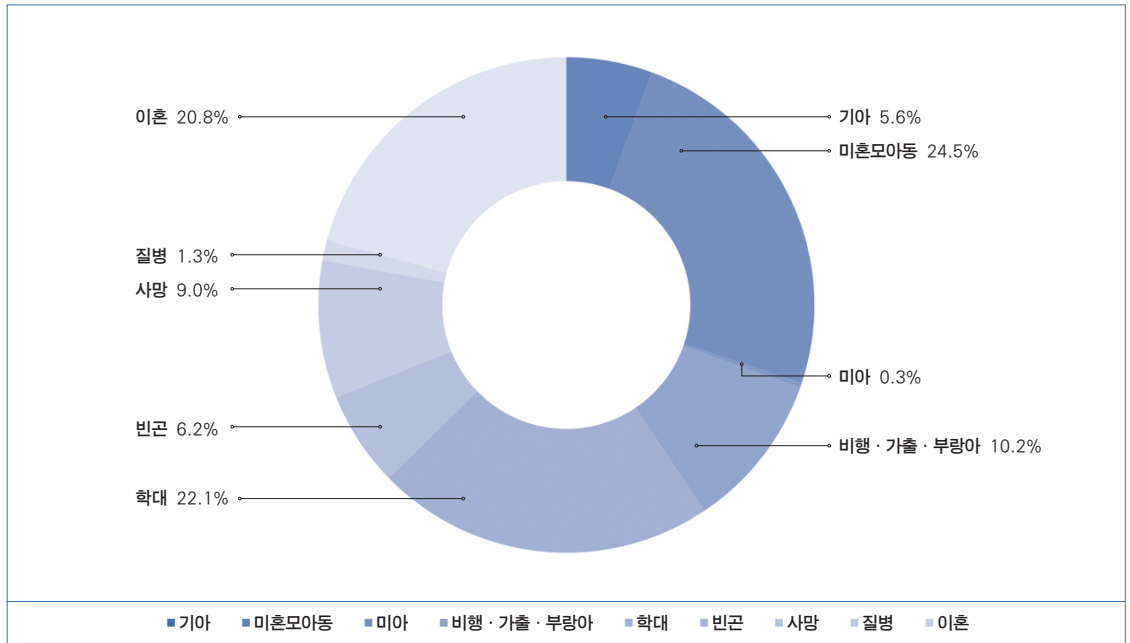
단위 : 명, %

년도	구분	계	기아	미혼모 아동	미아	비행 가출 부랑아	부모의 빈곤, 사망, 학대 등					
							계	학대	빈곤	사망	질병	이혼
2014년		4,994	282	1,226	13	508	2,965	1,105	308	450	65	1,037
		100.0	5.6	24.5	0.3	10.2	59.4	22.1	6.2	9.0	1.3	20.8
2013년		6,020	285	1,534	21	512	3,668	1,117	338	545	133	1,535
		100.0	4.7	25.5	0.4	8.5	60.9	18.6	5.6	9.1	2.2	25.5
2012년		6,926	235	1,989	50	708	3,944	1,122	448	533	166	1,675
		100.0	3.4	28.7	0.7	10.2	57.0	16.2	6.5	7.7	2.4	24.2
2011년		7,483	218	2,515	81	741	3,928	1,125	418	536	154	1,695
		100.0	2.9	33.6	1.1	9.9	52.5	15.0	5.6	7.2	2.1	22.7
2010년		8,590	191	2,804	210	772	4,613	1,037	586	772	203	2,015
		100.0	2.2	32.6	2.5	9.0	53.7	12.1	6.8	9.0	2.4	23.5
2009년		9,028	222	3,070	35	707	4,994	1,051	710	763	230	2,240
		100.0	2.5	34.0	0.4	7.8	55.3	11.6	7.9	8.5	2.5	24.8
2008년		9,284	202	2,349	151	706	5,876	891	1,036	732	274	2,943
		100.0	2.2	25.3	1.6	7.6	63.3	9.6	11.2	7.9	3.0	31.7
2007년		8,861	305	2,417	37	748	5,354					
		100.0	3.5	27.3	0.4	8.4	60.4					
2006년		9,034	230	3,022	55	802	4,925					
		100.0	2.5	33.5	0.6	8.9	54.5					
2005년		9,420	429	2,638	63	1,413	4,877					
		100.0	4.5	28.0	0.7	15.0	51.8					
2004년		9,393	481	4,004	62	581	4,265					
		100.0	5.1	42.6	0.7	6.2	45.4					
2003년		10,222	628	4,457	79	595	4,463					
		100.0	6.1	43.6	0.8	5.8	43.7					

출처 : 보건복지부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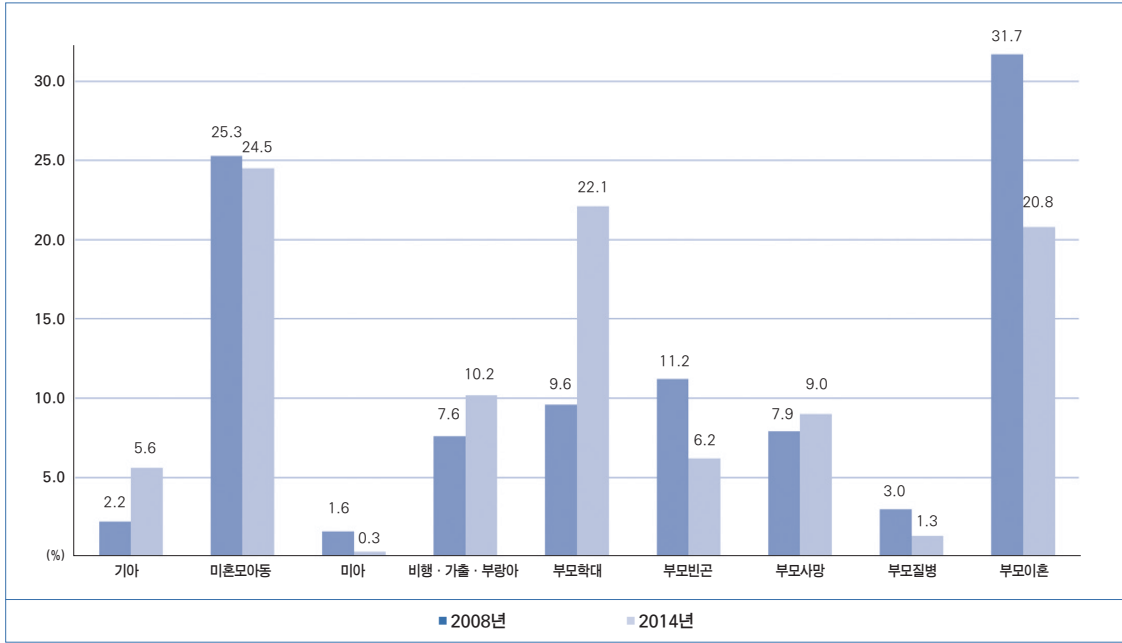
〈표 2-2〉는 연도별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한 사유를 나타내고 있다. 부모의 사망, 질병, 학대 등의 사유를 2008년부터 학대, 사망, 빈곤, 질병, 이혼 등 5가지로 분류하여 나타내었다.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보호필요아동의 발생사유 중 미혼모아동 및 부모의 이혼이 각각 20% 이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2013년부터 학대의 비율이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3〉 보호필요아동 발생사유



〈그림 2-3〉은 2014년 보호필요아동의 발생사유를 나타낸다. 보호필요아동의 발생사유 중 미혼모아동이 24.5%로 가장 높았으며, 학대 22.1%, 이혼이 20.8%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2-4〉 보호필요아동 발생사유(2008년, 2014년 비교)



〈그림 2-4〉는 보호필요아동의 발생사유를 2008년과 2014년을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이는 2008년부터 부모의 빈곤, 사망, 질병 등의 사유가 확대, 빈곤, 사망, 질병, 이혼 등 5가지로 세분화하여 나타났기 때문에 2008년과 2014년을 비교하였다.

가장 크게 감소한 것은 부모이혼으로 2008년 31.7%에서 2014년 20.8%로 10.9%p 감소하였고, 그 다음으로 감소한 것은 빈곤으로 11.2%에서 6.2%로 5.0%p 감소하였다. 2008년보다 증가한 것은 부모학대는 9.6%에서 22.1%로 12.5%p 증가하였고, 기아도 2.2%에서 5.6%로 3.4%p 증가하였다. 또한 비행, 가출, 부랑아는 7.6%에서 10.2%로 2.6%p 증가하였으며, 부모의 사망은 7.9%에서 9.0%로 1.1%p 증가하였다.

## ■ 지역별 보호필요아동 보호조치

〈표 2-3〉 지역별 보호필요아동 보호조치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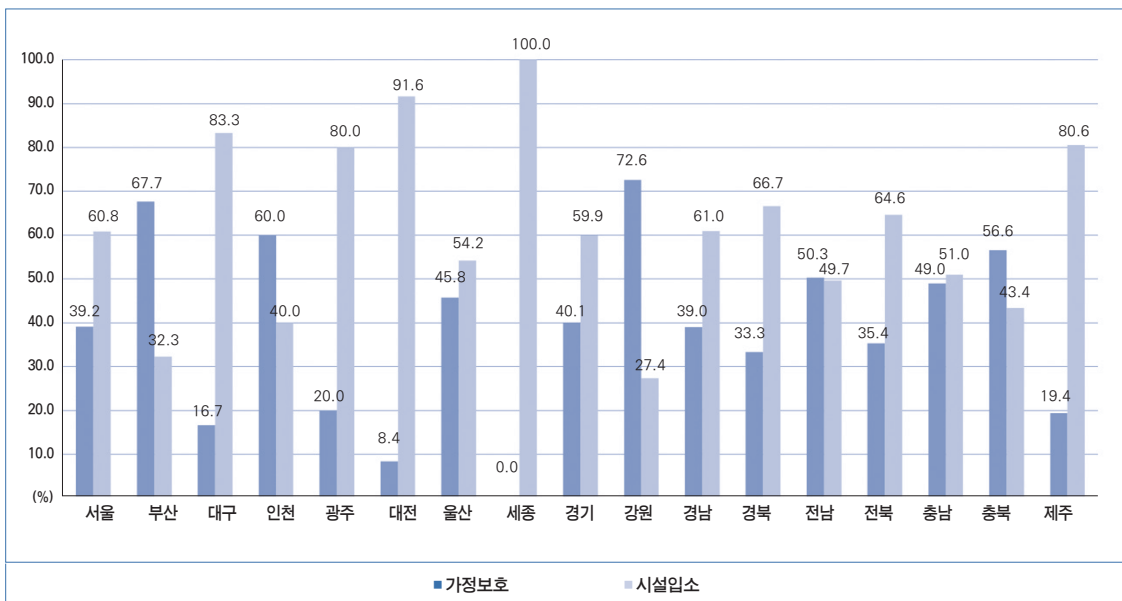
구분 시·도	계	가정보호				시설입소			
		가정위탁	소년소녀 가정	입양	입양 전 위탁	아동시설	일시보호시설	장애아동시설	공동생활가정
계	4,994	1,300	13	393	388	1,818	566	10	506
	100.0	26.0	0.3	7.9	7.8	36.4	11.3	0.2	10.1
서울	1,798	174	6	249	275	667	316	0	111
	100.0	9.7	0.3	13.8	15.3	37.1	17.6	0.0	6.2
부산	260	58	0	35	83	56	6	5	17
	100.0	22.3	0.0	13.5	31.9	21.5	2.3	1.9	6.5
대구	120	18	0	2	0	66	16	0	18
	100.0	15.0	0.0	1.7	0.0	55.0	13.3	0.0	15.0
인천	210	82	5	30	9	40	39	0	5
	100.0	39.0	2.4	14.3	4.3	19.0	18.6	0.0	2.4
광주	135	22	0	4	1	47	44	0	17
	100.0	16.3	0.0	3.0	0.7	34.8	32.6	0.0	12.6
대전	191	16	0	0	0	160	0	0	15
	100.0	8.4	0.0	0.0	0.0	83.8	0.0	0.0	7.8
울산	59	27	0	0	0	23	0	0	9
	100.0	45.8	0.0	0.0	0.0	39.0	0.0	0.0	15.3
세종	1	0	0	0	0	0	0	0	1
	100.0	0.0	0.0	0.0	0.0	0.0	0.0	0.0	100.0
경기	579	212	2	18	0	108	103	1	135
	100.0	36.6	0.3	3.1	0.0	18.7	17.8	0.2	23.3
강원	259	144	0	24	20	32	15	1	23
	100.0	55.6	0.0	9.3	7.7	12.4	5.8	0.4	8.9
충북	152	69	0	17	0	47	0	0	19
	100.0	45.4	0.0	11.2	0.0	30.9	0.0	0.0	12.5
충남	147	72	0	0	0	55	0	1	19
	100.0	49.0	0.0	0.0	0.0	37.4	0.0	0.7	12.9
전북	260	87	0	5	0	135	2	1	30
	100.0	33.5	0.0	1.9	0.0	51.9	0.8	0.4	11.5
전남	300	145	0	6	0	127	1	0	21
	100.0	48.3	0.0	2.0	0.0	42.3	0.3	0.0	7.0
경북	228	76	0	0	0	122	5	1	24
	100.0	33.3	0.0	0.0	0.0	53.5	2.2	0.4	10.5
경남	223	87	0	0	0	91	19	0	26
	100.0	39.0	0.0	0.0	0.0	40.8	8.5	0.0	11.7
제주	72	11	0	3	0	42	0	0	16
	100.0	15.3	0.0	4.2	0.0	58.3	0.0	0.0	22.2

출처 : 보건복지부 2014

〈표 2-3〉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보호조치를 지역별로 나타낸 것이다.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 된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강원 55.6%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충남 49.0%, 전남 48.3% 순으로 나타났다. 소년소녀가정과 입양의 경우 인천이 2.4%와 14.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입양 전 위탁은 부산이 31.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시설입소의 경우, 아동시설로 보호조치 된 아동의 비율은 대전이 83.8%로 가장 높았으며, 일시보호시설은 광주가 32.6%, 장애아동시설은 부산이 1.9%, 공동생활가정은 세종시 100.0%(세종시의 보호아동은 1명으로 그 1명이 그룹홈으로 배치됨)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순위로 경기도가 23.3%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2-5〉 보호필요아동 지역별 보호조치(가정보호, 시설입소 비교)



〈그림 2-5〉 가정보호(가정위탁, 소년소녀가정, 입양, 입양 전 위탁)과 시설입소(아동시설, 일시보호시설, 장애아동시설, 공동생활가정)를 구분하여 지역별로 비교하여 보호필요아동의 보호조치를 나타내었다.

가정보호가 시설입소보다 높은 지역은 강원, 부산, 인천, 충북, 전남 총 5곳이며, 시설입소가 가정보호보다 높은 지역은 서울, 대전, 경기, 광주, 전북, 경남 등 12곳이었다.



## ■ 지역별 보호필요아동 발생사유

〈표 2-4〉 지역별 보호필요아동 발생사유

단위 : 명, %

구분 시·도	계	기아	미혼모 아동	미아	비행·가출 ·부랑아	부모학대	부모빈곤	부모사망	부모질병	부모이혼
계	4,994	282	1,226	13	508	1,105	308	450	65	1,037
	100.0	5.6	24.5	0.3	10.2	22.1	6.2	9.0	1.3	20.8
서울	1,798	229	783	0	253	166	85	98	2	182
	100.0	12.7	43.5	0.0	14.1	9.2	4.7	5.5	0.1	10.1
부산	260	0	129	0	1	54	16	24	4	32
	100.0	0.0	49.6	0.0	0.4	20.8	6.2	9.2	1.5	12.3
대구	120	2	18	0	0	56	24	3	4	13
	100.0	1.7	15.0	0.0	0.0	46.7	20.0	2.5	3.3	10.8
인천	210	3	54	0	11	54	2	28	0	58
	100.0	1.4	25.7	0.0	5.2	25.7	1.0	13.3	0.0	27.6
광주	135	4	54	0	1	21	13	13	7	22
	100.0	3.0	40.0	0.0	0.7	15.6	9.6	9.6	5.2	16.3
대전	191	0	3	1	137	26	2	5	4	13
	100.0	0.0	1.6	0.5	71.7	13.6	1.0	2.6	2.1	6.8
울산	59	0	0	2	0	12	0	8	2	35
	100.0	0.0	0.0	3.4	0.0	20.3	0.0	13.6	3.4	59.3
세종	1	0	0	0	0	0	0	0	1	0
	100.0	0.0	0.0	0.0	0.0	0.0	0.0	0.0	100.0	0.0
경기	579	33	30	4	30	208	45	68	9	152
	100.0	5.7	5.2	0.7	5.2	35.9	7.8	11.7	1.6	26.3
강원	259	1	43	5	0	40	11	45	8	106
	100.0	0.4	16.6	1.9	0.0	15.4	4.2	17.4	3.1	40.9
충북	152	3	30	0	3	38	8	13	3	54
	100.0	2.0	19.7	0.0	2.0	25.0	5.3	8.6	2.0	35.5
충남	147	1	2	0	2	48	28	11	2	53
	100.0	0.7	1.4	0.0	1.4	32.7	19.0	7.5	1.4	36.1
전북	260	2	7	0	59	78	25	17	2	70
	100.0	0.8	2.7	0.0	22.7	30.0	9.6	6.5	0.8	26.9
전남	300	0	46	0	1	71	14	40	8	120
	100.0	0.0	15.3	0.0	0.3	23.7	4.7	13.3	2.7	40.0
경북	228	1	3	0	0	115	19	41	3	46
	100.0	0.4	1.3	0.0	0.0	50.4	8.3	18.0	1.3	20.2
경남	223	3	8	1	10	86	10	31	2	72
	100.0	1.3	3.6	0.4	4.5	38.6	4.5	13.9	0.9	32.3
제주	72	0	16	0	0	32	6	5	4	9
	100.0	0.0	22.2	0.0	0.0	44.4	8.3	6.9	5.6	12.5

출처 : 보건복지부 2014

〈표 2-4〉는 보호필요아동의 발생사유를 지역별로 나타낸 것이다. 지역별 전체 보호필요아동 발생 수는 서울이 1,79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경기도가 579명, 전남이 300명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 사유를 지역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혼모아동으로 가정위탁보호 의뢰된 경우가 부산이 49.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 43.5%, 광주 40.0%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학대의 경우는 경북 50.4%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대구 46.7%, 제주 44.4%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이혼은 울산이 59.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원 40.9%, 전남 40.0% 순으로 나타났다.

즉 미혼모아동 사유가 1순위인 지역은 부산, 서울, 광주 총 3개 지역이었으며, 부모학대가 1순위인 지역은 경북, 대구, 제주, 경남, 경기, 전북 총 6개 지역이었다. 부모이혼이 1순위인 지역은 울산, 강원, 전남, 충남, 인천, 충북 총 6개 지역이었으며, 비행·가출·부랑아가 1순위인 대전(71.7%) 1개 지역이었고, 세종시는 보호필요아동이 부모질병의 사유로 1명 발생하여 그룹홈에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세종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정위탁아동은 충남가정위탁지역센터에서 관할하여 서비스를 진행하므로 세종시에 가정위탁 아동 수는 별도로 책정되지 않았다.

### 3. 가정위탁보호 아동

- 1) 가정위탁보호 아동
- 2) 신규위탁아동
- 3)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





## 3. 가정위탁보호 아동

### 1) 가정위탁보호 아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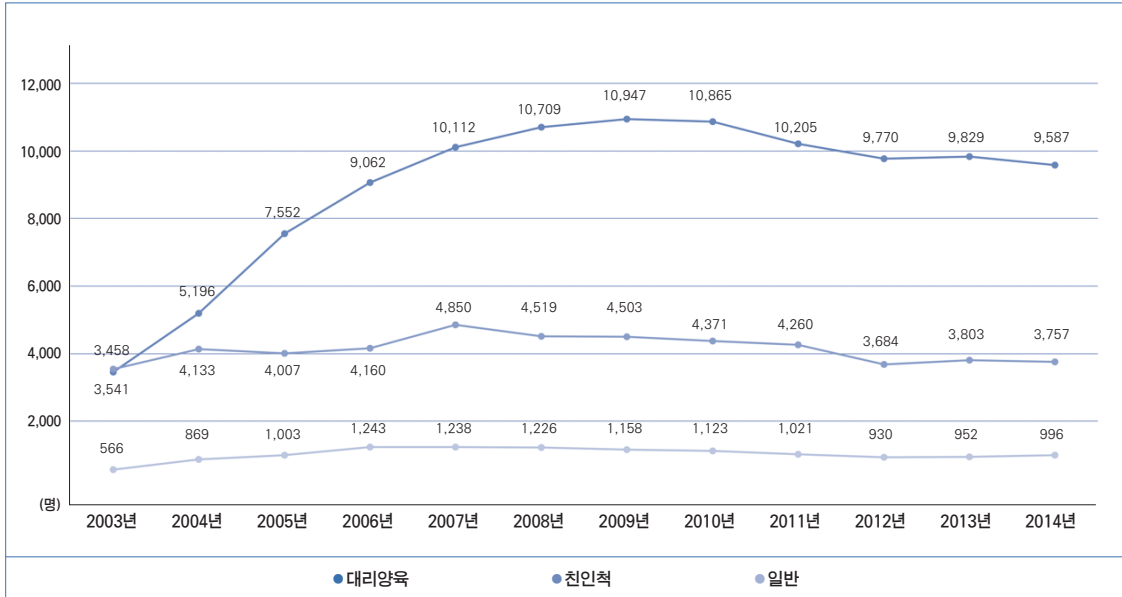
#### ■ 연도별 위탁아동 수

〈표 3-1〉 연도별 위탁아동 수

단위 : 명, %

년도	구분	계	대리양육	친인척	일반
2014년		14,340	9,587	3,757	996
		100.0	66.9	26.2	6.9
2013년		14,584	9,829	3,803	952
		100.0	67.4	26.1	6.5
2012년		14,384	9,770	3,684	930
		100.0	67.9	25.6	6.5
2011년		15,486	10,205	4,260	1,021
		100.0	65.9	27.5	6.6
2010년		16,359	10,865	4,371	1,123
		100.0	66.4	26.7	6.9
2009년		16,608	10,947	4,503	1,158
		100.0	65.9	27.1	7.0
2008년		16,454	10,709	4,519	1,226
		100.0	65.0	27.5	7.5
2007년		16,200	10,112	4,850	1,238
		100.0	62.4	29.9	7.7
2006년		14,465	9,062	4,160	1,243
		100.0	62.6	28.8	8.6
2005년		12,562	7,552	4,007	1,003
		100.0	60.1	31.9	8.0
2004년		10,198	5,196	4,133	869
		100.0	51.0	40.5	8.5
2003년		7,565	3,458	3,541	566
		100.0	45.7	46.8	7.5

〈그림 3-1〉 연도별 위탁아동



〈표 3-1〉은 연도별 가정위탁보호 유형에 따른 위탁아동 수를 나타낸 것이다. 전체 가정위탁보호 아동은 2003년 7,565명에서 2009년 16,608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2010년부터 감소하여 2014년 14,340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호필요아동 수의 지속적인 감소와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되는 비율이 낮아 전체 위탁아동 수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2014년 보호필요아동 수인 4,994명 중 60%가 가정위탁으로 보호배치된다고 가정하면 약 2,500여명이 신규위탁아동으로 보호되어 전체 위탁아동의 수가 다소 증가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 ■ 지역센터별 위탁아동 성별 및 연령

〈표 3-2〉 지역센터별 위탁아동 성별 및 연령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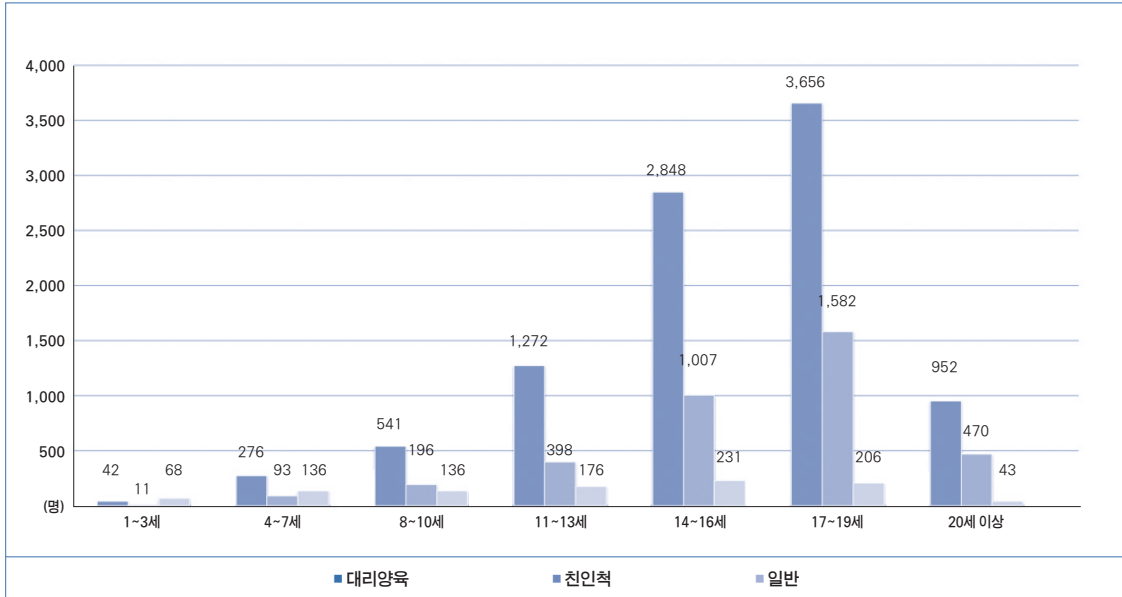
구분	계	성 별		연 령							
		남	여	1~3세	4~7세	8~10세	11~13세	14~16세	17~19세	20세 이상	
계	대리양육	9,587	5,105	4,482	42	276	541	1,272	2,848	3,656	952
		100.0	53.2	46.8	0.4	2.9	5.6	13.3	29.7	38.1	9.9
	친인척	3,757	1,936	1,821	11	93	196	398	1,007	1,582	470
		100.0	51.5	48.5	0.3	2.5	5.2	10.6	26.8	42.1	12.5
	일 반	996	547	449	68	136	136	176	231	206	43
	100.0	54.9	45.1	6.8	13.7	13.7	17.7	23.2	20.7	4.3	
	소 계	14,340	7,588	6,752	121	505	873	1,846	4,086	5,444	1,465
		100.0	52.9	47.1	0.8	3.5	6.1	12.9	28.5	38.0	10.2
서울	대리양육	808	431	377	3	25	56	106	225	325	68
		100.0	53.3	46.7	0.4	3.1	6.9	13.1	27.8	40.2	8.4
	친인척	411	216	195	0	11	20	45	99	189	47
		100.0	52.6	47.4	0.0	2.7	4.9	10.9	24.1	46.0	11.4
	일 반	69	40	29	11	10	3	13	12	16	4
	100.0	58.0	42.0	15.9	14.5	4.3	18.8	17.4	23.2	5.8	
	소 계	1,288	687	601	14	46	79	164	336	530	119
		100.0	53.3	46.7	1.1	3.6	6.1	12.7	26.1	41.1	9.2
부산	대리양육	467	246	221	3	10	26	51	142	185	50
		100.0	52.7	47.3	0.6	2.1	5.6	10.9	30.4	39.6	10.7
	친인척	272	133	139	0	2	7	19	79	129	36
		100.0	48.9	51.1	0.0	0.7	2.6	7.0	29.0	47.4	13.2
	일 반	61	36	25	6	7	7	8	13	15	5
	100.0	59.0	41.0	9.8	11.5	11.5	13.1	21.3	24.6	8.2	
	소 계	800	415	385	9	19	40	78	234	329	91
		100.0	51.9	48.1	1.1	2.4	5.0	9.8	29.3	41.1	11.4
대구	대리양육	168	103	65	2	6	15	24	53	50	18
		100.0	61.3	38.7	1.2	3.6	8.9	14.3	31.5	29.8	10.7
	친인척	83	40	43	0	5	5	10	20	34	9
		100.0	48.2	51.8	0.0	6.0	6.0	12.0	24.1	41.0	10.8
	일 반	51	29	22	7	5	8	9	13	7	2
	100.0	56.9	43.1	13.7	9.8	15.7	17.6	25.5	13.7	3.9	
	소 계	302	172	130	9	16	28	43	86	91	29
		100.0	57.0	43.0	3.0	5.3	9.3	14.2	28.5	30.1	9.6
인천	대리양육	451	234	217	6	15	20	55	126	178	51
		100.0	51.9	48.1	1.3	3.3	4.4	12.2	27.9	39.5	11.3
	친인척	252	131	121	0	4	13	17	65	117	36
		100.0	52.0	48.0	0.0	1.6	5.2	6.7	25.8	46.4	14.3
	일 반	73	41	32	3	17	16	9	12	13	3
	100.0	56.2	43.8	4.1	23.3	21.9	12.3	16.4	17.8	4.1	
	소 계	776	406	370	9	36	49	81	203	308	90
		100.0	52.3	47.7	1.2	4.6	6.3	10.4	26.2	39.7	11.6
광주	대리양육	195	96	99	0	3	8	29	61	75	19
		100.0	49.2	50.8	0.0	1.5	4.1	14.9	31.3	38.5	9.7
	친인척	129	73	56	1	2	4	18	42	40	22
		100.0	56.6	43.4	0.8	1.6	3.1	14.0	32.6	31.0	17.1
	일 반	28	13	15	1	3	2	7	10	5	0
		100.0	46.4	53.6	3.6	10.7	7.1	25.0	35.7	17.9	0.0

구분		계	성 별		연 령						
			남	여	1~3세	4~7세	8~10세	11~13세	14~16세	17~19세	20세 이상
광주	소 계	352	182	170	2	8	14	54	113	120	41
		100.0	51.7	48.3	0.6	2.3	4.0	15.3	32.1	34.1	11.6
대전	대리양육	153	83	70	1	3	10	23	41	62	13
		100.0	54.2	45.8	0.7	2.0	6.5	15.0	26.8	40.5	8.5
	친인척	89	46	43	0	1	1	9	26	41	11
		100.0	51.7	48.3	0.0	1.1	1.1	10.1	29.2	46.1	12.4
	일 반	43	27	16	7	4	3	10	10	7	2
		100.0	62.8	37.2	16.3	9.3	7.0	23.3	23.3	16.3	4.7
소 계	285	156	129	8	8	14	42	77	110	26	
100.0	54.7	45.3	2.8	2.8	4.9	14.7	27.0	38.6	9.1		
울산	대리양육	156	67	89	0	4	5	12	54	61	20
		100.0	42.9	57.1	0.0	2.6	3.2	7.7	34.6	39.1	12.8
	친인척	85	43	42	0	1	5	10	21	38	10
		100.0	50.6	49.4	0.0	1.2	5.9	11.8	24.7	44.7	11.8
	일 반	28	11	17	2	4	3	4	8	7	0
		100.0	39.3	60.7	7.1	14.3	10.7	14.3	28.6	25.0	0.0
소 계	269	121	148	2	9	13	26	83	106	30	
100.0	45.0	55.0	0.7	3.3	4.8	9.7	30.9	39.4	11.2		
경기	대리양육	1,032	587	445	4	36	55	119	335	391	92
		100.0	56.9	43.1	0.4	3.5	5.3	11.5	32.5	37.9	8.9
	친인척	553	281	272	1	10	38	70	155	223	56
		100.0	50.8	49.2	0.2	1.8	6.9	12.7	28.0	40.3	10.1
	일 반	66	35	31	2	9	8	15	17	14	1
		100.0	53.0	47.0	3.0	13.6	12.1	22.7	25.8	21.2	1.5
소 계	1,651	903	748	7	55	101	204	507	628	149	
100.0	54.7	45.3	0.4	3.3	6.1	12.4	30.7	38.0	9.0		
경기 북부	대리양육	506	256	250	3	22	43	78	148	170	42
		100.0	50.6	49.4	0.6	4.3	8.5	15.4	29.2	33.6	8.3
	친인척	218	109	109	3	8	16	27	55	74	35
		100.0	50.0	50.0	1.4	3.7	7.3	12.4	25.2	33.9	16.1
	일 반	76	37	39	5	9	11	6	22	17	6
		100.0	48.7	51.3	6.6	11.8	14.5	7.9	28.9	22.4	7.9
소 계	800	402	398	11	39	70	111	225	261	83	
100.0	50.3	49.8	1.4	4.9	8.8	13.9	28.1	32.6	10.4		
강원	대리양육	1,062	543	519	3	21	56	136	327	399	120
		100.0	51.1	48.9	0.3	2.0	5.3	12.8	30.8	37.6	11.3
	친인척	248	118	130	1	7	16	26	60	107	31
		100.0	47.6	52.4	0.4	2.8	6.5	10.5	24.2	43.1	12.5
	일 반	79	36	43	5	12	13	15	22	7	5
		100.0	45.6	54.4	6.3	15.2	16.5	19.0	27.8	8.9	6.3
소 계	1,389	697	692	9	40	85	177	409	513	156	
100.0	50.2	49.8	0.6	2.9	6.1	12.7	29.4	36.9	11.2		
충북	대리양육	388	218	170	5	6	18	53	123	151	32
		100.0	56.2	43.8	1.3	1.5	4.6	13.7	31.7	38.9	8.2
	친인척	123	60	63	0	6	5	13	35	58	6
		100.0	48.8	51.2	0.0	4.9	4.1	10.6	28.5	47.2	4.9
	일 반	51	33	18	2	3	5	9	18	11	3
		100.0	64.7	35.3	3.9	5.9	9.8	17.6	35.3	21.6	5.9
소 계	562	311	251	7	15	28	75	176	220	41	
100.0	55.3	44.7	1.2	2.7	5.0	13.3	31.3	39.1	7.3		



구분	계	성 별		연 령							
		남	여	1~3세	4~7세	8~10세	11~13세	14~16세	17~19세	20세 이상	
충남	대리양육	465	220	245	0	15	38	67	146	168	31
		100.0	47.3	52.7	0.0	3.2	8.2	14.4	31.4	36.1	6.7
	친인척	164	80	84	2	8	11	21	39	66	17
		100.0	48.8	51.2	1.2	4.9	6.7	12.8	23.8	40.2	10.4
	일 반	55	33	22	6	9	10	7	9	11	3
	100.0	60.0	40.0	10.9	16.4	18.2	12.7	16.4	20.0	5.5	
	소 계	684	333	351	8	32	59	95	194	245	51
	100.0	48.7	51.3	1.2	4.7	8.6	13.9	28.4	35.8	7.5	
전북	대리양육	665	369	296	3	18	36	85	212	246	65
		100.0	55.5	44.5	0.5	2.7	5.4	12.8	31.9	37.0	9.8
	친인척	227	128	99	0	7	7	26	66	87	34
		100.0	56.4	43.6	0.0	3.1	3.1	11.5	29.1	38.3	15.0
	일 반	79	42	37	1	8	12	19	14	22	3
	100.0	53.2	46.8	1.3	10.1	15.2	24.1	17.7	27.8	3.8	
	소 계	971	539	432	4	33	55	130	292	355	102
	100.0	55.5	44.5	0.4	3.4	5.7	13.4	30.1	36.6	10.5	
전남	대리양육	1,277	691	586	2	27	74	197	377	484	116
		100.0	54.1	45.9	0.2	2.1	5.8	15.4	29.5	37.9	9.1
	친인척	229	114	115	0	8	8	22	72	90	29
		100.0	49.8	50.2	0.0	3.5	3.5	9.6	31.4	39.3	12.7
	일 반	32	18	14	1	4	3	4	9	8	3
	100.0	56.3	43.8	3.1	12.5	9.4	12.5	28.1	25.0	9.4	
	소 계	1,538	823	715	3	39	85	223	458	582	148
	100.0	53.5	46.5	0.2	2.5	5.5	14.5	29.8	37.8	9.6	
경북	대리양육	769	422	347	4	32	34	111	214	296	78
		100.0	54.9	45.1	0.5	4.2	4.4	14.4	27.8	38.5	10.1
	친인척	255	134	121	3	7	19	21	66	105	34
		100.0	52.5	47.5	1.2	2.7	7.5	8.2	25.9	41.2	13.3
	일 반	99	57	42	2	19	19	16	23	19	1
	100.0	57.6	42.4	2.0	19.2	19.2	16.2	23.2	19.2	1.0	
	소 계	1,123	613	510	9	58	72	148	303	420	113
	100.0	54.6	45.4	0.8	5.2	6.4	13.2	27.0	37.4	10.1	
경남	대리양육	773	403	370	2	20	37	97	203	314	100
		100.0	52.1	47.9	0.3	2.6	4.8	12.5	26.3	40.6	12.9
	친인척	355	196	159	0	5	20	39	86	157	48
		100.0	55.2	44.8	0.0	1.4	5.6	11.0	24.2	44.2	13.5
	일 반	87	49	38	4	9	8	22	15	27	2
	100.0	56.3	43.7	4.6	10.3	9.2	25.3	17.2	31.0	2.3	
	소 계	1,215	648	567	6	34	65	158	304	498	150
	100.0	53.3	46.7	0.5	2.8	5.3	13.0	25.0	41.0	12.3	
제주	대리양육	252	136	116	1	13	10	29	61	101	37
		100.0	54.0	46.0	0.4	5.2	4.0	11.5	24.2	40.1	14.7
	친인척	64	34	30	0	1	1	5	21	27	9
		100.0	53.1	46.9	0.0	1.6	1.6	7.8	32.8	42.2	14.1
	일 반	19	10	9	3	4	5	3	4	0	0
	100.0	52.6	47.4	15.8	21.1	26.3	15.8	21.1	0.0	0.0	
	소 계	335	180	155	4	18	16	37	86	128	46
	100.0	53.7	46.3	1.2	5.4	4.8	11.0	25.7	38.2	13.7	

〈그림 3-2〉 위탁아동 연령



〈표 3-2〉는 위탁아동의 성별 및 연령을 지역센터별, 위탁유형별로 나타내고 있다. 전체 위탁아동의 성별 비율은 남아가 52.9%, 여아가 47.1%로 남아가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위탁유형과 관계없이 대체로 남아 비율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위탁아동의 성별을 지역센터별로 살펴보면, 남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센터는 대구가 57.0%, 전북이 55.5%, 충북 55.3%, 대전과 경기 각각 54.7%, 경북 54.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여아의 비율은 울산이 55.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충남 51.3%, 강원과 경기북부 각각 49.8%, 광주가 48.3%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위탁아동의 연령별 비율을 살펴보면, 17~19세 아동이 38.0%로 가장 많았으며, 14~16세 아동이 28.5%, 11~13세 아동이 12.9%로 나타났다. 즉 중·고등학생이 66.5%, 초등학생이 19.0%, 미취학 아동이 4.3%로 중·고등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고등학생(14~19세)의 비율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충북과 부산이 각각 70.4%로 가장 높았으며, 울산 70.3%, 경기 68.7% 전남 67.6% 순으로 나타났다.

위탁유형별로 위탁아동의 연령을 살펴보면 대리양육·친인척위탁가정은 17~19세(대리양육 38.1%, 친인척위탁 42.1%)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일반위탁가정은 14~16세(23.2%)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에 비해 20세 이상의 위탁아동이 852명(5.8%)에서 1,465명(10.2%)으로 613명(4.4%p) 증가하였는데, 이는 상급학교진학 등의 사유로 연장아동이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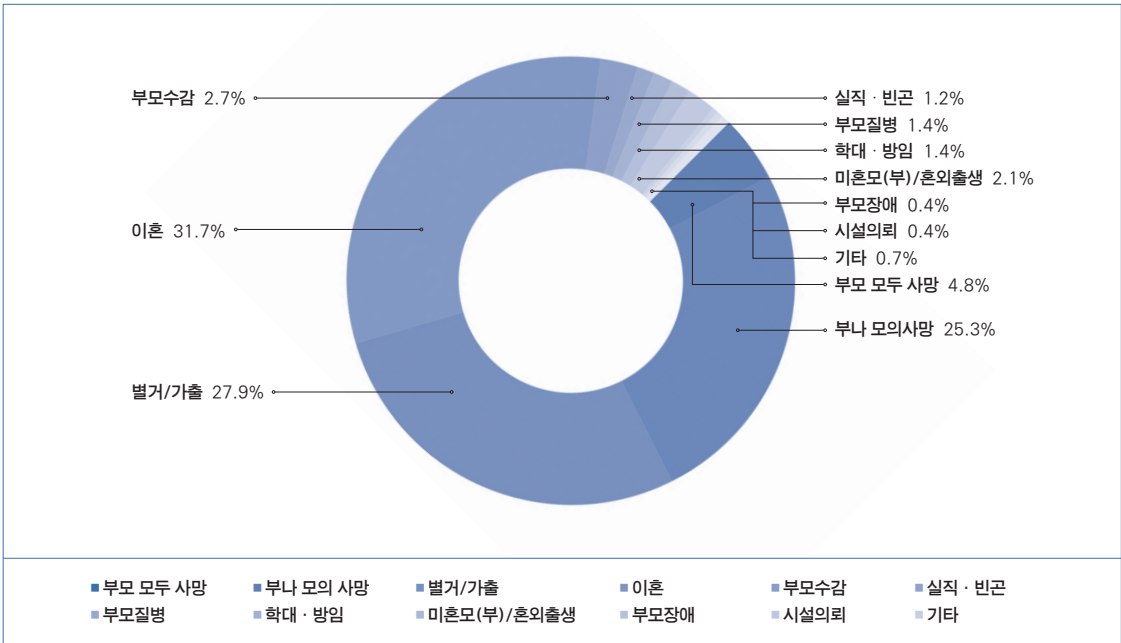
■ 가정위탁보호 사유

〈표 3-3〉 가정위탁보호 사유

단위 : 명, %

구분	계	부모 모두 사망	부나 모의 사망	별거/가출	이혼	부모수감	실직·빈곤	부모질병	학대·방임	미혼모(부)/혼외출생	시설의뢰	부모장애	기타
계	14,340	686	3,628	3,999	4,545	386	178	201	203	297	58	62	97
	100.0	4.8	25.3	27.9	31.7	2.7	1.2	1.4	1.4	2.1	0.4	0.4	0.7
대리양육	9,587	345	2,183	2,856	3,518	230	106	93	63	139	20	1	33
	100.0	3.6	22.8	29.8	36.7	2.4	1.1	1.0	0.7	1.4	0.2	0.0	0.3
친인척	3,757	330	1,333	885	852	117	26	66	42	53	28	3	22
	100.0	8.8	35.5	23.6	22.7	3.1	0.7	1.8	1.1	1.4	0.7	0.1	0.6
일 반	996	11	112	258	175	39	46	42	98	105	10	58	42
	100.0	1.1	11.2	25.9	17.6	3.9	4.6	4.2	9.8	10.5	1.0	5.8	4.2

〈그림 3-3〉 가정위탁보호 사유



〈표 3-3〉은 위탁유형별 가정위탁보호 사유를 나타내고 있다. 전체 위탁사유 중 부모의 이혼으로 위탁된 아동이 31.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부모의 별거/가출 27.9%, 부나 모 사망 25.3% 순으로 나타났다.

위탁유형별로 살펴보면, 대리양육위탁아동은 이혼이 36.7%로 가장 많았고, 친인척위탁아동은 부나 모의 사망이 35.5%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일반위탁아동은 부모의 별거/가출이 25.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대 및 방임, 미혼모(부)/혼외출생이 위탁사유인 경우 대리양육·친인척위탁가정은 1% 전후로 비율이 낮은 반면 일반위탁가정은 각각 9.8%, 10.5%로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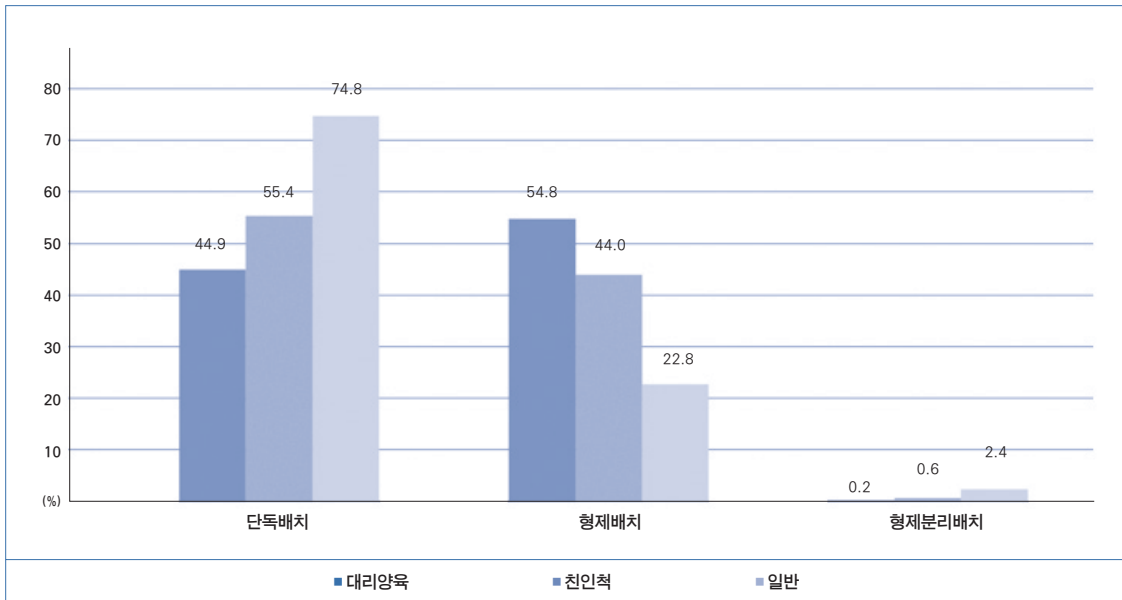
## ■ 위탁아동 형제배치

〈표 3-4〉 위탁아동 형제배치

단위 : 명, %

구 분	계	단독배치	형제배치	형제분리배치
계	14,340	7,134	7,137	69
	100.0	49.7	49.8	0.5
대리양육	9,587	4,307	5,257	23
	100.0	44.9	54.8	0.2
친인척	3,757	2,082	1,653	22
	100.0	55.4	44.0	0.6
일 반	996	745	227	24
	100.0	74.8	22.8	2.4

〈그림 3-4〉 위탁아동 형제배치



〈표 3-4〉는 위탁아동의 형제배치를 나타낸 것이다. 전체 위탁아동 중 형제없이 혼자 의뢰되어 위탁가정에서 보호되는 단독배치가 49.7%, 형제가 함께 의뢰되어 형제가 함께 배치된 아동은 49.8%, 형제가 함께 의뢰되었으나 형제가 분리되어 각각 다른가정에 배치되는 형제분리배치는 0.5%로 나타났다.

위탁유형별로는 대리양육위탁아동은 형제배치가 54.8%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친인척위탁아동과 일반위탁아동은 단독배치가 각각 55.4%, 74.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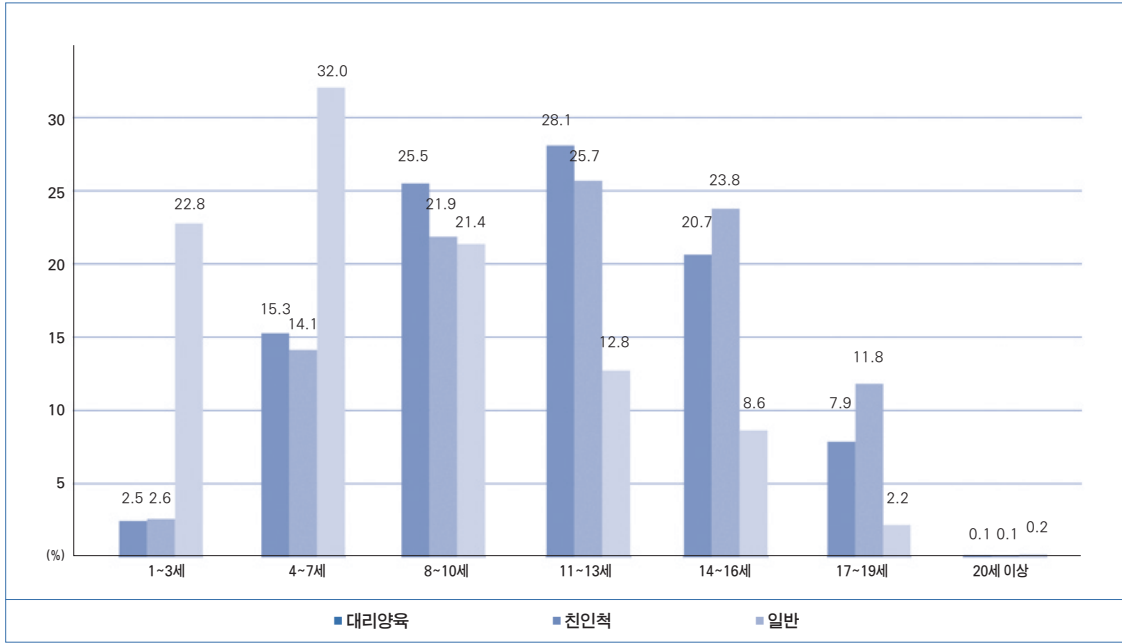
## ■ 위탁보호결정 시 위탁아동의 성별 및 연령

〈표 3-5〉 위탁보호결정 시 위탁아동의 성별 및 연령

단위 : 명, %

구분	계	연령							
		1~3세	4~7세	8~10세	11~13세	14~16세	17~19세	20세 이상	
계	남	7,588	298	1,267	1,883	1,989	1,522	622	7
		100.0	3.9	16.7	24.8	26.2	20.1	8.2	0.1
	여	6,752	265	1,047	1,595	1,799	1,437	601	8
		100.0	3.9	15.5	23.6	26.6	21.3	8.9	0.1
	계	14,340	563	2,314	3,478	3,788	2,959	1,223	15
		100.0	3.9	16.1	24.3	26.4	20.6	8.5	0.1
대리양육	남	5,105	135	805	1,320	1,409	1,033	398	5
		100.0	2.6	15.8	25.9	27.6	20.2	7.8	0.1
	여	4,482	103	659	1,124	1,286	947	359	4
		100.0	2.3	14.7	25.1	28.7	21.1	8.0	0.1
	계	9,587	238	1,464	2,444	2,695	1,980	757	9
		100.0	2.5	15.3	25.5	28.1	20.7	7.9	0.1
친인척	남	1,936	43	286	442	512	437	214	2
		100.0	2.2	14.8	22.8	26.4	22.6	11.1	0.1
	여	1,821	55	245	379	454	456	230	2
		100.0	3.0	13.5	20.8	24.9	25.0	12.6	0.1
	계	3,757	98	531	821	966	893	444	4
		100.0	2.6	14.1	21.9	25.7	23.8	11.8	0.1
일 반	남	547	120	176	121	68	52	10	0
		100.0	21.9	32.2	22.1	12.4	9.5	1.8	0.0
	여	449	107	143	92	59	34	12	2
		100.0	23.8	31.8	20.5	13.1	7.6	2.7	0.4
	계	996	227	319	213	127	86	22	2
		100.0	22.8	32.0	21.4	12.8	8.6	2.2	0.2

〈그림 3-5〉 위탁보호결정 시 위탁아동의 연령



〈표 3-5〉는 위탁보호결정 시 아동의 연령과 성별을 위탁유형별로 나타낸 것이다. 위탁보호결정 시 아동의 연령은 11~13세가 26.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8~10세가 24.3%, 14~16세가 20.6% 순으로 나타났다.

위탁유형별로 살펴보면, 대리양육위탁아동은 11~13세가 28.1%로 가장 많았으며, 친인척위탁아동 역시 11~13세가 25.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일반위탁아동의 경우는 4~7세의 취학 전 아동이 32.0%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1~3세 22.8%, 8~10세 21.4%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위탁아동은 다른 유형에 비해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 아동의 위탁보호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위탁보호결정 시 20세 이상의 아동의 경우는,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위탁책임 되어 보호를 받은 경우이다.

### ■ 대리양육 및 친인척위탁아동의 위탁부모와의 관계

〈표 3-6〉 대리양육위탁아동과 위탁부모와의 관계

계	단위 : 명, %	
	친조부(모)	외조부(모)
9,587	7,584	2,003
100.0	79.1	20.9

〈표 3-6〉은 대리양육위탁아동과 위탁부모와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전체 대리양육위탁아동 9,587명 중 친조부(모)가 양육하고 있는 아동은 7,584명(79.1%)으로 나타났으며, 외조부(모)가 양육하고 있는 아동은 2,003명(20.9%)으로 나타났다. 대리양육위탁아동은 외조부(모)에 의한 양육보다 친조부(모)에 의한 양육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3-7〉 친인척위탁아동과 위탁부모와의 관계

단위 : 명, %

계	백부(모)	숙부(모)	고모(부)	외숙부(모)	이모(부)	형제자매	기타
3,757	640	353	1,487	168	637	304	168
100	17.0	9.4	39.6	4.5	17.0	8.1	4.5

〈표 3-7〉은 친인척위탁아동과 위탁부모와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전체 친인척위탁아동 3,757명 중 고모(부)가 위탁하고 있는 아동이 1,487명(39.6%)으로 가장 많았고, 백부(모)가 위탁하는 아동이 640명(17.0%), 이모(부)가 위탁하는 아동이 637명(17.0%) 순으로 나타났다. 성인이 된 형제자매가 위탁부모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304명(8.1%)으로 나타났다. 기타는 고모·이모 할머니, 사촌형제, 증조부모 등을 포함한다.

부계 친인척인 백부(모), 숙부(모), 고모(부)가 위탁하는 아동은 66.0%, 모계 친인척인 외숙부(모), 이모(부)가 위탁하는 아동은 21.5%로 나타나, 친인척위탁아동도 대리양육위탁아동과 마찬가지로 모계보다는 부계 친족이 아동을 양육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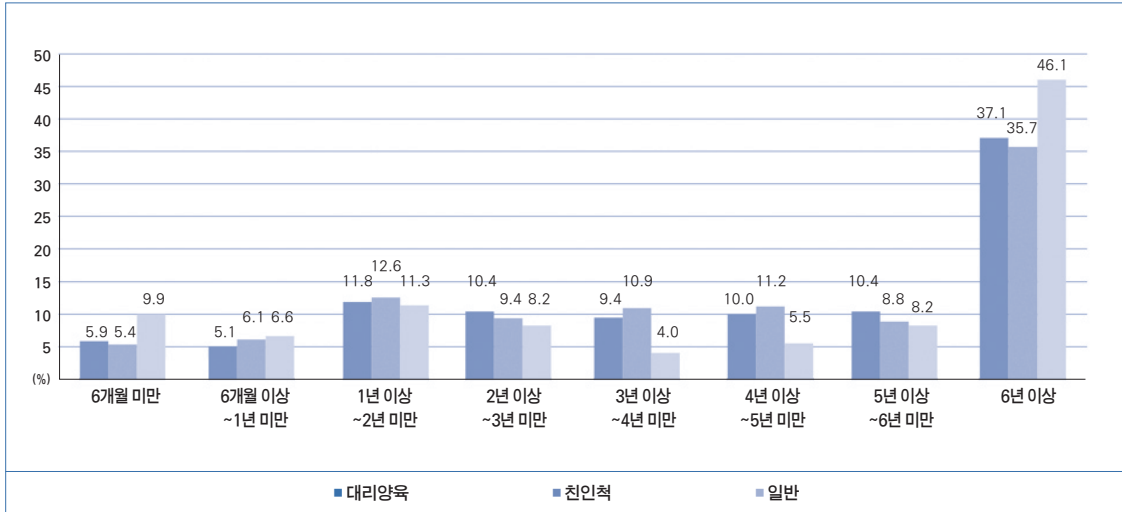
## ■ 위탁아동의 위탁기간

〈표 3-8〉 위탁유형별 위탁기간

단위 : 명, %

구분	계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평균 위탁기간
계	14,340	861	779	1,719	1,435	1,354	1,429	1,408	5,355	5년 1개월
	100.0	6.0	5.4	12.0	10.0	9.4	10.0	9.8	37.3	
대리양육	9,587	561	485	1,134	1,000	905	955	994	3,553	5년 1개월
	100.0	5.9	5.1	11.8	10.4	9.4	10.0	10.4	37.1	
친인척	3,757	201	228	472	353	409	419	332	1,343	5년
	100.0	5.4	6.1	12.6	9.4	10.9	11.2	8.8	35.7	
일 반	996	99	66	113	82	40	55	82	459	5년 5개월
	100.0	9.9	6.6	11.3	8.2	4.0	5.5	8.2	46.1	

〈그림 3-6〉 위탁유형별 위탁기간



〈표 3-8〉은 가정위탁보호 아동의 위탁기간을 위탁유형별로 나타낸 것이다. 전체 가정위탁보호 아동의 평균 위탁기간은 5년 1개월이고, 이는 작년 4년 9개월에서 4개월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각 위탁유형별 평균위탁기간은 작년대비 각각 2개월~4개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일반위탁의 경우 평균위탁기간이 5년 5개월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위탁아동의 위탁기간을 살펴보면, 6년 이상 장기간 위탁된 아동이 37.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년 이상~2년 미만인 아동이 12.0%, 2년 이상~3년 미만과 4년 이상~5년 미만인 아동이 각각 10.0%로 나타났다. 위탁유형별로 살펴보면, 대리양육위탁아동은 6년 이상인 경우가 37.1%, 1년 이상~2년 미만이 11.8%, 2년 이상~3년 미만인 경우와 5년 이상~6년 미만도 각각 10.4%로 높게 나타났다. 친인척위탁아동은 6년 이상인 경우가 35.7%, 1년 이상~2년 미만이 12.6%로 높게 나타났다. 일반위탁아동은 6년 이상이 46.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1년 이상~2년 미만이 11.3%로 나타났다.



〈표 3-9〉 가정위탁보호 사유별 위탁기간

단위 : 명, %

구분	계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평균 위탁기간
계	14,340	861	779	1,719	1,435	1,354	1,429	1,408	5,355	5년 1개월
	100.0	6.0	5.4	12.0	10.0	9.4	10.0	9.8	37.3	
부모 모두 사망	686	62	49	124	82	94	75	55	145	3년 11개월
	100.0	9.0	7.1	18.1	12.0	13.7	10.9	8.0	21.1	
부나 모의 사망	3,628	229	161	432	329	338	373	292	1,474	5년 3개월
	100.0	6.3	4.4	11.9	9.1	9.3	10.3	8.0	40.6	
별거/가출	3,999	173	177	395	381	300	328	394	1,851	5년 7개월
	100.0	4.3	4.4	9.9	9.5	7.5	8.2	9.9	46.3	
이혼	4,545	247	272	563	490	482	532	544	1,415	4년 8개월
	100.0	5.4	6.0	12.4	10.8	10.6	11.7	12.0	31.1	
부모수감	386	67	35	63	46	43	26	18	88	3년 6개월
	100.0	17.4	9.1	16.3	11.9	11.1	6.7	4.7	22.8	
실직 · 빈곤	178	4	14	4	6	17	7	23	103	6년 3개월
	100.0	2.2	7.9	2.2	3.4	9.6	3.9	12.9	57.9	
부모질병	201	7	7	16	15	20	23	30	83	5년 6개월
	100.0	3.5	3.5	8.0	7.5	10.0	11.4	14.9	41.3	
학대 · 방임	203	25	14	30	30	14	29	14	47	3년 8개월
	100.0	12.3	6.9	14.8	14.8	6.9	14.3	6.9	23.2	
미혼모(부) /혼외 출생	297	17	31	51	38	30	29	23	78	4년 1개월
	100.0	5.7	10.4	17.2	12.8	10.1	9.8	7.7	26.3	
시설의뢰	62	13	5	8	5	3	3	2	23	4년 6개월
	100.0	21.0	8.1	12.9	8.1	4.8	4.8	3.2	37.1	
부모장애	58	4	5	11	10	10	1	7	10	3년 6개월
	100.0	6.9	8.6	19.0	17.2	17.2	1.7	12.1	17.2	
기타	97	13	9	22	3	3	3	6	38	4년 7개월
	100.0	13.4	9.3	22.7	3.1	3.1	3.1	6.2	39.2	

〈표 3-9〉는 위탁아동의 위탁사유별 위탁기간을 나타내고 있다. 위탁사유별 평균위탁기간은 부모장애와 부모수감이 각각 3년 6개월, 학대·방임이 3년 8개월, 부모 모두 사망이 3년 11개월 순으로 짧게 나타났다. 평균위탁기간이 가장 긴 위탁보호사유로는 실직·빈곤으로 6년 3개월로 나타났다.

위탁사유에 따른 위탁기간을 살펴보면 위탁기간이 2년 미만인 아동의 위탁사유는 기타 45.4%, 부모수감 42.8%, 시설의뢰가 42.0%, 부모장애 34.5%, 부모 모두 사망이 34.2%, 학대·방임 34.0% 순으로 높게 나타나 평균위탁기간이 짧은 위탁사유의 순서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6년 이상의 비율이 가장 높은 보호사유는 실직·빈곤이 57.9%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별거/가출이 46.3%, 부모질병이 41.3%, 부나 모의 사망이 40.6%였다.

## 2) 신규위탁아동<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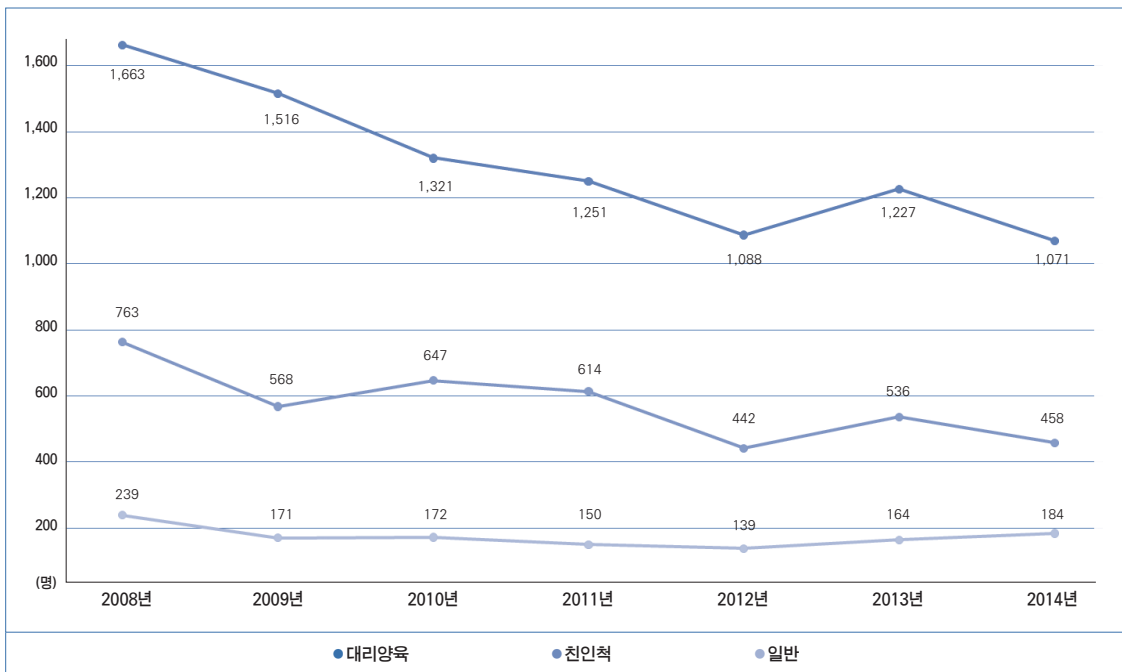
### ■ 연도별 신규위탁아동 수

〈표 3-10〉 연도별 신규위탁아동 수

단위 : 명, %

연도	구분	계	대리양육	친인척	일반
2014년		1,713	1,071	458	184
		100.0	62.5	26.7	10.7
2013년		1,927	1,227	536	164
		100.0	63.7	27.8	8.5
2012년		1,669	1,088	442	139
		100.0	65.2	26.5	8.3
2011년		2,015	1,251	614	150
		100.0	62.1	30.5	7.4
2010년		2,140	1,321	647	172
		100.0	61.7	30.2	8.1
2009년		2,255	1,516	568	171
		100.0	67.2	25.2	7.6
2008년		2,665	1,663	763	239
		100.0	62.4	28.6	9.0

〈그림 3-7〉 연도별 신규위탁아동



1) 2014년 신규위탁아동 현황은 다른 센터로 사례이관 되거나, 위탁가정이 변경된 아동 230명(대리양육위탁아동 73명, 친인척위탁아동 106명, 일반위탁아동 51명)은 신규아동 수에서 제외하고 집계함.

〈표 3-10〉는 연도별 신규위탁아동의 수를 나타낸 것이다. 전체 신규위탁아동은 2008년 2,665명에서 2012년 1,669명으로 계속 감소하였으나, 2013년 1,927명으로 다소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14년 1,713명으로 감소하였다. 신규위탁아동 수의 연도별 차이는 연도별 보호필요아동 발생 수와 가정위탁보호 배치율의 차이로 인한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신규위탁아동의 위탁유형을 전년도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대리양육위탁아동은 63.7%에서 62.5%, 친인척위탁아동은 27.8%에서 26.7%로 두 유형별 비율이 각각 약 1%p 감소한 반면, 일반위탁아동의 비율은 8.5%에서 10.7%로 약 2%p 증가하였다.

## ■ 지역센터별 신규위탁아동 수

〈표 3-11〉 지역센터별 신규위탁아동 수

단위 : 명, %

구 분	계	대리양육	친인척	일 반
계	1,713	1,071	458	184
	100.0	62.5	26.7	10.7
서울	135	69	47	19
	100.0	51.1	34.8	14.1
부산	89	46	29	14
	100.0	51.7	32.6	15.7
대구	47	27	15	5
	100.0	57.4	31.9	10.6
인천	89	58	18	13
	100.0	65.2	20.2	14.6
광주	29	17	11	1
	100.0	58.6	37.9	3.4
대전	21	9	9	3
	100.0	42.9	42.9	14.3
울산	33	15	11	7
	100.0	45.5	33.3	21.2
경기	213	112	84	17
	100.0	52.6	39.4	8.0
경기북부	120	80	26	14
	100.0	66.7	21.7	11.7
강원	146	108	29	9
	100.0	74.0	19.9	6.2
충북	77	42	26	9
	100.0	54.5	33.8	11.7
충남	128	86	22	20
	100.0	67.2	17.2	15.6
전북	89	62	16	11
	100.0	69.7	18.0	12.4
전남	178	145	29	4
	100.0	81.5	16.3	2.2
경북	138	88	36	14
	100.0	63.8	26.1	10.1
경남	137	78	43	16
	100.0	56.9	31.4	11.7
제주	44	29	7	8
	100.0	65.9	15.9	18.2

〈표 3-11〉는 2014년 신규로 가정위탁보호된 아동의 지역센터별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신규위탁아동 수는 경기 213명, 전남 178명, 강원 146명 순으로 많았다. 전국 신규위탁아동의 위탁유형별 평균 비율은 대리양육위탁아동이 62.5%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친인척위탁아동은 26.7%, 일반위탁아동은 10.7%의 순으로 나타났다.

신규위탁아동 중 대리양육위탁아동의 비율은 전남이 81.5%로 가장 높았고, 친인척위탁아동의 비율은 대전이 42.9%로 가장 높았다. 일반위탁아동은 울산이 가장 높은 비율인 21.2%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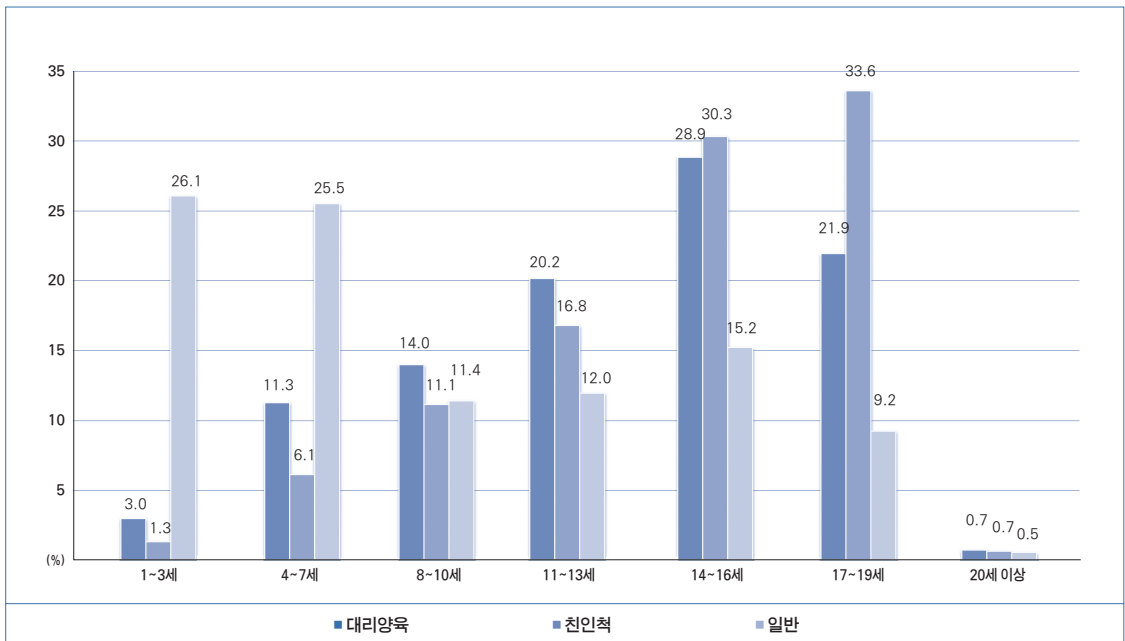
### ■ 신규위탁아동 성별 및 연령

〈표 3-12〉 신규위탁아동 성별 및 연령

단위 : 명, %

구분	계	성 별		연 령							평균연령
		남	여	1~3세	4~7세	8~10세	11~13세	14~16세	17~19세	20세 이상	
소 계	1,713	931	782	86	196	222	315	476	406	12	13세
	100.0	54.3	45.7	5.0	11.4	13.0	18.4	27.8	23.7	0.7	
대리양육	1,071	588	483	32	121	150	216	309	235	8	13세
	100.0	54.9	45.1	3.0	11.3	14.0	20.2	28.9	21.9	0.7	
친인척	458	236	222	6	28	51	77	139	154	3	14세
	100.0	51.5	48.5	1.3	6.1	11.1	16.8	30.3	33.6	0.7	
일 반	184	107	77	48	47	21	22	28	17	1	8세
	100.0	58.2	41.8	26.1	25.5	11.4	12.0	15.2	9.2	0.5	

〈그림 3-8〉 신규위탁유형별 위탁아동의 연령



〈표 3-12〉는 2014년 신규위탁아동의 성별 및 연령을 위탁유형별로 나타낸 것이다. 전체 신규위탁아동 1,713명 중 남아가 931명(54.3%), 여아가 782명(45.7%)으로 남아가 약 8.6%p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위탁아동 14,340명 중 남아 52.9%(7,588명), 여아 47.1%(6,752명)와 유사한 분포를 나타낸다. 모든 위탁유형에 관계없이 남아의 비율이 여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수치의 차이는 일반위탁아동이 16.4%p(남아 58.2%, 여아 41.8%), 대리양육위탁아동이 9.8%p(남아 54.9%, 여아 45.1%), 친인척위탁아동이 3.0%p(남아 51.5%, 여아 48.5%) 순으로 나타났다.

2014년 신규위탁된 아동의 전체 평균연령은 13세이며, 위탁유형별 평균연령을 살펴보면, 일반위탁아동의 평균연령이 8세로 가장 낮은 반면, 대리양육위탁아동이 13세, 친인척위탁아동이 14세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전체 신규아동의 평균 연령분포는 14~16세가 27.8%(476명), 17~19세가 23.7%(406명)으로 청소년기의 아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위탁유형별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유형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대리양육위탁아동은 14~16세가 28.9%, 17~19세가 21.9%, 11~13세가 20.2% 순으로 나타났으며, 친인척위탁아동은 17~19세가 33.6%, 14~16세가 30.3%, 11~13세가 16.8%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대리양육·친인척위탁아동은 전체 평균 연령분포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지만, 일반위탁아동의 경우는 1~3세가 26.1%, 4~7세가 25.5%로 미취학아동의 연령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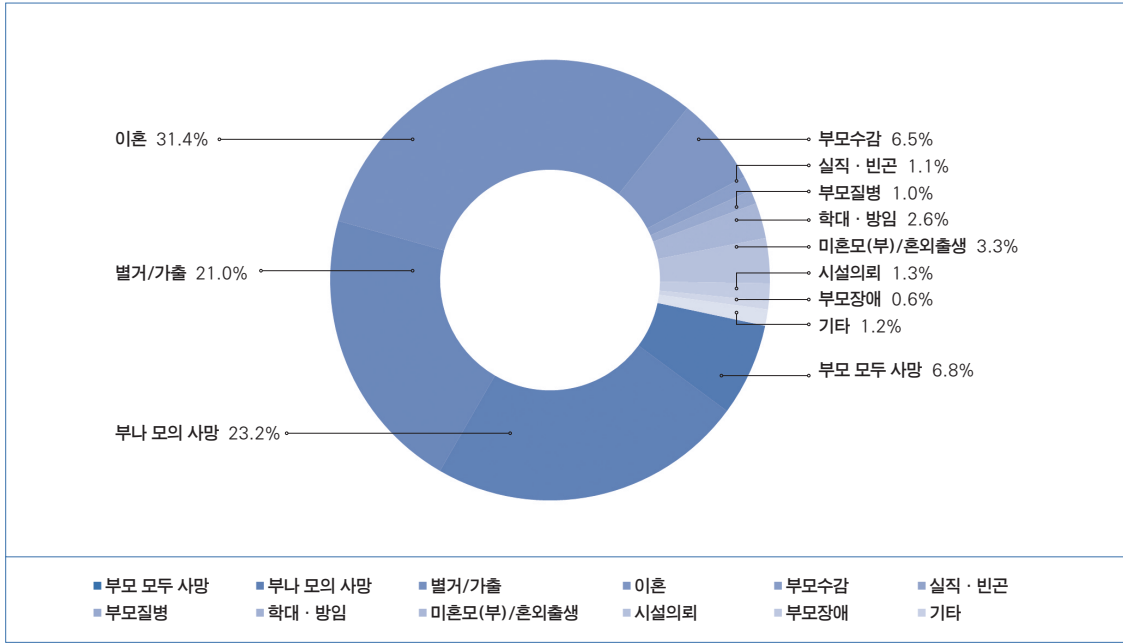
## ■ 신규위탁아동 가정위탁보호 사유

〈표 3-13〉 신규위탁아동 가정위탁보호 사유

단위 : 명, %

구분	계	부모 모두 사망	부나 모의 사망	벌거/가출	이혼	부모수감	실직·빈곤	부모질병	학대·방임	미혼모(부)/혼외출생	시설의뢰	부모장애	기타
계	1,713	117	397	359	538	112	18	17	45	57	22	10	21
	100.0	6.8	23.2	21.0	31.4	6.5	1.1	1.0	2.6	3.3	1.3	0.6	1.2
대리양육	1,071	67	240	242	397	63	2	6	13	29	0	6	6
	100.0	6.3	22.4	22.6	37.1	5.9	0.2	0.6	1.2	2.7	0.0	0.6	0.6
친인척	458	50	140	83	118	33	4	5	11	5	2	2	5
	100.0	10.9	30.6	18.1	25.8	7.2	0.9	1.1	2.4	1.1	0.4	0.4	1.1
일 반	184	0	17	34	23	16	12	6	21	23	20	2	10
	100.0	0.0	9.2	18.5	12.5	8.7	6.5	3.3	11.4	12.5	10.9	1.1	5.4

〈그림 3-9〉 신규위탁아동 가정위탁보호 사유



〈표 3-13〉은 신규위탁아동의 가정위탁보호 사유를 나타낸 것이다. 신규위탁아동이 위탁된 사유를 살펴보면, 부모의 이혼이 31.4%로 가장 높았으며, 부나 모의 사망이 23.2%, 부모의 별거/가출이 21.0% 순으로 나타나 가족구조적 환경변화로 인해 가정위탁 되는 아동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규위탁아동의 위탁유형별 가정위탁보호 사유를 살펴보면 대리양육위탁아동은 이혼이 37.1%, 별거/가출 22.6%, 부나 모의 사망이 22.4% 순이었으며, 친인척위탁아동은 부나 모의 사망이 30.6%, 이혼 25.8%, 별거/가출이 18.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일반위탁아동은 부모의 별거/가출이 18.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혼과 미혼모(부)/혼외출생이 각각 12.5%, 학대·방임이 11.4%, 시설의뢰가 10.9%로 나타났다.

대리양육·친인척위탁아동은 이혼, 별거/가출, 부나 모의 사망이 주요사유로 나타나고 있지만, 일반위탁아동은 이혼, 미혼모(부)/혼외출생 및 학대·방임, 시설의뢰 등 가정위탁보호 사유가 다양하게 나타나 대리양육·친인척위탁유형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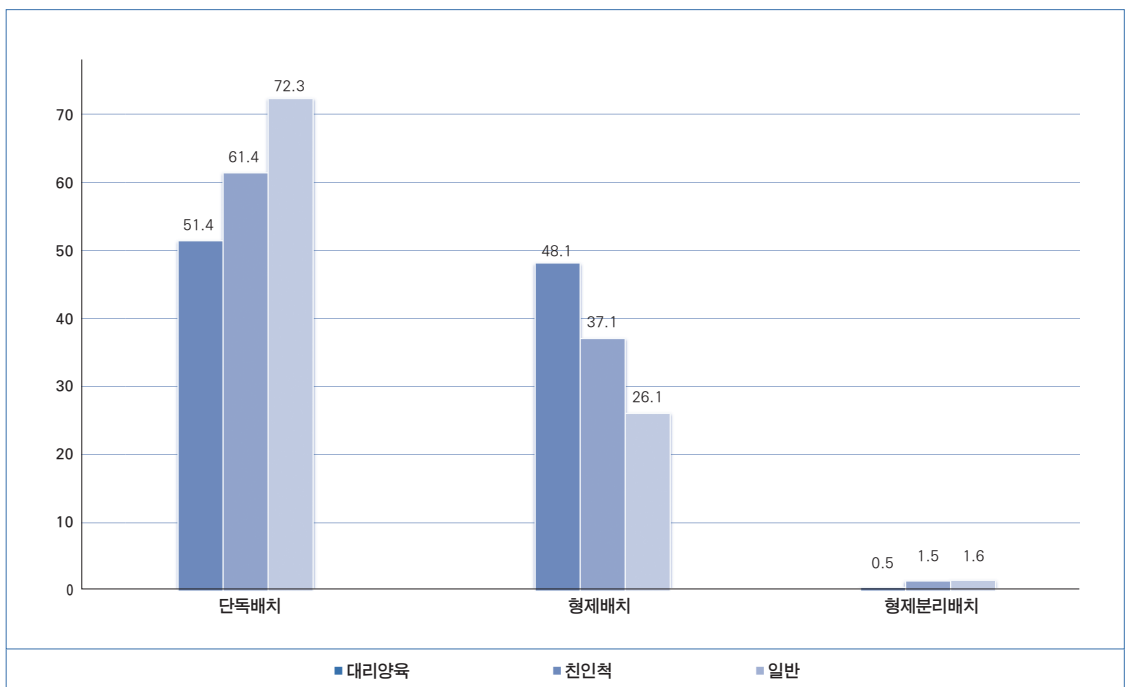
## ■ 신규위탁아동 형제배치

〈표 3-14〉 신규위탁아동 형제배치

단위 : 명, %

구 분	계	단독배치	형제배치	형제분리배치
계	1,713	965	733	15
	100.0	56.3	42.8	0.9
대리양육	1,071	551	515	5
	100.0	51.4	48.1	0.5
친인척	458	281	170	7
	100.0	61.4	37.1	1.5
일 반	184	133	48	3
	100.0	72.3	26.1	1.6

〈그림 3-10〉 신규위탁아동 형제배치



〈표 3-14〉은 신규위탁아동의 형제배치를 나타낸 것이다. 신규위탁아동 중 형제없이 혼자 의뢰되어 위탁가정에서 보호되는 단독배치가 965명(56.3%), 형제가 함께 의뢰되어 형제가 함께 배치된 아동은 733명(42.8%), 형제가 함께 의뢰되었으나 형제가 분리되어 각각 다른 가정에 배치된 아동은 15명(0.9%)으로 나타났다.

형제가 함께 의뢰되었을 경우, 대부분이 형제가 함께 위탁가정에서 보호되고 있지만 형제가 함께 의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다른 가정에서 분리배치된 아동의 비율은 대리양육위탁아동이 0.5%(5명), 친인척위탁아동이 1.5%(7명), 일반위탁아동이 1.6%(3명)으로 나타났다.

### ■ 신규대리양육 및 친인척위탁아동의 위탁부모와의 관계

〈표 3-15〉 신규대리양육위탁아동과 위탁부모와의 관계

단위 : 명, %

계	친조부(모)	외조부(모)
1,071	794	277
100.0	74.1	25.9

〈표 3-15〉는 신규대리양육위탁아동과 위탁부모와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신규대리양육위탁아동 1,071명 중 친조부(모)가 양육하고 있는 아동이 794명(74.1%), 외조부(모)가 양육하고 있는 아동이 277명(25.9%)으로 나타났다.

〈표 3-16〉 신규친인척위탁아동과 위탁부모와의 관계

단위 : 명, %

계	백부(모)	숙부(모)	고모(부)	외숙부(모)	이모(부)	형제자매	기타
458	57	41	182	16	57	75	30
100.0	12.4	9.0	39.7	3.5	12.4	16.4	6.6

〈표 3-16〉은 신규친인척위탁아동과 위탁부모와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신규친인척위탁아동 458명 중 고모(부)가 양육하고 있는 아동이 182명(39.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성인이 된 형제자매가 양육하고 있는 아동이 75명(16.4%), 이모(부) 혹은 백부(모)가 양육하고 있는 아동이 각각 57명(12.4%) 순으로 나타났다.

### ■ 학대피해아동의 신규위탁

〈표 3-17〉 학대피해아동의 신규위탁

단위 : 명, %

구분	계	위탁유형			성 별		연 령					
		대리양육	친인척	일 반	남	여	1~3세	4~7세	8~10세	11~13세	14~16세	17~19세
계	45	13	11	21	23	22	4	8	9	10	8	6
	100.0	28.9	24.4	46.7	51.1	48.9	8.9	17.8	20.0	22.2	17.8	13.3
신체 학대	11	3	4	4	6	5	0	2	1	3	2	3
	100.0	27.3	36.4	36.4	54.5	45.5	0.0	18.2	9.1	27.3	18.2	27.3
방임 및 유기	27	9	5	13	14	13	2	6	7	4	6	2
	100.0	33.3	18.5	48.1	51.9	48.1	7.4	22.2	25.9	14.8	22.2	7.4
정서 학대	1	0	0	1	0	1	1	0	0	0	0	0
	100.0	0.0	0.0	100.0	0.0	100.0	100.0	0.0	0.0	0.0	0.0	0.0
중복 학대	6	1	2	3	3	3	1	0	1	3	0	1
	100.0	16.7	33.3	50.0	50.0	50.0	16.7	0.0	16.7	50.0	0.0	16.7



〈표 3-17〉는 2014년 신규로 가정위탁 보호된 학대피해아동의 위탁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2014년 신규위탁아동 중 가정위탁보호 사유가 학대·방임인 아동 45명의 위탁유형을 살펴보면, 일반위탁아동이 46.7%(21명), 대리양육위탁아동이 28.9%(13명), 친인척위탁아동이 24.4%(11명) 순으로 나타나 학대피해아동은 일반위탁가정에 보호 중인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로 가정위탁 보호된 학대피해아동의 성별은 남아가 51.1%(23명), 여아가 48.9%(22명)으로 남아가 조금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연령은 11~13세가 22.2%(10명), 8~10세가 20.0%(9명), 4~7세 및 14~16세가 각각 17.8%(8명)로 나타나 모든 연령대에 고루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학대유형은 방임 및 유기 피해 아동이 27명, 신체학대 피해아동이 11명, 중복지학대 피해아동이 6명 순으로 나타났다.

## ■ 신규위탁아동 장애유형

〈표 3-18〉 신규위탁아동 장애유형

단위: 명, %

구분	계	위탁유형			성 별		연 령					
		대리양육	친인척	일 반	남	여	1~3세	4~7세	8~10세	11~13세	14~16세	17~19세
계	12	4	5	3	5	7	0	0	2	3	4	3
	100.0	33.3	41.7	25.0	41.7	58.3	0.0	0.0	16.7	25.0	33.3	25.0
뇌병변 장 애	1	1	0	0	0	1	0	0	0	0	1	0
	100.0	100.0	0.0	0.0	0.0	100.0	0.0	0.0	0.0	0.0	100.0	0.0
시 각 장 애	1	0	1	0	0	1	0	0	0	0	0	1
	100.0	0.0	100.0	0.0	0.0	100.0	0.0	0.0	0.0	0.0	0.0	100.0
자폐성 장 애	1	0	0	1	1	0	0	0	1	0	0	0
	100.0	0.0	0.0	100.0	100.0	0.0	0.0	0.0	100.0	0.0	0.0	0.0
지 적 장 애	8	3	3	2	3	5	0	0	1	3	3	1
	100.0	37.5	37.5	25.0	37.5	62.5	0.0	0.0	12.5	37.5	37.5	12.5
지 체 장 애	1	0	1	0	1	0	0	0	0	0	0	1
	100.0	0.0	100.0	0.0	100.0	0.0	0.0	0.0	0.0	0.0	0.0	100.0

〈표 3-18〉는 신규위탁아동 중 장애아동의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신규위탁아동 중 장애아동은 12명이었으며, 친인척위탁아동이 5명, 대리양육위탁아동이 4명, 일반위탁아동이 3명으로 나타났다. 장애아동 12명의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14~16세가 33.3%(4명), 11~13세 및 17~19세가 각각 25.0%(3명), 8~10세가 16.7%(2명) 순으로 나타나 미취학기 연령의 아동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의 장애유형은 뇌병변, 시각, 자폐성, 지체장애아동이 각각 1명이며, 지적장애 아동은 8명으로 나타났다. 지적장애아동은 대리양육·친인척위탁가정에 각각 3명이 보호되고 있으며, 2명은 일반위탁가정에서 보호되고 있다.

### 3)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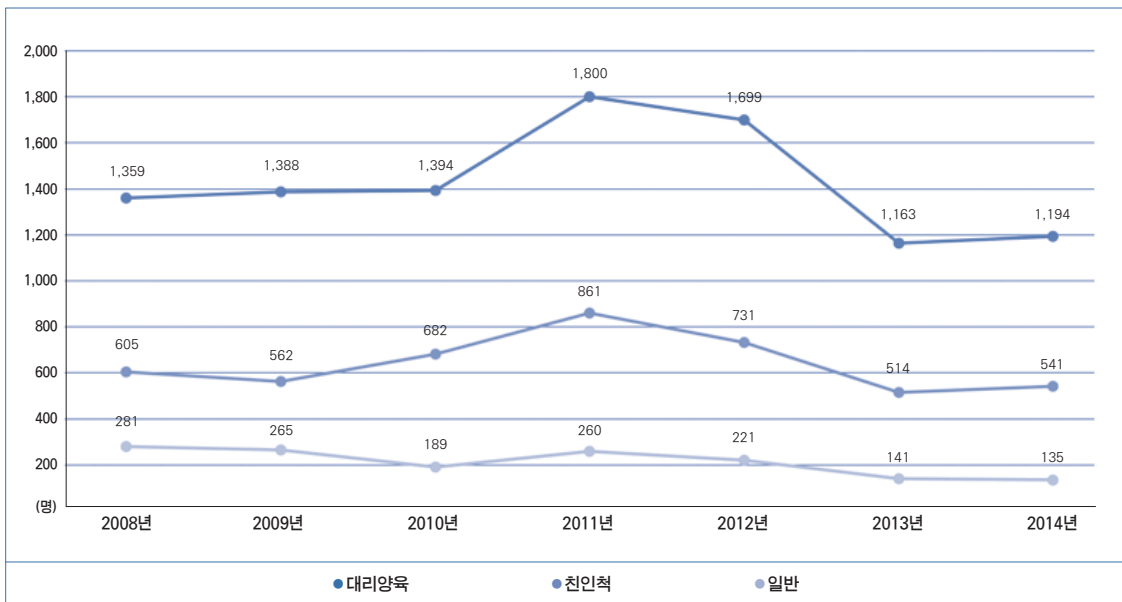
#### ■ 연도별 종결아동 수

〈표 3-19〉 연도별 종결아동 수

단위 : 명, %

년도	구분	계	대리양육	친인척	일반
2014년		1,870	1,194	541	135
		100.0	63.9	28.9	7.2
2013년		1,818	1,163	514	141
		100.0	64.0	28.3	7.7
2012년		2,651	1,699	731	221
		100.0	64.1	27.6	8.3
2011년		2,921	1,800	861	260
		100.0	61.6	29.5	8.9
2010년		2,265	1,394	682	189
		100.0	61.6	30.1	8.3
2009년		2,215	1,388	562	265
		100.0	62.7	25.3	12.0
2008년		2,245	1,359	605	281
		100.0	60.5	27.0	12.5

〈그림 3-11〉 연도별 종결아동



2) 2014년 종결아동 현황은 전출로 인해 다른 센터에 사레이관된 아동 171명(대리양육위탁아동 73명, 친인척위탁아동 40명, 일반위탁아동 19명)과 위탁가정이 변경된 92명(대리양육위탁아동 8명, 친인척위탁아동 58명, 일반위탁아동 26명)에 대해 지속적으로 가정위탁보호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총 263명을 종결 위탁아동 수에서 제외함.

〈표 3-19〉는 연도별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연도별 종결아동 수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감소추세에 있었으나, 2014년에는 일반위탁아동을 제외한 대리양육·친인척위탁아동이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종결아동의 위탁유형비율은 대리양육위탁아동이 63.9%, 친인척위탁아동이 28.9%, 일반위탁아동이 7.2%로 나타났다.

## ■ 지역센터별 종결아동 수

〈표 3-20〉 지역센터별 종결아동 수

단위 : 명, %

구 분	계	대리양육	친인척	일 반
계	1,870	1,194	541	135
	100.0	63.9	28.9	7.2
서 울	164	100	54	10
	100.0	61.0	32.9	6.1
부 산	124	58	56	10
	100.0	46.8	45.2	8.1
대 구	43	20	16	7
	100.0	46.5	37.2	16.3
인 천	106	56	39	11
	100.0	52.8	36.8	10.4
광 주	36	20	13	3
	100.0	55.6	36.1	8.3
대 전	45	27	11	7
	100.0	60.0	24.4	15.6
울 산	33	17	11	5
	100.0	51.5	33.3	15.2
경 기	231	136	84	11
	100.0	58.9	36.4	4.8
경기북부	109	74	28	7
	100.0	67.9	25.7	6.4
강 원	169	119	38	12
	100.0	70.4	22.5	7.1
충 북	80	51	23	6
	100.0	63.8	28.8	7.5
충 남	71	55	9	7
	100.0	77.5	12.7	9.9
전 북	111	66	37	8
	100.0	59.5	33.3	7.2
전 남	203	165	34	4
	100.0	81.3	16.7	2.0
경 북	128	94	26	8
	100.0	73.4	20.3	6.3
경 남	165	106	50	9
	100.0	64.2	30.3	5.5
제 주	52	30	12	10
	100.0	57.7	23.1	19.2

〈표 3-20〉은 지역센터별 종결아동 수를 나타낸 것이다. 종결아동 수는 경기 231명, 전남 20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원 169명, 경남 165명, 서울 164명 순으로 나타났다. 위탁종인 아동 수가 많은 지역일수록 종결아동 수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지역별 종결아동의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대리양육위탁아동은 전남이 81.3%, 친인척위탁아동은 부산이 45.2%, 일반위탁아동은 제주가 19.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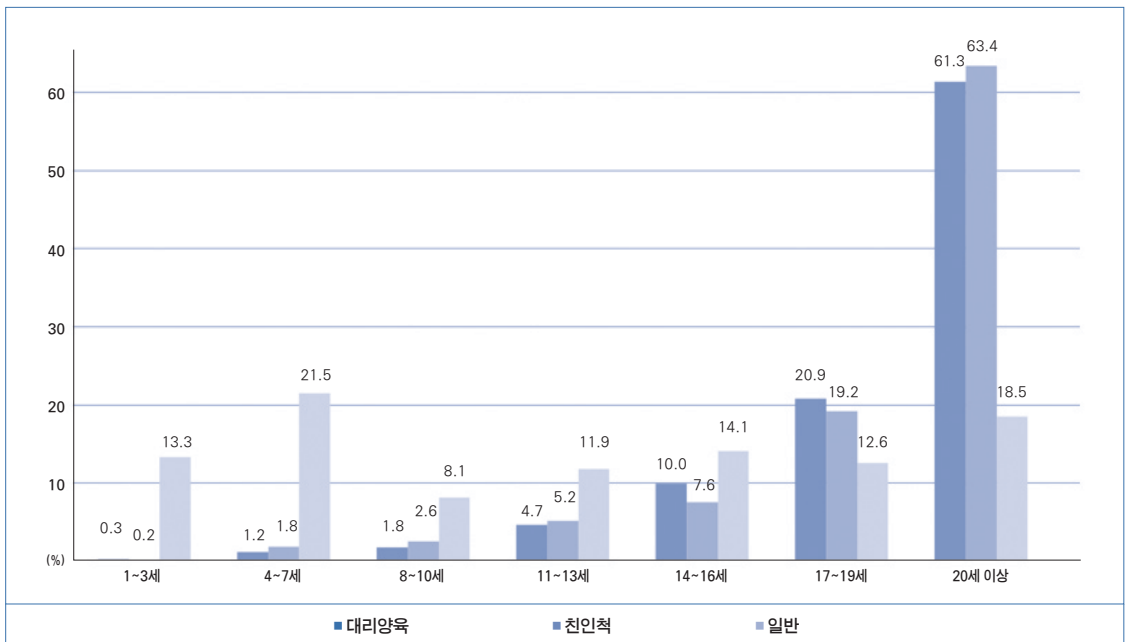
### ■ 종결아동 성별 및 연령

〈표 3-21〉 종결아동 성별 및 연령

단위 : 명, %

구분	계	성 별		연 령								평균연령
		남	여	1~3세	4~7세	8~10세	11~13세	14~16세	17~19세	20세 이상		
계	1,870	1,090	780	22	53	46	100	179	370	1,100	18세	
	100.0	58.3	41.7	1.2	2.8	2.5	5.3	9.6	19.8	58.8		
대리양육	1,194	726	468	3	14	21	56	119	249	732	18세	
	100.0	60.8	39.2	0.3	1.2	1.8	4.7	10.0	20.9	61.3		
친인척	541	291	250	1	10	14	28	41	104	343	18세	
	100.0	53.8	46.2	0.2	1.8	2.6	5.2	7.6	19.2	63.4		
일 반	135	73	62	18	29	11	16	19	17	25	12세	
	100.0	54.1	45.9	13.3	21.5	8.1	11.9	14.1	12.6	18.5		

〈그림 3-12〉 종결아동 연령



〈표 3-21〉는 종결아동의 성별 및 연령을 유형별로 나타낸 것이다. 전체 종결아동 중 남아가 1,090명(58.3%), 여아가 780명(41.7%)으로 남아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종결아동 중 20세 이상이 58.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7~19세 이하 아동이 19.8%로 높게 나타났다.

위탁유형별로는 대리양육·친인척위탁종결아동은 평균연령이 18세로 전체 종결아동의 평균연령과 동일하였으며, 20세 이상 아동이 각각 61.3%, 63.4%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대리양육·친인척위탁아동의 경우 성인이 될 때까지 대부분 위탁가정에서 양육되어짐을 알 수 있다. 일반위탁종결아동의 평균 연령은 12세로 대리양육·친인척위탁아동에 비해 낮았으며, 4~7세가 21.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다른 연령대 비율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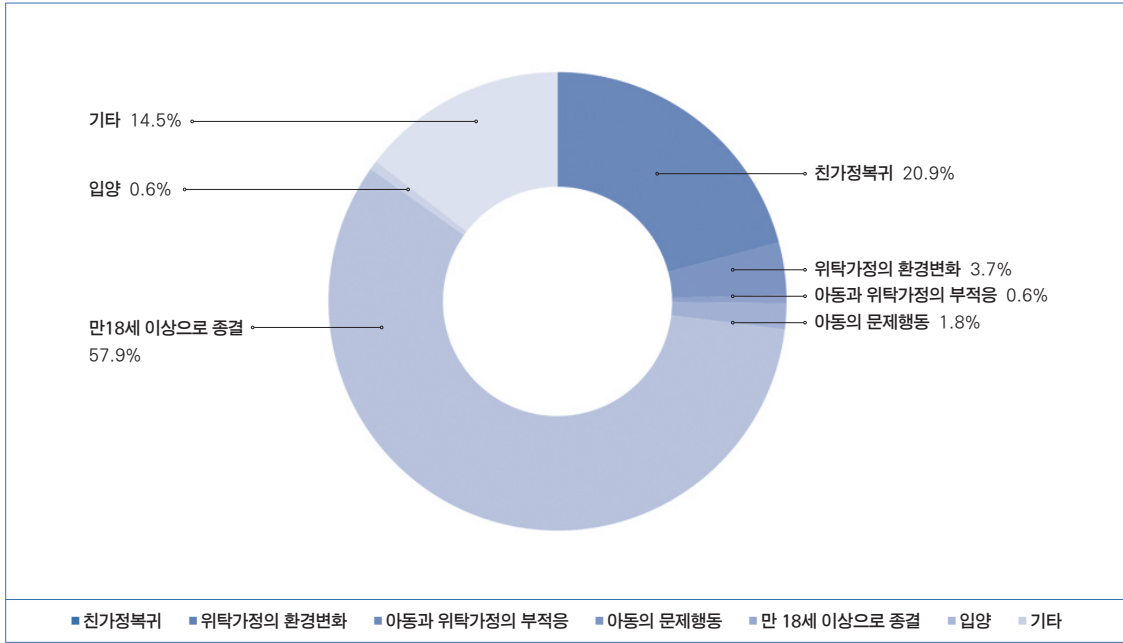
## ■ 가정위탁종결사유

〈표 3-22〉 가정위탁종결사유

단위 : 명, %

구 분	계	친가정복귀	위탁 가정의 환경변화	아동과 위탁가정의 부적응	아동의 문제행동	만18세 이상으로 종결	입양	기타
계	1,870	390	69	11	34	1,082	12	272
	100.0	20.9	3.7	0.6	1.8	57.9	0.6	14.5
대리양육	1,194	233	37	0	20	719	0	185
	100.0	19.5	3.1	0.0	1.7	60.2	0.0	15.5
친인척	541	83	26	7	8	335	5	77
	100.0	15.3	4.8	1.3	1.5	61.9	0.9	14.2
일 반	135	74	6	4	6	28	7	10
	100.0	54.8	4.4	3.0	4.4	20.7	5.2	7.4

〈그림 3-13〉 가정위탁종결사유



〈표 3-22〉는 종결아동의 위탁유형별 종결사유를 나타낸 것이다. 전체 종결아동 중 만 18세 이상으로 보호 종결되는 아동이 57.9%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종결아동의 평균연령이 높은 것과 연관됨을 알 수 있다. 친가정복귀가 20.9%, 기타가 14.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타는 연장보호종결 사유인 군입대, 여학연수, 국비유학 등의 사유가 포함되었다.

위탁유형별로 살펴보면, 대리양육·친인척위탁아동의 종결사유 중 만 18세 이상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각각 60.2%, 61.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일반위탁아동의 종결사유의 경우 친가정복귀가 54.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 종결사유에 따른 성별 및 연령

〈표 3-23〉 종결사유에 따른 성별 및 연령

단위 : 명, %

구분	계	성 별		연 령						
		남	여	1~3세	4~7세	8~10세	11~13세	14~16세	17~19세	20세 이상
계	1,870	1,090	780	22	53	46	100	179	370	1,100
	100.0	58.3	41.7	1.2	2.8	2.5	5.3	9.6	19.8	58.8
친가정복귀	390	190	200	15	45	32	61	120	104	13
	100.0	48.7	51.3	3.8	11.5	8.2	15.6	30.8	26.7	3.3
위탁 가정의 환경변화	69	38	31	1	1	6	14	17	22	8
	100.0	55.1	44.9	1.4	1.4	8.7	20.3	24.6	31.9	11.6
아동과 위탁 가정의 부적응	11	8	3	0	0	2	0	3	6	0
	100.0	72.7	27.3	0.0	0.0	18.2	0.0	27.3	54.5	0.0
아동의 문제행동	34	16	18	0	0	0	4	9	18	3
	100.0	47.1	52.9	0.0	0.0	0.0	11.8	26.5	52.9	8.8
만18세 이상으로 종결	1,082	637	445	0	0	0	0	0	165	917
	100.0	58.9	41.1	0.0	0.0	0.0	0.0	0.0	15.2	84.8
입양	12	6	6	2	4	2	2	2	0	0
	100.0	50.0	50.0	16.7	33.3	16.7	16.7	16.7	0.0	0.0
기타	272	195	77	4	3	4	19	28	55	159
	100.0	71.7	28.3	1.5	1.1	1.5	7.0	10.3	20.2	58.5

〈표 3-23〉은 종결사유에 따른 종결아동의 성별 및 연령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종결사유 중 대부분이 성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지만, 아동과 위탁가정의 부적응은 남아 72.7%, 여아 27.3%, 기타는 남아 71.7%, 여아 28.3%로 성별간 큰 차이를 보였다.

종결사유에 따른 연령 현황을 살펴보면, 만 18세 이상으로 종결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종결사유가 14~19세에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종결아동 1,870명 중 14세 이상의 아동이 1,649명이기 때문에 만 18세 이상으로 종결사유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종결사유가 14~19세에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 종결사유별 위탁사유

〈표 3-24〉 종결사유별 위탁사유

단위 : 명, %

구분	계	부모 모두 사망	부나 모의 사망	별거/가출	이혼	부모수감	실직·빈곤	부모질병	학대·방임	미혼모(부)/혼외출생	시설의뢰	부모장애	기타
계	1,870	76	496	529	578	52	28	27	30	38	7	2	7
	100	4.1	26.5	28.3	30.9	2.8	1.5	1.4	1.6	2.0	0.4	0.1	0.4
친가정복귀	390	3	50	119	125	33	6	11	19	20	1	1	2
	100	0.8	12.8	30.5	32.1	8.5	1.5	2.8	4.9	5.1	0.3	0.3	0.5
위탁가정의 환경변화	69	3	18	21	17	4	1	2	2	0	1	0	0
	100	4.3	26.1	30.4	24.6	5.8	1.4	2.9	2.9	0.0	1.4	0.0	0.0
아동과 위탁 가정의 부적응	11	0	3	2	5	0	0	1	0	0	0	0	0
	100	0.0	27.3	18.2	45.5	0.0	0.0	9.1	0.0	0.0	0.0	0.0	0.0
아동의 문제행동	34	5	8	7	10	0	0	0	1	1	2	0	0
	100	14.7	23.5	20.6	29.4	0.0	0.0	0.0	2.9	2.9	5.9	0.0	0.0
만18세 이상으로 종결	1,082	50	349	298	326	11	15	10	7	10	1	1	4
	100	4.6	32.3	27.5	30.1	1.0	1.4	0.9	0.6	0.9	0.1	0.1	0.4
입양	12	0	2	4	1	0	1	0	0	2	2	0	0
	100	0.0	16.7	33.3	8.3	0.0	8.3	0.0	0.0	16.7	16.7	0.0	0.0
기타	272	15	66	78	94	4	5	3	1	5	0	0	1
	100.0	5.5	24.3	28.7	34.6	1.5	1.8	1.1	0.4	1.8	0.0	0.0	0.4

〈표 3-24〉는 종결아동의 종결사유별 위탁사유를 나타낸 것이다. 전체 종결아동 중 위탁사유가 이혼이 30.9%, 별거/가출이 28.3%, 부나 모의 사망이 26.5% 순으로 나타났다.

친가정복귀, 아동과 위탁가정의 부적응, 아동의 문제행동, 기타의 사유로 종결된 아동의 위탁사유를 살펴보면 부모의 이혼이 각각 32.1%, 45.5%, 29.4%, 34.6%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또한 위탁가정의 환경변화 및 입양으로 종결된 아동은 위탁사유가 별거/가출인 경우가 각각 30.4%, 33.3%로 나타났으며, 만 18세 이상으로 종결된 아동은 부나 모의 사망으로 위탁된 경우가 32.3%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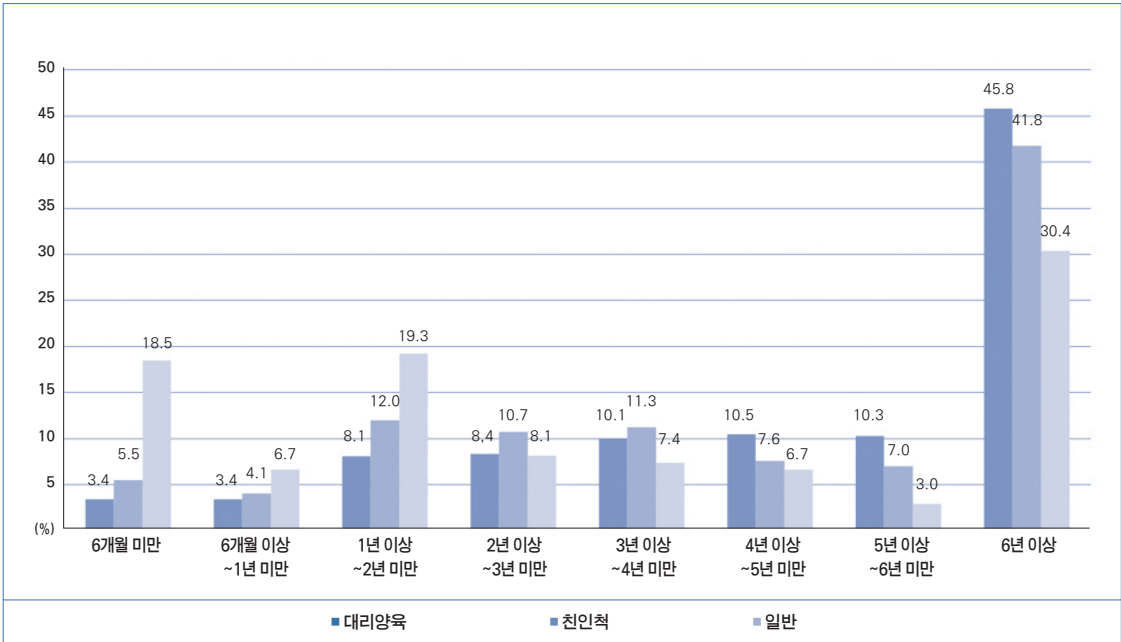
■ 종결아동유형별 위탁기간

〈표 3-25〉 종결아동유형별 위탁기간

단위 : 명, %

구분	계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평균 위탁기간
계	1,870	96	72	188	169	191	175	165	814	5년 5개월
	100.0	5.1	3.9	10.1	9.0	10.2	9.4	8.8	43.5	
대리양육	1,194	41	41	97	100	120	125	123	547	5년 8개월
	100.0	3.4	3.4	8.1	8.4	10.1	10.5	10.3	45.8	
친인척	541	30	22	65	58	61	41	38	226	5년 3개월
	100.0	5.5	4.1	12.0	10.7	11.3	7.6	7.0	41.8	
일 반	135	25	9	26	11	10	9	4	41	4년
	100.0	18.5	6.7	19.3	8.1	7.4	6.7	3.0	30.4	

〈그림 3-14〉 종결아동유형별 위탁기간



〈표 3-25〉는 종결아동의 유형별 위탁기간을 나타낸 것이다. 전체 종결아동의 평균 위탁기간이 5년 5개월로 나타났으며, 대리양육위탁아동은 5년 8개월, 친인척위탁아동은 5년 3개월로 대리양육·친인척위탁아동은 5년 이상 위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위탁아동은 평균 4년의 기간동안 위탁하는 것으로 나타나 혈연관계로 위탁하는 대리양육·친인척위탁아동보다 다소 짧은 기간 위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결아동의 위탁유형별 위탁기간을 살펴보면, 대리양육위탁아동, 친인척위탁아동, 일반위탁아동 모두 6년 이상 위탁되는 경우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종결아동의 사유 중 57.9%가 만 18세 이상으로 종결되는 것과 연관되어 성인이 될 때까지 장기간 위탁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대리양육위탁아동의 경우는 4년 이상~5년 미만이 10.5%, 친인척·일반위탁아동은 1년 이상~2년 미만이 각각 12.0%, 19.3%로 높게 나타났다. 대리양육위탁아동은 대부분 장기적으로 위탁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친인척·일반위탁아동은 대리양육위탁아동보다는 짧은 기간으로 위탁됨을 볼 수 있다.

### ■ 종결사유별 위탁기간

〈표 3-26〉 종결사유별 위탁기간

단위 : 명, %

구분	계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평균 위탁기간
계	1,870	96	72	188	169	191	175	165	814	5년 5개월
	100.0	5.1	3.9	10.1	9.0	10.2	9.4	8.8	43.5	
친가정복귀	390	60	33	73	38	35	31	38	82	3년 6개월
	100.0	15.4	8.5	18.7	9.7	9.0	7.9	9.7	21.0	
위탁가정의 환경변화	69	6	6	11	6	8	5	5	22	4년 3개월
	100.0	8.7	8.7	15.9	8.7	11.6	7.2	7.2	31.9	
아동과 위탁가정의 부적응	11	1	0	1	2	2	1	0	4	4년 8개월
	100.0	9.1	0.0	9.1	18.2	18.2	9.1	0.0	36.4	
아동의 문제행동	34	9	3	2	2	2	7	2	7	3년 7개월
	100.0	26.5	8.8	5.9	5.9	5.9	20.6	5.9	20.6	
만 18세 이상으로 종결	1,082	10	21	74	98	118	107	91	563	6년 3개월
	100.0	0.9	1.9	6.8	9.1	10.9	9.9	8.4	52.0	
입양	12	2	1	1	2	1	0	1	4	3년 5개월
	100.0	16.7	8.3	8.3	16.7	8.3	0.0	8.3	33.3	
기타	272	8	8	26	21	25	24	28	132	5년 8개월
	100.0	2.9	2.9	9.6	7.7	9.2	8.8	10.3	48.5	

〈표 3-26〉은 종결아동의 종결사유별 위탁기간을 나타낸 것이다. 평균위탁기간은 5년 5개월로 나타났으며, 입양, 친가정복귀, 아동의 문제행동으로 종결된 사유가 각각 평균 3년 5개월, 3년 6개월, 3년 7개월로 짧게 나타났다. 2013년도에는 기타가 2년 11개월, 친가정복귀가 3년 8개월, 입양이 3년 9개월인데 비해, 친가정복귀와 입양 평균 위탁기간이 짧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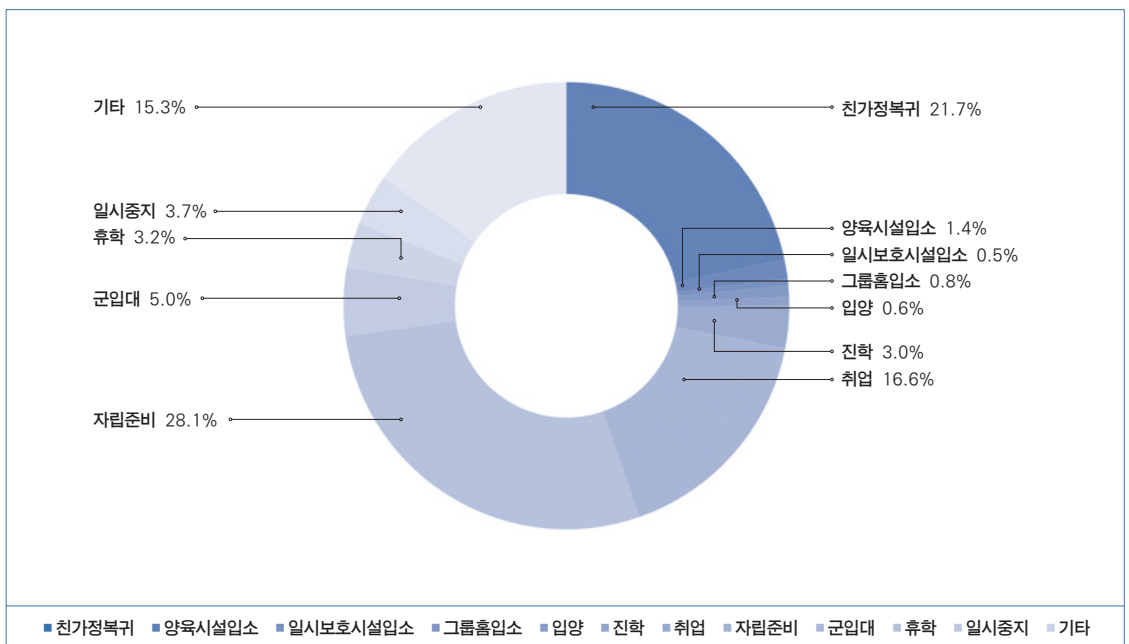
## ■ 종결 후 배치

〈표 3-27〉 종결 후 배치

단위 : 명, %

구분	계	친가정복귀	양육시설 입소	일시보호 시설입소	그룹홈 입소	입양	진학	취업	자립준비	군입대	휴학	일시중지	기타
계	1,870	405	26	10	15	12	57	311	526	93	60	69	286
	100	21.7	1.4	0.5	0.8	0.6	3.0	16.6	28.1	5.0	3.2	3.7	15.3
대리양육	1,194	242	13	4	4	0	32	207	353	69	35	48	187
	100	20.3	1.1	0.3	0.3	0.0	2.7	17.3	29.6	5.8	2.9	4.0	15.7
친인척	541	85	9	5	3	5	22	95	163	24	21	20	89
	100	15.7	1.7	0.9	0.6	0.9	4.1	17.6	30.1	4.4	3.9	3.7	16.5
일 반	135	78	4	1	8	7	3	9	10	0	4	1	10
	100	57.8	3.0	0.7	5.9	5.2	2.2	6.7	7.4	0.0	3.0	0.7	7.4

〈그림 3-15〉 종결 후 배치



〈표 3-27〉은 종결아동의 위탁유형별 종결 후 배치를 나타낸 것이다. 전체 위탁아동의 종결 후 배치는 자립준비가 28.1%, 친가정복귀가 21.7% 순으로 나타났다.

위탁유형별로 살펴보면, 대리양육위탁아동, 친인척위탁아동이 종결 후 자립준비가 각각 29.6%, 30.1%로 나타났으며, 일반위탁아동은 종결 후에 친가정으로 복귀되는 경우가 57.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리양육·친인척위탁아동은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위탁가정에 머물기 때문에 종결 후 자립준비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일반위탁아동은 위탁보호 중에 친가정의 기능이 회복되어, 종결 후 친가정으로 복귀되는 비율이 57.8%로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종결 후 배치에 따른 성별 및 연령

〈표 3-28〉 종결 후 배치에 따른 성별 및 연령

단위 : 명, %

구분	계	성 별		연 령						
		남	여	1~3세	4~7세	8~10세	11~13세	14~16세	17~19세	20세 이상
계	1,870	1,090	780	22	53	46	100	179	370	1,100
	100.0	58.3	41.7	1.2	2.8	2.5	5.3	9.6	19.8	58.8
친가정복귀	405	202	203	17	46	32	65	125	106	14
	100.0	49.9	50.1	4.2	11.4	7.9	16.0	30.9	26.2	3.5
양육시설 입소	26	17	9	1	1	6	7	8	2	1
	100.0	65.4	34.6	3.8	3.8	23.1	26.9	30.8	7.7	3.8
일시보호 시설입소	10	4	6	0	1	0	1	4	4	0
	100.0	40.0	60.0	0.0	10.0	0.0	10.0	40.0	40.0	0.0
그룹홈입소	15	9	6	0	0	0	5	6	4	0
	100.0	60.0	40.0	0.0	0.0	0.0	33.3	40.0	26.7	0.0
입양	12	6	6	2	4	2	2	2	0	0
	100.0	50.0	50.0	16.7	33.3	16.7	16.7	16.7	0.0	0.0
진학	57	35	22	0	0	2	1	3	6	45
	100.0	61.4	38.6	0.0	0.0	3.5	1.8	5.3	10.5	78.9
취업	311	171	140	0	0	0	0	0	61	250
	100.0	55.0	45.0	0.0	0.0	0.0	0.0	0.0	19.6	80.4
자립준비	526	281	245	0	0	0	0	1	99	426
	100.0	53.4	46.6	0.0	0.0	0.0	0.0	0.2	18.8	81.0
군입대	93	93	0	0	0	0	0	0	6	87
	100.0	100.0	0.0	0.0	0.0	0.0	0.0	0.0	6.5	93.5
일시중지	69	69	0	0	0	0	0	0	3	66
	100.0	100.0	0.0	0.0	0.0	0.0	0.0	0.0	4.3	95.7
휴학	60	45	15	0	0	0	0	0	3	57
	100.0	75.0	25.0	0.0	0.0	0.0	0.0	0.0	5.0	95.0
기타	286	158	128	2	1	4	19	30	76	154
	100.0	55.2	44.8	0.7	0.3	1.4	6.6	10.5	26.6	53.8

〈표 3-28〉은 종결아동의 종결 후 배치에 따른 성별 및 연령을 나타낸 것이다. 전체 종결아동의 종결 후 배치는 자립준비와 친가정복귀가 가장 많았으며, 성별의 차이는 거의 없었으나, 양육시설입소는 남아 65.4%, 여아 34.6%, 진학은 남아 61.4%, 여아 38.6%, 휴학은 남아 75.0%, 여아 25.0%로 남아가 여아에 비해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 ■ 종결 후 배치에 따른 위탁사유

〈표 3-29〉 종결 후 배치에 따른 위탁사유

단위 : 명, %

구분	계	부모 모두 사망	부나 모의 사망	별거/가출	이혼	부모수감	실직·빈곤	부모질병	학대·방임	미혼모(부)/혼외출생	시설의뢰	부모장애	기타
계	1,870	76	496	529	578	52	28	27	30	38	7	2	7
	100.0	4.1	26.5	28.3	30.9	2.8	1.5	1.4	1.6	2.0	0.4	0.1	0.4
친가정복귀	405	3	50	124	133	33	6	11	20	21	1	1	2
	100.0	0.7	12.3	30.6	32.8	8.1	1.5	2.7	4.9	5.2	0.2	0.2	0.5
양육시설 입소	26	3	7	7	5	0	1	2	0	0	1	0	0
	100.0	11.5	26.9	26.9	19.2	0.0	3.8	7.7	0.0	0.0	3.8	0.0	0.0
일시보호 시설입소	10	1	2	1	3	1	0	1	0	0	1	0	0
	100.0	10.0	20.0	10.0	30.0	10.0	0.0	10.0	0.0	0.0	10.0	0.0	0.0
그룹홈입소	15	1	4	3	3	0	0	1	2	0	1	0	0
	100.0	6.7	26.7	20.0	20.0	0.0	0.0	6.7	13.3	0.0	6.7	0.0	0.0
입양	12	0	2	4	1	0	1	0	0	2	2	0	0
	100.0	0.0	16.7	33.3	8.3	0.0	8.3	0.0	0.0	16.7	16.7	0.0	0.0
진학	57	6	20	11	14	1	1	2	1	1	0	0	0
	100.0	10.5	35.1	19.3	24.6	1.8	1.8	3.5	1.8	1.8	0.0	0.0	0.0
취업	311	9	113	81	94	1	4	2	2	2	1	1	1
	100.0	2.9	36.3	26.0	30.2	0.3	1.3	0.6	0.6	0.6	0.3	0.3	0.3
자립준비	526	23	161	143	175	7	3	3	3	5	0	0	3
	100.0	4.4	30.6	27.2	33.3	1.3	0.6	0.6	0.6	1.0	0.0	0.0	0.6
군입대	93	4	30	25	28	1	2	2	0	1	0	0	0
	100.0	4.3	32.3	26.9	30.1	1.1	2.2	2.2	0.0	1.1	0.0	0.0	0.0
일시중지	69	4	23	17	23	0	0	0	1	1	0	0	0
	100.0	5.8	33.3	24.6	33.3	0.0	0.0	0.0	1.4	1.4	0.0	0.0	0.0
휴학	60	4	22	21	9	1	2	0	1	0	0	0	0
	100.0	6.7	36.7	35.0	15.0	1.7	3.3	0.0	1.7	0.0	0.0	0.0	0.0
기타	286	18	62	92	90	7	8	3	0	5	0	0	1
	100.0	6.3	21.7	32.2	31.5	2.4	2.8	1.0	0.0	1.7	0.0	0.0	0.3

〈표 3-29〉는 종결 후 배치에 따른 위탁사유를 나타낸 것이다. 종결 후 친가정복귀가 된 경우와 일시보호시설, 자립준비 등으로 배치된 아동은 이혼으로 위탁된 사유가 각각 32.8%, 30.0%, 33.3%로 가장 많았다. 그룹홈입소, 진학, 취업, 군입대, 휴학은 부나 모의 사망으로 위탁된 아동이 각각 26.7%, 35.1%, 36.3%, 32.3%, 36.7%로 가장 많았다. 종결 후 양육시설입소로 배치된 경우는 부나 모의 사망 및 별거/가출로 위탁된 아동이 26.9%로 동일하게 나타났고, 일시중지의 경우도 부나 모의 사망 및 별거/가출로 위탁된 경우가 33.3%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입양이나 기타인 경우 별거/가출로 위탁된 아동은 각각 33.3%, 32.2%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 ■ 종결 후 배치에 따른 종결사유

〈표 3-30〉 종결 후 배치에 따른 종결사유

단위 : 명, %

구분	계	친가정복귀	위탁 가정의 환경변화	아동과 위탁가정의 부적응	아동의 문제행동	만18세 이상으로 종결	입양	기타
계	1,870	390	69	11	34	1,082	12	272
	100.0	20.9	3.7	0.6	1.8	57.9	0.6	14.5
친가정복귀	405	390	6	0	1	1	0	7
	100.0	96.3	1.5	0.0	0.2	0.2	0.0	1.7
양육시설입소	26	0	11	3	6	0	0	6
	100.0	0.0	42.3	11.5	23.1	0.0	0.0	23.1
일시보호 시설입소	10	0	1	1	5	0	0	3
	100.0	0.0	10.0	10.0	50.0	0.0	0.0	30.0
그룹홈입소	15	0	8	4	3	0	0	0
	100.0	0.0	53.3	26.7	20.0	0.0	0.0	0.0
입양	12	0	0	0	0	0	12	0
	100.0	0.0	0.0	0.0	0.0	0.0	100.0	0.0
진학	57	0	6	0	0	44	0	7
	100.0	0.0	10.5	0.0	0.0	77.2	0.0	12.3
취업	311	0	0	0	1	299	0	11
	100.0	0.0	0.0	0.0	0.3	96.1	0.0	3.5
자립준비	526	0	10	1	6	499	0	10
	100.0	0.0	1.9	0.2	1.1	94.9	0.0	1.9
군입대	93	0	0	0	0	78	0	15
	100.0	0.0	0.0	0.0	0.0	83.9	0.0	16.1
일시중지	69	0	0	0	0	0	0	69
	100.0	0.0	0.0	0.0	0.0	0.0	0.0	100
휴학	60	0	0	0	0	60	0	0.0
	100.0	0.0	0.0	0.0	0.0	100.0	0.0	0.0
기타	286	0	27	2	12	101	0	144
	100.0	0.0	9.4	0.7	4.2	35.3	0.0	50.3

〈표 3-30〉는 종결아동의 종결 후 배치에 따른 종결사유를 나타낸 것이다. 종결 후 배치가 양육시설입소인 경우는 위탁가정의 환경변화로 위탁이 종결됐을 때가 42.3%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종결 후 일시보호시설입소로 배치된 경우는 아동의 문제행동으로의 종결이 50.0%, 그룹홈입소는 위탁가정의 환경변화로의 종결이 53.3%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는 위탁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기 어렵거나 위탁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등 위탁가정의 환경변화로 종결됐을 때 아동이 시설로 많이 입소되고 있으며, 아동의 문제 행동으로 종결된 아동은 일시적으로 시설에 입소하여 보호조치에 대기하고 있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종결 후 배치는 진학, 취업, 자립준비, 군입대, 휴학 모두 만 18세 이상 보호 종결 사유로 종결된 아동들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 4. 위탁가정

- 1) 위탁가정
- 2) 신규위탁가정







## 4. 위탁가정

### 1) 위탁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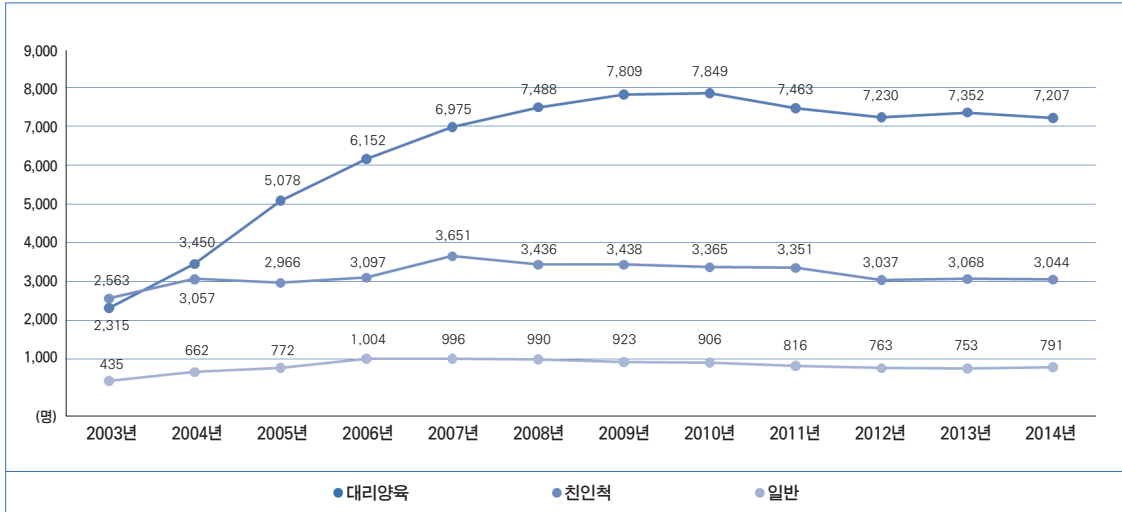
#### ■ 연도별 위탁가정 수

〈표 4-1〉 연도별 위탁가정 수

단위 : 세대, %

년도	구분	계	대리양육	친인척	일반
2014년		11,042	7,207	3,044	791
		100.0	65.3	27.6	7.2
2013년		11,173	7,352	3,068	753
		100.0	65.8	27.5	6.7
2012년		11,030	7,230	3,037	763
		100.0	65.6	27.5	6.9
2011년		11,630	7,463	3,351	816
		100.0	64.2	28.8	7.0
2010년		12,120	7,849	3,365	906
		100.0	64.7	27.8	7.5
2009년		12,170	7,809	3,438	923
		100.0	64.2	28.2	7.6
2008년		11,914	7,488	3,436	990
		100.0	62.9	28.8	8.3
2007년		11,622	6,975	3,651	996
		100.0	60.0	31.4	8.6
2006년		10,253	6,152	3,097	1,004
		100.0	60.0	30.2	9.8
2005년		8,816	5,078	2,966	772
		100.0	57.6	33.6	8.8
2004년		7,169	3,450	3,057	662
		100.0	48.1	42.7	9.2
2003년		5,313	2,315	2,563	435
		100.0	43.6	48.2	8.2

〈그림 4-1〉 연도별 위탁가정



〈표 4-1〉은 연도별 위탁가정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2014년 위탁가정 세대는 총 11,042세대로 2013년 11,173세대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으며, 2014년 위탁아동 수가 2013년에 비해 줄어든 것과 동일한 변화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위탁아동의 감소 또는 증가에 비례하여 아동을 보호하는 위탁가정의 수도 감소하거나 증가하기 때문이다.

2014년도 위탁가정의 유형별 비율은 대리양육위탁가정 65.3%, 친인척위탁가정 27.6%, 일반위탁가정 7.2%로 나타났다. 2013년도에 비해 대리양육위탁가정의 비율은 0.5%p 감소하였고, 친인척위탁가정은 0.1%p 차이로 비슷한 비율을 나타냈으며, 일반위탁가정은 0.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가정 유형별 세대 수의 연도별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대리양육과 친인척위탁가정 세대 수가 2004년까지는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으나 2006년부터는 대리양육위탁가정 세대 수가 친인척위탁가정 세대 수보다 두 배 가까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위탁가정 세대는 2003년 435세대에서 2014년 791세대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나 전체 위탁가정 세대 수 비율은 8.2%에서 7.2%로 감소하였다.

## ■ 지역센터별 위탁가정 수

〈표 4-2〉 지역센터별 위탁가정 수

단위 : 세대, %

구 분	계	대리양육	친인척	일 반
계	11,042	7,207	3,044	791
	100.0	65.3	27.6	7.2
서 울	1,026	617	349	60
	100.0	60.1	34.0	5.8
부 산	660	370	239	51
	100.0	56.1	36.2	7.7
대 구	241	128	72	41
	100.0	53.1	29.9	17.0
인 천	620	350	211	59
	100.0	56.5	34.0	9.5
광 주	268	138	105	25
	100.0	51.5	39.2	9.3
대 전	207	113	67	27
	100.0	54.6	32.4	13.0
울 산	196	111	62	23
	100.0	56.6	31.6	11.7
경 기	1,298	789	448	61
	100.0	60.8	34.5	4.7
경기북부	610	370	179	61
	100.0	60.7	29.3	10.0
강 원	1,048	785	202	61
	100.0	74.9	19.3	5.8
충 북	436	294	104	38
	100.0	67.4	23.9	8.7
충 남	514	336	129	49
	100.0	65.4	25.1	9.5
전 북	709	491	169	49
	100.0	69.3	23.8	6.9
전 남	1,147	942	178	27
	100.0	82.1	15.5	2.4
경 북	866	582	204	80
	100.0	67.2	23.6	9.2
경 남	922	589	271	62
	100.0	63.9	29.4	6.7
제 주	274	202	55	17
	100.0	73.7	20.1	6.2

〈표 4-2〉는 지역센터별 위탁가정의 수를 나타낸 것이다. 위탁가정 세대 수는 경기도 1,298세대, 전남 1,147세대, 강원 1,048세대, 서울 1,026세대 순으로 나타났다. 위탁가정의 유형별 분포를 지역센터별로 살펴보면, 대리양육위탁가정은 전남 82.1%, 강원 74.9%, 제주 73.7% 순으로 나타나 도 단위 지역센터의 대리양육위탁가정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친인척위탁가정은 광주 39.2%, 부산 36.2%, 경기 34.5% 순으로 나타났고, 일반위탁가정은 대구 17.0%, 대전 13.0%, 울산 11.7% 순으로 나타나 대리양육위탁가정과 반대로 대부분 광역시 단위 지역센터에서 친인척위탁가정과 일반위탁가정 비율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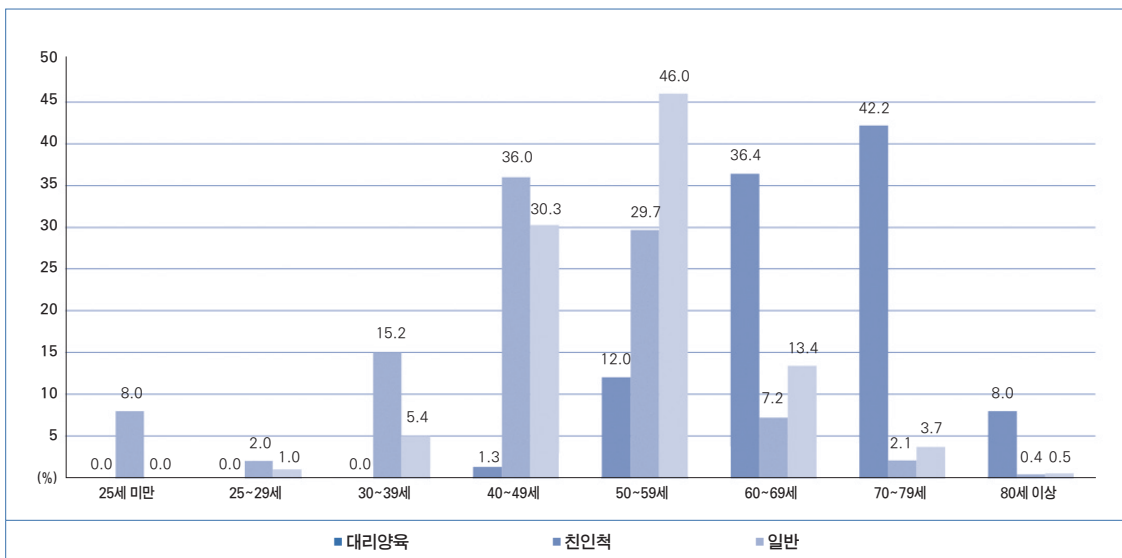
### ■ 위탁부모 연령

〈표 4-3〉 위탁부모 연령

단위 : 세대, %

구분	계	25세 미만	2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계	11,042	233	57	508	1,433	2,135	2,949	3,131	596
	100.0	2.1	0.5	4.6	13.0	19.3	26.7	28.4	5.4
대리양육	7,207	1	0	2	97	866	2,624	3,038	579
	100.0	0.0	0.0	0.0	1.3	12.0	36.4	42.2	8.0
친인척	3,044	232	52	463	1,096	905	219	64	13
	100.0	8.0	2.0	15.2	36.0	29.7	7.2	2.1	0.4
일반	791	0	5	43	240	364	106	29	4
	100.0	0.0	1.0	5.4	30.3	46.0	13.4	3.7	0.5

〈그림 4-2〉 위탁부모 연령



〈표 4-3〉은 위탁부모 연령을 위탁유형별로 나타낸 것이며, 위탁가정의 부모 중 주 양육자 한 명의 연령이다. 70~79세 3,131세대(28.4%), 60~69세 2,949세대(26.7%), 50~59세 2,135세대(19.3%) 순으로 나타났다. 60~79세의 위탁부모가 55.1%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대리양육위탁세대의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위탁유형별 위탁부모 연령을 살펴보면, 대리양육위탁부모는 70세 이상이 3,617명(50.2%)으로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60~69세 2,624명(36.4%), 50~59세 866명(12.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친인척위탁부모의 연령은 40~49세 1,096명(36.0%), 50~59세 905명(29.7%), 30~39세 463명(15.2%), 25세 미만이 232명(8.0%) 순으로 나타났다. 위탁부모의 연령은 대부분 40~59세(65.7%)에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5세 미만의 친인척위탁부모는 232명(8.0%)으로 2013년 192명(6.3%)에 비해 40명(1.7%p)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만 18세 이상으로 보호 종결되어 자립한 형제자매가 위탁부모로 책정된 사례이다. 일반위탁부모는 50~59세 364명(46.0%), 40~49세 240명(30.3%), 60~69세 106명(13.4%)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일반위탁부모는 친자녀가 독립할 시기인 50대인 50~59세에 위탁아동을 양육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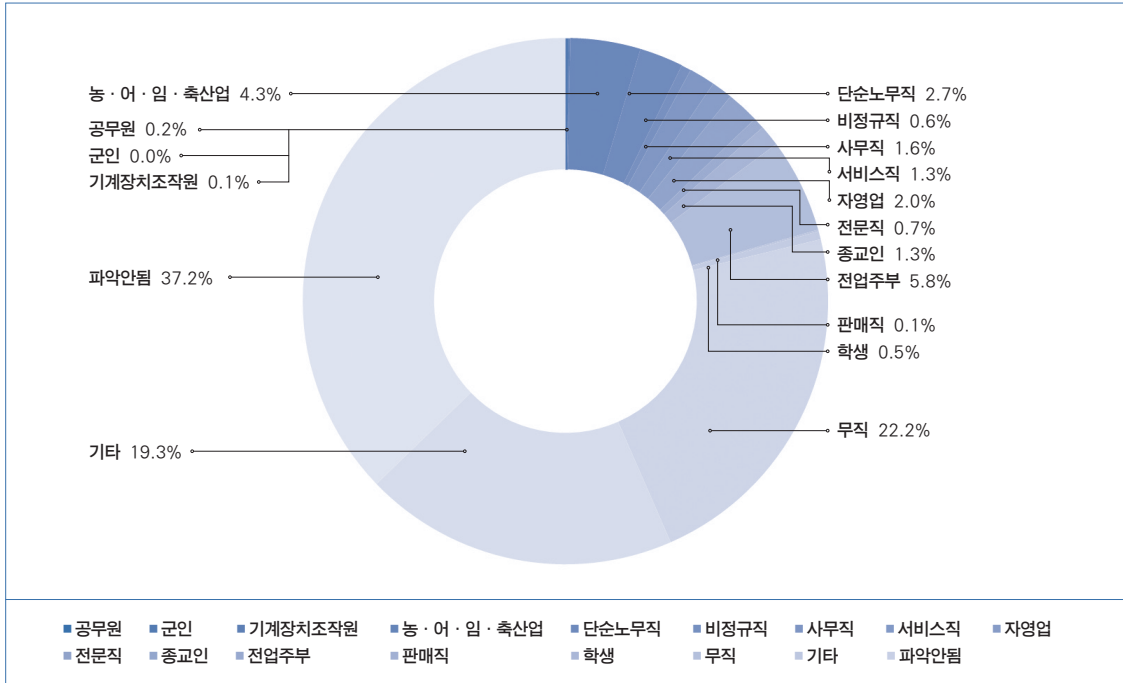
## ■ 위탁부모 직업

〈표 4-4〉 위탁부모 직업

단위 : 세대, %

구분	계	공무원	군인	기계 장치 조작원	농· 어· 임· 축산업	단순 노무직	비정규직	사무직	서비스직	자영업	전문직	종교인	전업 주부	판매직	학생	무직	기타	파악 안됨
계	11,042	26	5	8	473	302	63	181	144	216	81	149	643	12	50	2,452	2,129	4,108
	100.0	0.2	0.0	0.1	4.3	2.7	0.6	1.6	1.3	2.0	0.7	1.3	5.8	0.1	0.5	22.2	19.3	37.2
대리양육	7,207	2	0	1	371	201	25	26	25	45	5	12	128	3	11	2,169	1,390	2,793
	100.0	0.0	0.0	0.0	5.1	2.8	0.3	0.4	0.3	0.6	0.1	0.2	1.8	0.0	0.2	30.1	19.3	38.8
친인척	3,044	9	5	6	85	89	30	118	85	108	26	16	249	6	39	238	620	1,315
	100.0	0.3	0.2	0.2	2.8	2.9	1.0	3.9	2.8	3.5	0.9	0.5	8.2	0.2	1.3	7.8	20.4	43.2
일 반	791	15	0	1	17	12	8	37	34	63	50	121	266	3	0	45	119	0
	100.0	1.9	0.0	0.1	2.1	1.5	1.0	4.7	4.3	8.0	6.3	15.3	33.6	0.4	0.0	5.7	15.0	0.0

〈그림 4-3〉 위탁부모 직업



〈표 4-4〉는 위탁부모의 직업을 위탁유형별로 나타낸 것이다. 위탁가정의 부모 중 주 양육자 한 명의 직업이며, 위탁가정의 주 수입원의 정보가 아닐 수 있다. 대리양육·친인척위탁가정은 파악되지 않은 세대가 각각 38.8%, 43.2%로 나타났다.

직업이 파악되지 않거나 명확하지 않은 기타를 제외하고 위탁부모의 직업을 살펴보면, 대리양육위탁가정은 무직이 30.1%로 가장 높았으며, 농·어·임·축산업 5.1%, 단순노무직 2.8%, 전업주부 1.8% 순으로 나타났다. 친인척위탁가정은 전업주부 8.2%, 무직 7.8%, 사무직 3.9%, 자영업 3.5% 순으로 조사되었다. 일반위탁가정은 전업주부가 33.6%로 가장 높았고, 종교인 15.3%, 자영업 8.0% 순으로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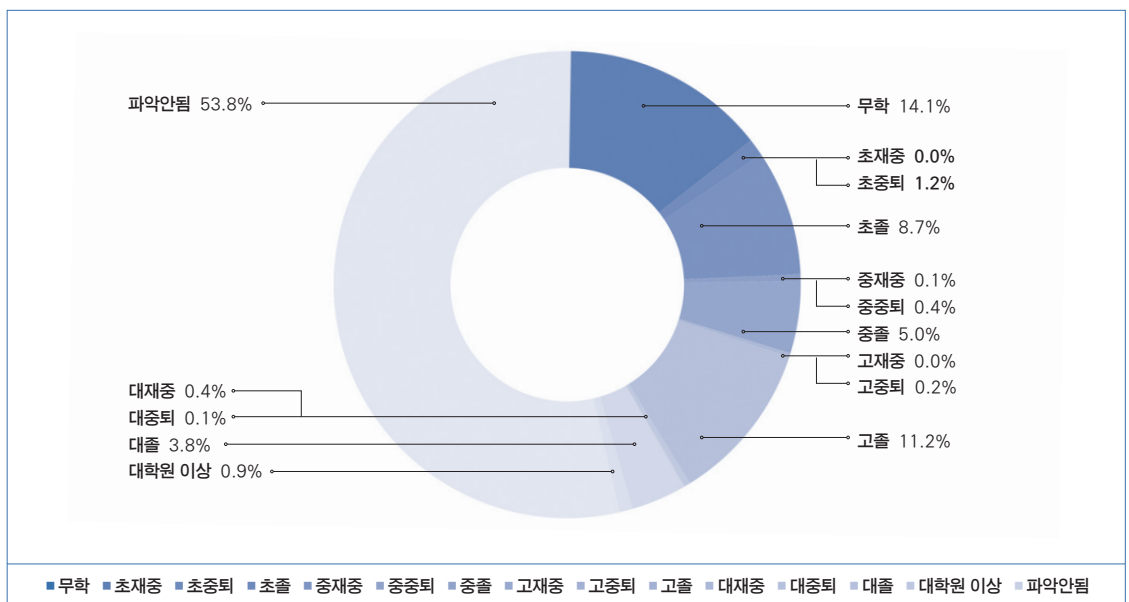
## ■ 위탁부모 학력

〈표 4-5〉 위탁부모 학력

단위 : 세대, %

유형	계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이상	파악 안됨
			재학	중퇴	졸업	재학	중퇴	졸업	재학	중퇴	졸업	재학	중퇴	졸업		
계	11,042	1,561	5	127	960	6	47	552	3	25	1,234	47	9	417	103	5,946
	100.0	14.1	0.0	1.2	8.7	0.1	0.4	5.0	0.0	0.2	11.2	0.4	0.1	3.8	0.9	53.8
대리양육	7,207	1,388	5	110	830	4	29	370	2	10	264	0	1	22	12	4,160
	100.0	19.3	0.1	1.5	11.5	0.1	0.4	5.1	0.0	0.1	3.7	0.0	0.0	0.3	0.2	57.7
친인척	3,044	146	0	11	93	2	15	135	1	10	667	41	4	120	13	1,786
	100.0	4.8	0.0	0.4	3.1	0.1	0.5	4.4	0.0	0.3	21.9	1.3	0.1	3.9	0.4	58.7
일 반	791	27	0	6	37	0	3	47	0	5	303	6	4	275	78	0
	100.0	3.4	0.0	0.8	4.7	0.0	0.4	5.9	0.0	0.6	38.3	0.8	0.5	34.8	9.9	0.0

〈그림 4-4〉 위탁부모 학력



〈표 4-5〉는 위탁부모의 학력을 위탁유형별로 나타낸 것이며, 위탁가정의 부모 중 주 양육자 한 명의 학력으로 조사하였다. 학력이 파악되지 않는 세대는 전체의 53.8%에 달하며, 학력이 파악된 세대의 위탁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대리양육위탁부모는 무학 19.3%, 초등학교 졸업 11.5%, 중학교 졸업 5.1% 순으로 나타났다. 친인척위탁부모는 고등학교 졸업 21.9%, 무학 4.8%, 중학교 졸업 4.4%로 대리양육위탁부모보다는 학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위탁부모는 고등학교 졸업 38.3%, 대학교 졸업 34.8%, 대학원 이상이 9.9%순으로 높게 나타나 대체적으로 다른 유형의 위탁가정에 비해 학력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대리양육위탁부모의 학력이 특히 낮은 것은 의무교육제도가 정착되기 이전에 학령기를 보낸 고연령대의 위탁부모가 다수 포함되어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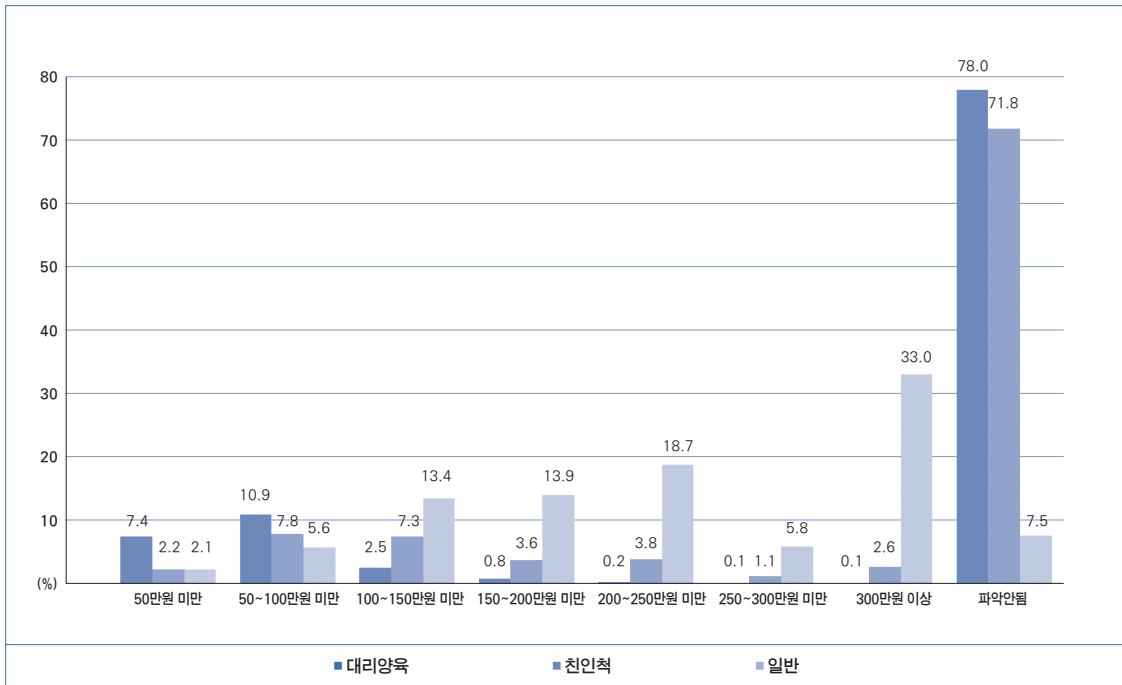
### ■ 위탁가정 소득

〈표 4-6〉 위탁가정 소득

단위 : 세대, %

구 분	계	50만원 미만	50~100만원 미만	100~150만원 미만	150~200만원 미만	200~250만원 미만	250~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파악안됨
계	11,042	616	1,066	508	274	281	84	346	7,867
	100.0	5.6	9.7	4.6	2.5	2.5	0.8	3.1	71.2
대리양육	7,207	533	785	181	55	18	6	7	5,622
	100.0	7.4	10.9	2.5	0.8	0.2	0.1	0.1	78.0
친인척	3,044	66	237	221	109	115	32	78	2,186
	100.0	2.2	7.8	7.3	3.6	3.8	1.1	2.6	71.8
일 반	791	17	44	106	110	148	46	261	59
	100.0	2.1	5.6	13.4	13.9	18.7	5.8	33.0	7.5

〈그림 4-5〉 위탁가정 소득



〈표 4-6〉은 위탁가정의 소득을 위탁유형별로 나타낸 것이다. 소득이 파악되지 않은 7,867세대(71.2%)를 제외하면 50~100만원 미만이 9.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위탁유형별로 파악된 위탁가정의 소득을 살펴보면 대리양육·친인척위탁가정 모두 50~100만원 미만의 소득이 각각 10.9%, 7.8%로 나타났다. 일반위탁가정은 300만원 이상이 33.0%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리양육·친인척위탁가정에 비해 소득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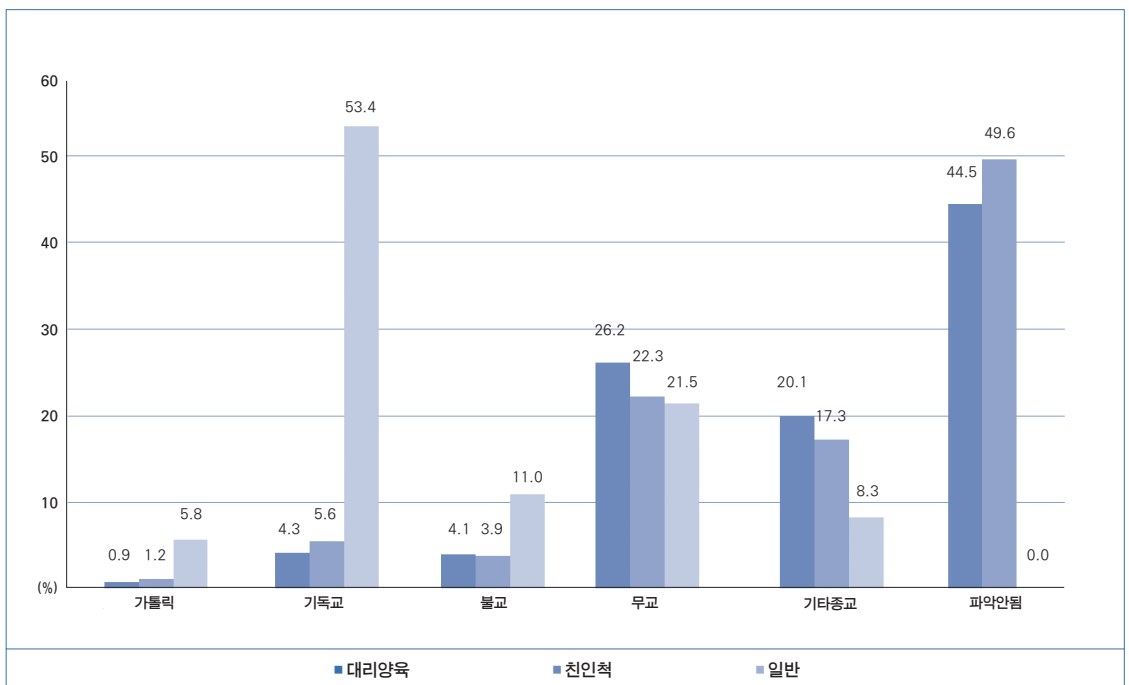
## ■ 위탁가정 종교

〈표 4-7〉 위탁가정 종교

단위 : 세대, %

유형	계	가톨릭	기독교	불교	무교	기타종교	파악안됨
계	11,042	144	900	503	2,738	2,040	4,717
	100.0	1.3	8.2	4.6	24.8	18.5	42.7
대리양육	7,207	62	307	298	1,888	1,446	3,206
	100.0	0.9	4.3	4.1	26.2	20.1	44.5
친인척	3,044	36	171	118	680	528	1,511
	100.0	1.2	5.6	3.9	22.3	17.3	49.6
일 반	791	46	422	87	170	66	0
	100.0	5.8	53.4	11.0	21.5	8.3	0.0

〈그림 4-6〉 위탁가정 종교



〈표 4-7〉은 위탁가정의 종교를 위탁유형별로 나타낸 것이다. 종교가 파악되지 않은 4,717세대(42.7%)를 제외하고 위탁가정의 종교분포를 위탁유형별로 살펴보면, 대리양육·친인척위탁가정은 유사한 종교분포를 보인다. 무교가 각각 26.2%, 22.3%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천도교, 원불교 등 기타종교는 각각 20.1%, 17.3%로 나타났으며, 기독교는 각각 4.3%, 5.6%, 불교는 각각 4.1%, 3.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일반위탁가정은 78.5%가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독교가 절반 이상인 53.4%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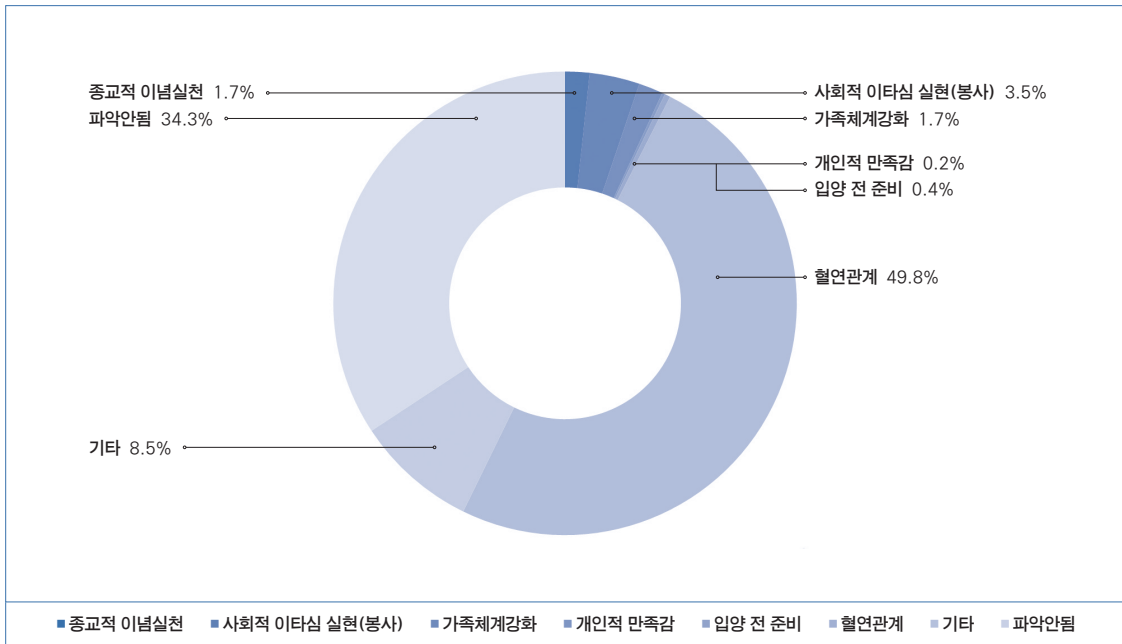
## ■ 위탁가정 참여 동기

〈표 4-8〉 위탁가정 참여 동기

단위 : 세대, %

구분	계	종교적 이념실천	사회적 이타심실현	가족체계강화	개인적 만족감	입양 전 준비	혈연관계	기타	파악안됨
계	11,042	183	386	184	25	47	5,495	939	3,783
	100.0	1.7	3.5	1.7	0.2	0.4	49.8	8.5	34.3
대리양육	7,207	3	11	130	3	20	3,919	564	2,557
	100.0	0.0	0.2	1.8	0.0	0.3	54.4	7.8	35.5
친인척	3,044	8	2	36	0	9	1,569	194	1,226
	100.0	0.3	0.1	1.2	0.0	0.3	51.5	6.4	40.3
일 반	791	172	373	18	22	18	7	181	0
	100.0	21.7	47.2	2.3	2.8	2.3	0.9	22.9	0.0

〈그림 4-7〉 위탁가정 참여 동기



〈표 4-8〉은 위탁가정의 참여 동기를 위탁유형별로 나타낸 것이다. 위탁가정의 참여 동기는 최초 동기만 기재하였다. 위탁가정에 참여하게 된 동기가 조사되지 않은 3,783세대(34.3%)를 제외하고 위탁가정 참여 동기를 살펴보면, 대리양육·친인척위탁가정은 혈연관계가 각각 54.4%, 51.5%로 가장 높았으며, 일반위탁가정은 사회적 이타심 실현이 47.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일반위탁가정의 참여 동기 중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기타(22.9%)이며, 그 다음으로는 종교적 이념실천(21.7%)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표 4-7〉에서 종교를 갖고 있는 일반위탁가정 621세대 중 종교적 이념을 실천하기 위해 가정위탁보호 사업에 동참하고 있는 가정은 172세대(27.7%)임을 알 수 있다.

대리양육·친인척위탁가정은 참여동기가 기타인 경우가 각각 7.8%, 6.4%로 공무원의 권유, 지인의 부탁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일반위탁가정 중 참여동기가 혈연관계인 경우가 0.9%로 나타났는데, 이는 최초 대리양육·친인척위탁부모로서 이들이 혈연관계인 아동을 양육하면서 혈연관계가 없는 다른 아동도 양육하기를 희망한 경우, 초기 위탁 참여 동기만 조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 지역센터별 예비 일반위탁가정 수

〈표 4-9〉 지역센터별 예비 일반위탁가정 수

단위 : 세대

구 분	예비 일반위탁가정 수
계	2,034
서울	15
부산	104
대구	51
인천	61
광주	56
대전	303
울산	95
경기	199
경기북부	230
강원	185
충북	132
충남	65
전북	134
전남	40
경북	84
경남	168
제주	112

〈표 4-9〉는 지역센터별 예비 일반위탁가정 수를 살펴본 것이다. 예비 일반위탁가정은 위탁아동의 보호·양육을 희망하여 예비위탁부모 교육을 이수하고 위탁아동의 양육을 기다리고 있거나, 이미 위탁아동을 양육하다가 친가정으로 복귀시키고 다른 아동을 양육하기 위해 대기하는 가정을 모두 포함한다. 2013년 1,431세대였던 것에 비해 2014년에는 2,034세대로 그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지역센터별로는 대전 303세대, 경기북부 230세대, 경기 199세대, 강원 185세대, 경남 168세대, 전북 134세대 순으로 높게 나타나, 광역시 단위 지역센터보다 도 단위 지역센터에서 예비 일반위탁가정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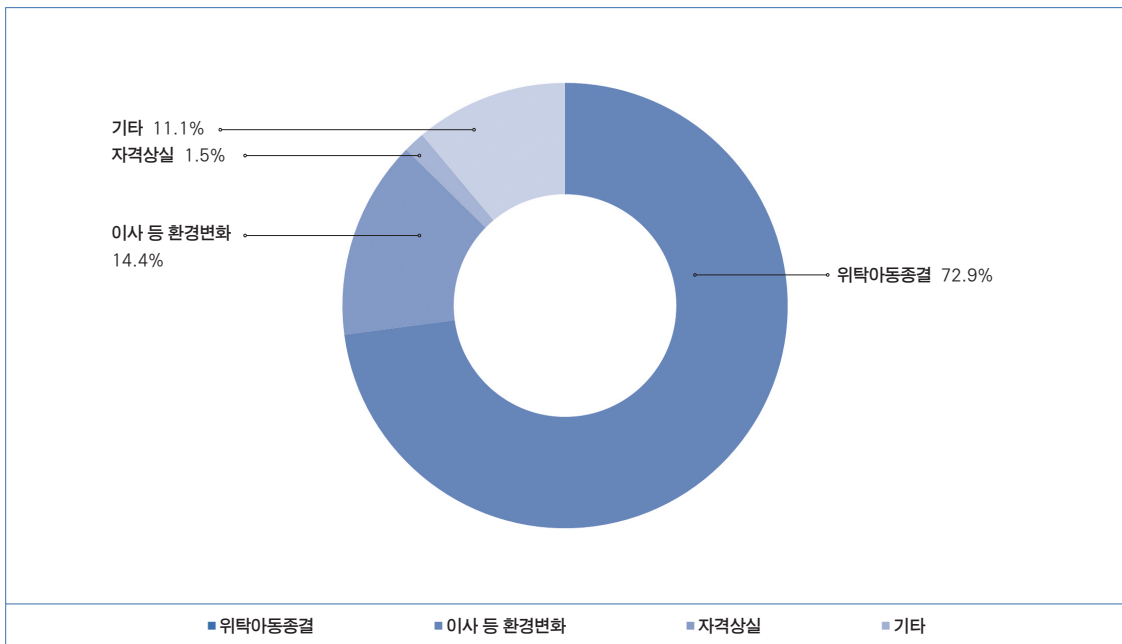
■ 종결위탁가정 종결사유

〈표 4-10〉 종결위탁가정 종결사유

단위 : 세대, %

구분	계	위탁아동종결	이사 등 환경변화	자격상실	기타
계	1,613	1,176	233	25	179
	100.0	72.9	14.4	1.5	11.1
대리양육	908	742	119	7	40
	100.0	81.7	13.1	0.8	4.4
친인척	486	382	74	7	23
	100.0	78.6	15.2	1.4	4.7
일 반	219	52	40	11	116
	100.0	23.7	18.3	5.0	53.0

〈그림 4-8〉 종결위탁가정 종결사유



〈표 4-10〉은 위탁아동을 양육할 의사가 없거나 양육을 할 수 없어 종결된 위탁가정의 종결사유를 위탁유형별로 나타낸 것이다. 위탁유형 중 위탁아동이 종결되어 자연적으로 위탁가정이 종결한 위탁아동종결이 72.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리양육위탁가정, 친인척위탁가정이 각각 81.7%, 78.6%로 높게 나타났다. 일반위탁가정은 기타가 53.0%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기타는 위탁부모의 경제적 상황이나, 노령, 사망 등의 사유가 있었다.

2) 신규위탁가정<sup>3)</sup>

## ■ 지역센터별 신규위탁가정 수

〈표 4-11〉 지역센터별 신규위탁가정 수

단위 : 세대, %

구분	계	대리양육	친인척	일반
계	1,319	798	368	153
	100.0	60.5	27.9	11.6
서울	106	51	38	17
	100.0	48.1	35.8	16.0
부산	73	36	27	10
	100.0	49.3	37.0	13.7
대구	38	20	14	4
	100.0	52.6	36.8	10.5
인천	76	48	17	11
	100.0	63.2	22.4	14.5
광주	20	10	9	1
	100.0	50.0	45.0	5.0
대전	15	7	5	3
	100.0	46.7	33.3	20.0
울산	24	10	8	6
	100.0	41.7	33.3	25.0
경기	160	80	67	13
	100.0	50.0	41.9	8.1
경기북부	94	59	22	13
	100.0	62.8	23.4	13.8
강원	112	82	22	8
	100.0	73.2	19.6	7.1
충북	65	38	19	8
	100.0	58.5	29.2	12.3
충남	104	65	20	19
	100.0	62.5	19.2	18.3
전북	67	45	13	9
	100.0	67.2	19.4	13.4
전남	128	104	22	2
	100.0	81.3	17.2	1.6
경북	100	61	27	12
	100.0	61.0	27.0	12.0
경남	101	58	32	11
	100.0	57.4	31.7	10.9
제주	36	24	6	6
	100.0	66.7	16.7	16.7

3) 2014년 신규위탁가정 현황은 다른 센터로 사례이관되거나, 위탁가정이 변경된 212세대(대리양육위탁가정 68세대, 친인척위탁가정 95세대, 일반위탁가정 49세대)는 신규위탁가정 수에서 제외하고 집계함.

〈표 4-11〉는 지역별 신규위탁가정의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전체 신규위탁가정은 1,319세대이며 대리양육위탁가정이 798세대(60.5%)로 가장 많았고, 친인척위탁가정 368세대(27.9%), 일반위탁가정 153세대(11.6%)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신규위탁가정의 수는 경기도가 160세대로 가장 많았으며, 전남 128세대, 강원 112세대, 서울 106세대 순으로 많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지역별 위탁유형의 분포를 살펴보면, 대리양육위탁가정은 전남 81.3%(104명), 강원 73.2%(82명), 전북 67.2%(45명)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친인척위탁가정은 광주 45.0%(9명), 경기 41.9%(67명), 부산 37.0%(27명)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일반위탁가정은 울산 25.0%(6명), 대전 20.0%(3명)을 제외한 지역이 대부분 10% 내외의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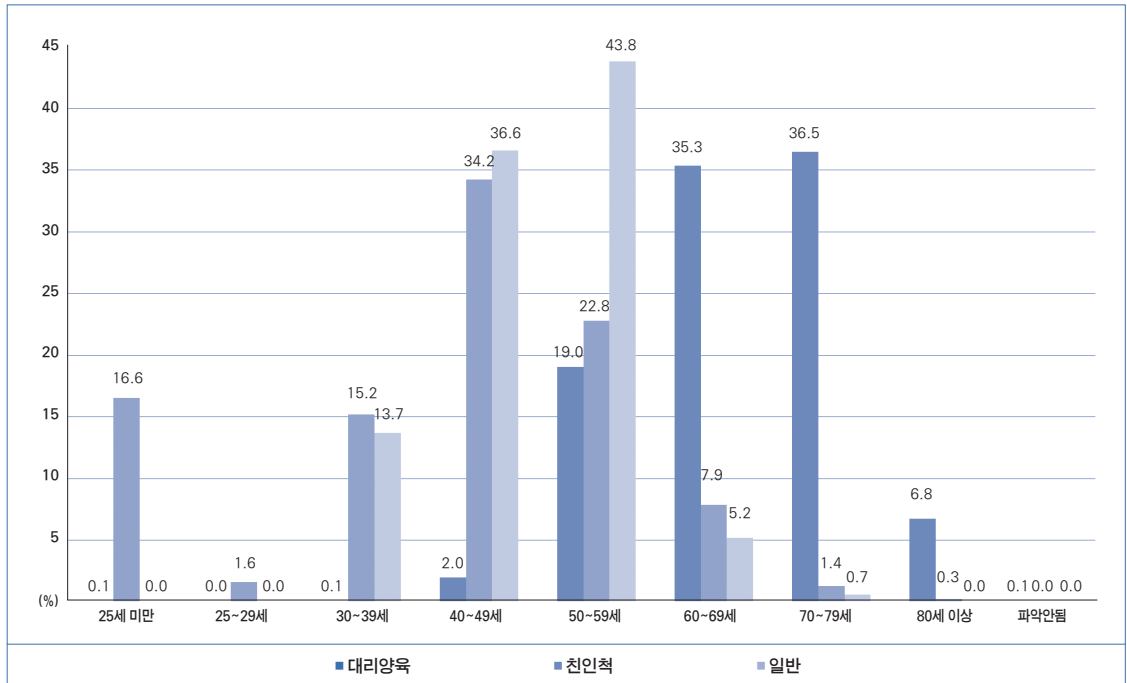
### ■ 신규위탁부모 연령

〈표 4-12〉 신규위탁부모 연령

단위 : 명, %

구 분	계	25세 미만	2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파악안됨
계	1,319	62	6	78	198	303	319	297	55	1
	100.0	4.7	0.5	5.9	15.0	23.0	24.2	22.5	4.2	0.1
대리양육	798	1	0	1	16	152	282	291	54	1
	100.0	0.1	0.0	0.1	2.0	19.0	35.3	36.5	6.8	0.1
친인척	368	61	6	56	126	84	29	5	1	0
	100.0	16.6	1.6	15.2	34.2	22.8	7.9	1.4	0.3	0.0
일 반	153	0	0	21	56	67	8	1	0	0
	100.0	0.0	0.0	13.7	36.6	43.8	5.2	0.7	0.0	0.0

〈그림 4-9〉 신규위탁부모 연령



〈표 4-12〉는 신규위탁부모 중 주 양육자의 연령을 위탁유형별로 나타낸 것이다. 신규위탁부모의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60세~69세가 319명(24.2%)으로 가장 많았으며, 50세~59세가 303명(23.0%), 70세~79세가 297명(22.5%)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탁유형별로 구체적인 연령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대리양육위탁부모는 60세~80세 이상이 627명(78.6%)으로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인척위탁부모는 40세~49세가 126명(34.2%)으로 가장 많았으며, 50세~59세가 84명(22.8%), 39세 이하 123명(33.4%)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친인척위탁부모 중 25세 미만 61명(16.6%)은 성인이 된 위탁아동의 형제나 자매가 위탁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이다. 일반위탁부모는 50세~59세가 67명(43.8%)으로 가장 많았으며, 40세~49세가 56명(36.6%), 30~39세가 21명(13.7%) 순으로 많았다. 대리양육위탁부모는 대부분 고령인 경우가 많은 반면, 일반위탁 및 친인척위탁부모는 40세~59세가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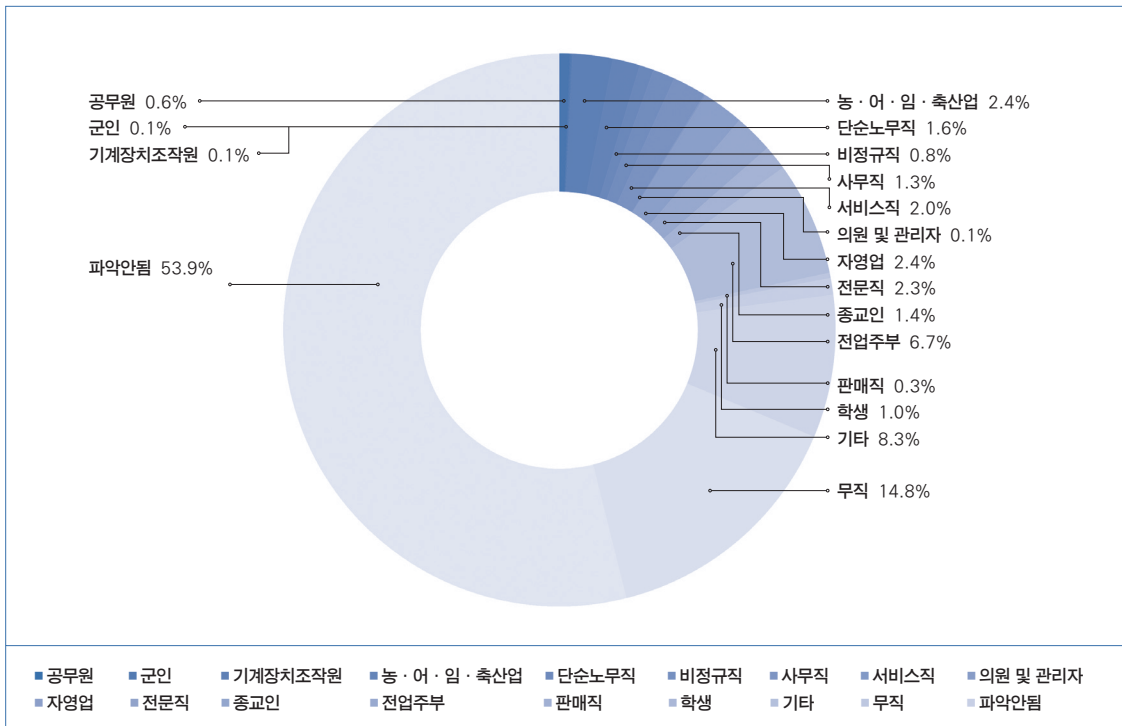
### ■ 신규위탁부모 직업

〈표 4-13〉 신규위탁부모 직업

단위 : 명, %

구분	계	공무원	군인	기계장치 조작원	농·어·임·축산업	단순 노무직	비정규직	사무직	서비스직	의원 및 관리자	자영업	전문직	종교인	전업 주부	판매직	학생	기타	무직	파악 안됨
계	1,319	8	1	1	31	21	11	17	26	1	32	30	19	88	4	13	110	195	711
	100.0	0.6	0.1	0.1	2.4	1.6	0.8	1.3	2.0	0.1	2.4	2.3	1.4	6.7	0.3	1.0	8.3	14.8	53.9
대리양육	798	1	0	0	24	17	7	3	4	0	5	0	1	11	2	0	57	173	493
	100.0	0.1	0.0	0.0	3.0	2.1	0.9	0.4	0.5	0.0	0.6	0.0	0.1	1.4	0.3	0.0	7.1	21.7	61.8
친인척	368	3	1	1	7	3	4	9	11	0	16	8	1	23	1	13	33	16	218
	100.0	0.8	0.3	0.3	1.9	0.8	1.1	2.4	3.0	0.0	4.3	2.2	0.3	6.3	0.3	3.5	9.0	4.3	59.2
일 반	153	4	0	0	0	1	0	5	11	1	11	22	17	54	1	0	20	6	0
	100.0	2.6	0.0	0.0	0.0	0.7	0.0	3.3	7.2	0.7	7.2	14.4	11.1	35.3	0.7	0.0	13.1	3.9	0.0

〈그림 4-10〉 신규위탁부모 직업





〈표 4-13〉은 위탁유형별 신규위탁부모 중 주 양육자의 직업을 나타낸 것이다. 전체 신규위탁부모 1,319명 중 711명(53.9%)은 직업이 파악되지 않았다.

직업이 파악된 신규위탁부모의 직업을 살펴보면, 무직이 195명(14.8%)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 110명(8.3%), 전업주부 88명(6.7%) 순으로 나타났으나 위탁유형별로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대리양육위탁부모는 무직이 173명(21.7%)로 가장 높았으며, 기타 57명(7.1%), 농·어·임·축산업에 종사하는 부모가 24명(3.0%)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친인척위탁부모는 기타가 33명(9.0%), 전업주부가 23명(6.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직업군별로 큰 편차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일반위탁부모는 전업주부가 54명(35.3%)으로 가장 높았으며, 전문직 22명(14.4%), 기타 20명(13.1%), 종교인 17명(11.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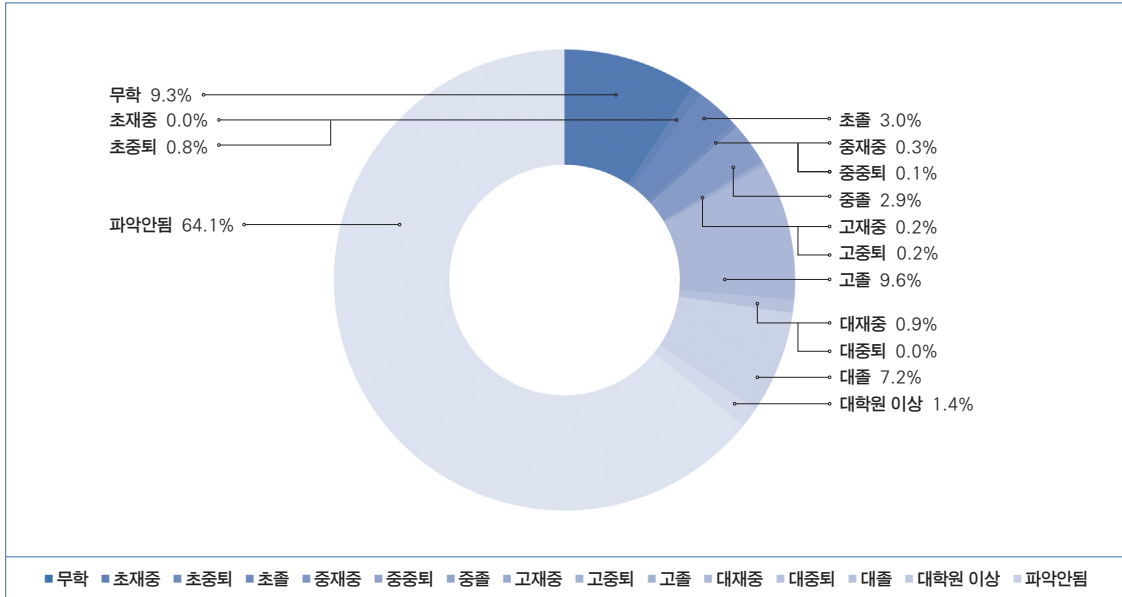
## ■ 신규위탁부모 학력

〈표 4-14〉 신규위탁부모 학력

단위 : 명, %

유형	계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이상	파악 안됨
			재학	중퇴	졸업	재학	중퇴	졸업	재학	중퇴	졸업	재학	중퇴	졸업		
계	1,319	123	0	10	40	4	1	38	2	3	127	12	0	95	18	846
	100.0	9.3	0.0	0.8	3.0	0.3	0.1	2.9	0.2	0.2	9.6	0.9	0.0	7.2	1.4	64.1
대리양육	798	103	0	9	36	3	1	28	1	2	24	0	0	1	2	588
	100.0	12.9	0.0	1.1	4.5	0.4	0.1	3.5	0.1	0.3	3.0	0.0	0.0	0.1	0.3	73.7
친인척	368	19	0	0	1	1	0	6	1	0	57	10	0	14	1	258
	100.0	5.2	0.0	0.0	0.3	0.3	0.0	1.6	0.3	0.0	15.5	2.7	0.0	3.8	0.3	70.1
일반	153	1	0	1	3	0	0	4	0	1	46	2	0	80	15	0
	100.0	0.7	0.0	0.7	2.0	0.0	0.0	2.6	0.0	0.7	30.1	1.3	0.0	52.3	9.8	0.0

〈그림 4-11〉 신규위탁부모 학력



〈표 4-14〉는 신규위탁부모 중 주 양육자의 학력을 위탁유형별로 나타낸 것이다. 신규위탁부모 1,319명 중 대리양육·친인척위탁부모 846명(64.1%)의 학력이 파악되지 않았다.

신규위탁부모의 학력을 위탁유형별로 살펴보면, 대리양육위탁부모는 학력이 파악된 210명 중 103명은 무학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초등학교 중퇴 혹은 졸업이 45명, 중학교 재학, 중퇴, 졸업은 32명, 고등학교 재학, 중퇴, 졸업은 27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살펴본 대리양육위탁부모의 연령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학력이 파악된 친인척위탁부모 110명 중 고등학교 재학, 중퇴, 졸업이 5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학교 이상이 25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성인이 된 형제자매가 가정위탁보호하고 있는 친인척위탁세대가 많은 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파악할 수 있다. 전체 일반위탁부모 153명의 경우는 대학교 이상이 97명(63.4%)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른 위탁유형에 비해 학력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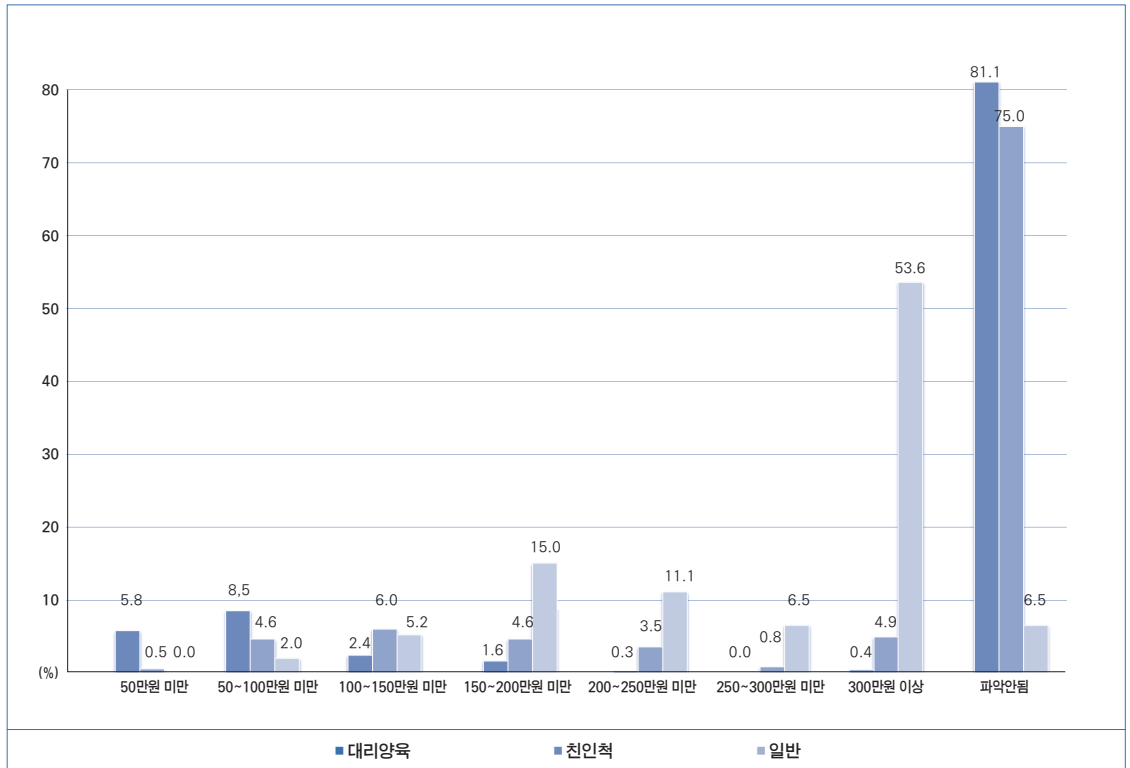
■ 신규위탁가정 소득

〈표 4-15〉 신규위탁가정 소득

단위 : 세대, %

구분	계	50만원 미만	50~100만원 미만	100~150만원 미만	150~200만원 미만	200~250만원 미만	250~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파악안됨
계	1,319	48	88	49	53	32	13	103	933
	100.0	3.6	6.7	3.7	4.0	2.4	1.0	7.8	70.7
대리양육	798	46	68	19	13	2	0	3	647
	100.0	5.8	8.5	2.4	1.6	0.3	0.0	0.4	81.1
친인척	368	2	17	22	17	13	3	18	276
	100.0	0.5	4.6	6.0	4.6	3.5	0.8	4.9	75.0
일반	153	0	3	8	23	17	10	82	10
	100.0	0.0	2.0	5.2	15.0	11.1	6.5	53.6	6.5

〈그림 4-12〉 신규위탁가정 소득



〈표 4-15〉는 신규위탁가정의 소득을 위탁유형별로 나타낸 것이다. 신규위탁가정 중 소득이 파악되지 않은 가정은 933세대이며, 100만원 미만인 가정이 136세대(10.3%), 300만원 이상이 103세대(7.8%)로 가장 많았다.

소득이 파악되지 않은 세대를 제외하고 위탁유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소득이 파악된 대리양육위탁가정 151세대 중 114세대가 100만원 미만으로 나타나 대부분 저소득 가정인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소득이 파악된 친인척위탁가정 92세대 중 100만원 미만이 19세대, 100~150만원 미만 22세대, 150~200만원 미만 17세대, 200~250만원 미만 13세대, 300만원 이상이 18세대로 소득의 범위가 고루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위탁가정은 소득이 파악되지 않은 10세대를 제외한 143세대 중 2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가정이 109세대로 대부분의 세대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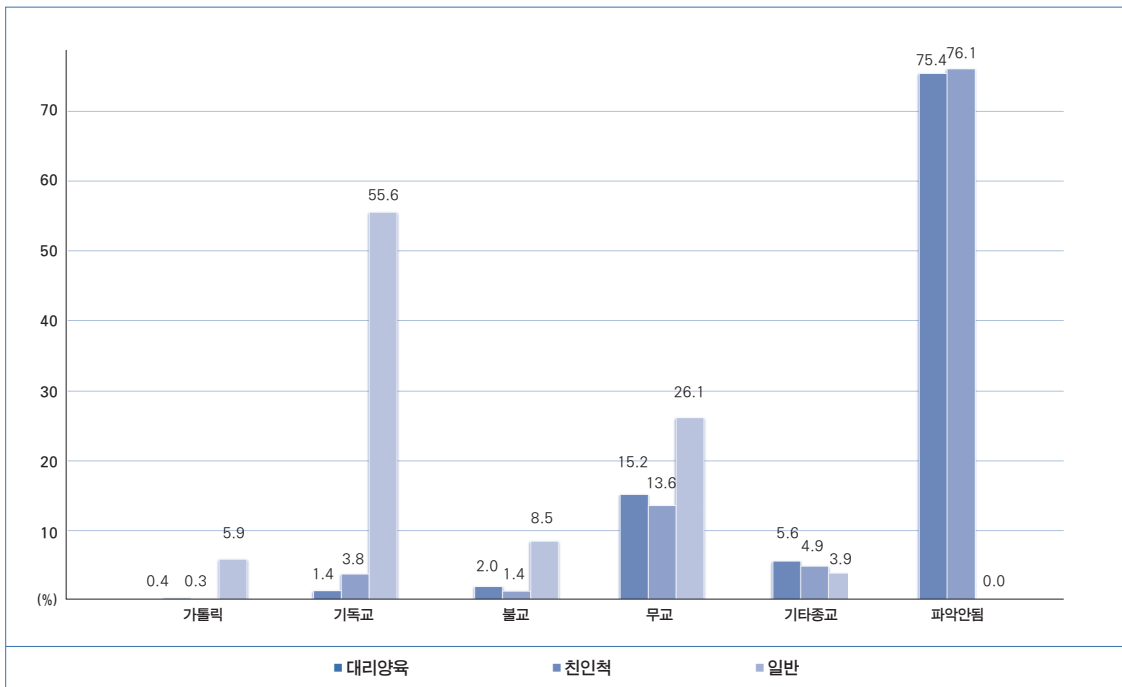
### ■ 신규위탁가정 종교

〈표 4-16〉 신규위탁가정 종교

단위 : 세대, %

유형	계	가톨릭	기독교	불교	무교	기타종교	파악안됨
계	1,319	13	110	34	211	69	882
	100.0	1.0	8.3	2.6	16.0	5.2	66.9
대리양육	798	3	11	16	121	45	602
	100.0	0.4	1.4	2.0	15.2	5.6	75.4
친인척	368	1	14	5	50	18	280
	100.0	0.3	3.8	1.4	13.6	4.9	76.1
일 반	153	9	85	13	40	6	0
	100.0	5.9	55.6	8.5	26.1	3.9	0.0

〈그림 4-13〉 신규위탁가정 종교



〈표 4-16〉은 신규위탁가정의 종교를 위탁유형별로 나타낸 것이다. 신규위탁가정 중 종교가 파악되지 않은 가정은 882세대로 대리양육·친인척위탁가정의 종교는 약 75%가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가 파악된 가정 중 무교가 211세대(16.0%)로 가장 많았고, 기독교 110세대(8.3%), 원불교, 천도교 등의 기타 종교 69세대(5.2%), 불교 34세대(2.6%)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체 위탁가정의 종교 분포와는 다르게 일반위탁가정의 경우, 기독교가 85세대(55.6%)로 절반 이상의 비율을 보였으며, 무교 40세대(26.1%), 불교 13세대(8.5%), 가톨릭 9세대(5.9%)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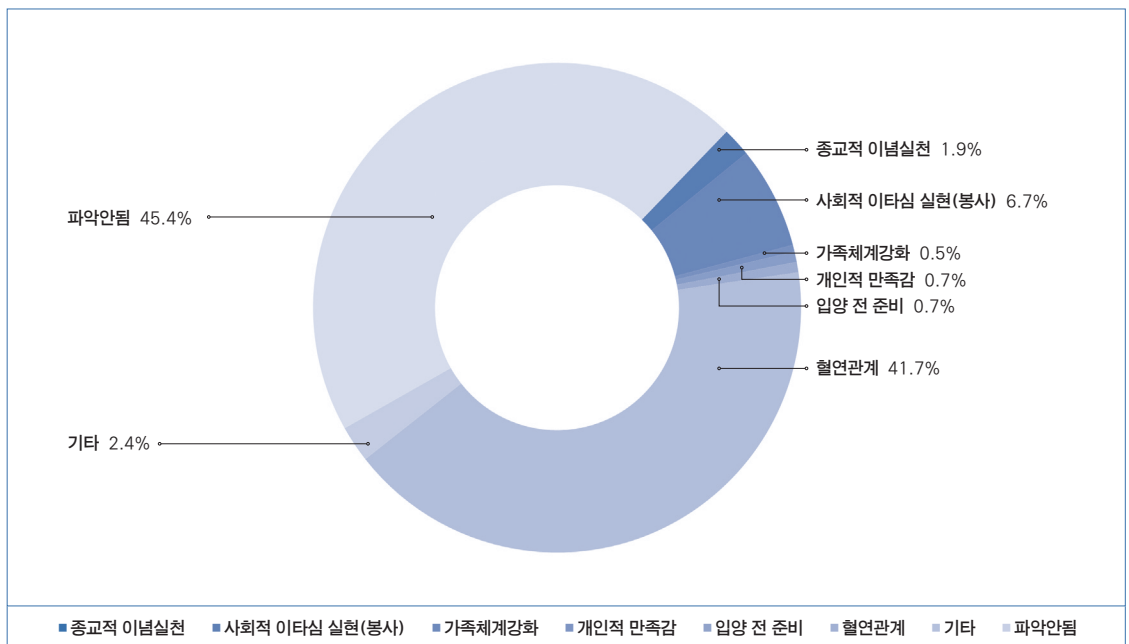
## ■ 신규위탁가정 참여 동기

〈표 4-17〉 신규위탁가정 참여 동기

단위 : 세대, %

구분	계	종교적 이념실천	사회적 이타심실현	가족체계강화	개인적 만족감	입양 전 준비	혈연관계	기타	파악안됨
계	1,319	25	89	6	9	9	550	32	599
	100.0	1.9	6.7	0.5	0.7	0.7	41.7	2.4	45.4
대리양육	798	0	1	2	0	2	376	7	410
	100.0	0.0	0.1	0.3	0.0	0.3	47.1	0.9	51.4
친인척	368	0	0	0	0	1	174	4	189
	100.0	0.0	0.0	0.0	0.0	0.3	47.3	1.1	51.4
일 반	153	25	88	4	9	6	0	21	0
	100.0	16.3	57.5	2.6	5.9	3.9	0.0	13.7	0.0

〈그림 4-14〉 신규위탁가정 참여 동기



〈표 4-17〉은 신규위탁가정의 참여 동기를 위탁유형별로 나타낸 것이다. 신규대리양육·친인척위탁가정 1,166세대 중 599세대의 참여 동기가 파악되지 않았으며, 가정위탁 참여동기가 파악된 567세대 중 550세대가 혈연관계로 나타나 참여동기가 파악되지 않은 대부분의 가정 역시 혈연관계로 가정위탁보호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혈연관계가 없는 일반위탁가정은 참여동기가 사회적 이타심의 실현이 88세대(57.5%)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종교적 이념실천이 25세대(16.3%), 기타 21세대(13.7%) 순으로 나타났다.



## 5. 가정위탁 서비스 현황

- 1) 지원서비스
- 2) 경제적 서비스







## 5. 가정위탁 서비스 현황

### 1) 지원서비스

#### ■ 지원서비스

〈표 5-1〉 지역센터별 지원서비스

단위 : 건, 명, %

구분	계		위탁아동 서비스		대리양육 위탁부모 서비스		친인척위탁 부모서비스		일반위탁 부모서비스		친가정 서비스		기타 서비스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계	39,321	269,038	11,705	83,795	9,764	74,972	3,988	21,023	1,591	40,449	696	7,413	11,577	41,386
	100.0	100.0	29.8	31.1	24.8	27.9	10.1	7.8	4.0	15.0	1.8	2.8	29.4	15.4
서울	3,209	20,199	1,142	8,039	968	5,659	489	2,588	98	1,954	36	344	476	1,615
	8.2	7.5												
부산	2,701	15,599	721	4,207	554	3,031	331	1,446	121	1,883	63	954	911	4,078
	6.9	5.8												
대구	949	4,821	259	2,636	173	754	70	240	63	372	23	127	361	692
	2.4	1.8												
인천	2,008	14,828	412	4,981	482	2,263	277	1,061	99	3,126	60	1,010	678	2,387
	5.1	5.5												
광주	934	9,003	342	3,156	217	2,296	165	1,675	49	1,103	22	149	139	624
	2.4	3.3												
대전	1,142	7,565	228	1,215	256	2,761	112	713	78	1,434	20	255	448	1,187
	2.9	2.8												
울산	530	4,916	116	483	157	2,617	85	410	34	634	13	151	125	621
	1.3	1.8												
경기	4,195	20,226	1,484	8,781	1,118	4,139	574	1,904	90	2,118	41	637	888	2,647
	10.7	7.5												
경기 북부	2,508	11,882	524	3,449	486	2,228	187	631	95	1,214	23	261	1,193	4,099
	6.4	4.4												
강원	3,138	20,050	1,104	8,699	920	4,266	212	746	120	3,392	81	771	701	2,176
	8.0	7.5												
충북	1,874	15,663	534	3,356	413	4,423	141	884	72	2,289	92	842	622	3,869
	4.8	5.8												
충남	1,825	13,520	537	2,521	496	6,210	181	1,476	78	1,455	26	241	507	1,617
	4.6	5.0												
전북	2,107	42,970	182	471	702	22,376	273	3,387	139	13,966	36	166	775	2,604
	5.4	16.0												
전남	2,971	10,627	980	4,865	999	2,622	183	416	62	673	23	104	724	1,947
	7.6	3.9												
경북	3,029	15,473	808	4,985	747	2,630	253	882	180	2,127	47	460	994	4,389
	7.7	5.8												
경남	4,254	31,660	1,484	17,484	767	4,081	373	1,975	183	2,302	76	790	1,371	5,028
	10.8	11.8												
제주	1,947	10,036	848	4,467	309	2,616	82	589	30	407	14	151	664	1,806
	5.0	3.7												

〈표 5-1〉은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지원서비스 현황을 지역센터별로 나타낸 것이다. 지원서비스는 위탁아동, 위탁부모, 친부모 등에게 제공된 상담을 포함해서 물품, 의료, 학습, 경제적 지원 등의 직·간접적으로 제공된 것을 의미한다. 전체 대상자별로 서비스제공 건수를 살펴보면 위탁부모 136,444건(50.7%), 위탁아동 83,795건(31.1%), 기타 41,386건(15.4%), 친가정 7,413건(2.8%)의 순으로 위탁부모에게 가장 많은 서비스가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서비스는 위탁아동과 관련된 기타 대상자에게 제공된 서비스뿐만 아니라, 가정위탁문의, 위탁가정신청, 위탁아동 신청 등의 일반상담까지 포함하고 있다.

위탁부모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리양육위탁부모가 74,972건, 일반위탁부모가 40,449건, 친인척위탁부모가 21,023건으로 대리양육위탁부모에게 가장 많은 서비스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위탁유형 중 대리양육위탁가정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탁부모 1인당 평균 서비스제공 건수를 살펴보면 대리양육위탁부모 7건, 친인척위탁부모 5건, 일반위탁부모 25건으로 일반위탁부모에게 훨씬 많은 서비스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위탁유형별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일반위탁가정은 가정위탁책정 이전인 일반위탁부모 발굴부터 서비스 제공이 시작되며, 대리양육·친인척위탁부모는 지자체의 책정결정 이후부터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이다.

지역센터별로 기타 서비스를 제외한 아동 1인당 서비스제공 건수를 살펴보면, 인천 12건, 경남 11건, 대구 10건, 광주 9건, 서울과 강원이 각각 7건 순으로 많은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 2) 경제적 서비스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지원

〈표 5-2〉 지역센터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지원

단위 : 명, %

구 분	전체 위탁아동			2014년 신규 위탁아동		
	위탁아동 수	생계비지원아동 수		위탁아동 수	생계비지원아동 수	
계	14,340	13,580	94.7	1,713	1,713	100.0
서울	1,288	1,144	88.8	135	135	100.0
부산	800	800	100.0	89	89	100.0
대구	302	296	98.0	47	47	100.0
인천	776	742	95.6	89	89	100.0
광주	352	348	98.9	29	29	100.0
대전	285	273	95.8	21	21	100.0
울산	269	250	92.9	33	33	100.0
경기	1,651	1,609	97.5	213	213	100.0
경기북부	800	721	90.1	120	120	100.0
강원	1,389	1,253	90.2	146	146	100.0
충북	562	535	95.2	77	77	100.0
충남	684	655	95.8	128	128	100.0
전북	971	924	95.2	89	89	100.0
전남	1,538	1,387	90.2	178	178	100.0
경북	1,123	1,098	97.8	138	138	100.0
경남	1,215	1,214	99.9	137	137	100.0
제주	335	331	98.8	44	44	100.0

〈표 5-2〉는 전체위탁아동과 2014년에 신규 위탁된 아동의 생계비 지원 비율을 지역센터별로 나타낸 것이다. 전체 위탁아동 14,340명 중 760명(5.3%)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센터별 생계비를 받지 못하는 아동의 비율은 서울 11.2%, 경기북부 9.9%, 강원과 전남이 각각 9.8%, 울산 7.1%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2013년 신규위탁아동 중 132명(6.9%)이 생계비가 미지원되었으나, 2014년 신규위탁아동 중 생계비 미지원 아동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계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동의 대부분은 부모사망 후 아동이 유족연금이나 보험금 등의 일정금액 이상의 수입이 발생하거나, 양육을 거부하고 연락 두절된 친부모의 재산이나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이다. 그러나 위탁아동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및 아동분야사업안내에 의해 가정위탁보호 결정이 되면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가족관계의 단절로 보아 생계비를 지원받도록 되어있다.

## ■ 대리양육 · 친인척위탁가정 전세임대 지원

〈표 5-3〉 지역별 대리양육 · 친인척위탁가정 전세임대 지원

단위 : 호, %

구분	계		대리양육위탁가정		친인척위탁가정	
	호	비율(%)	호	비율(%)	호	비율(%)
계	201	100.0	120	59.7	81	40.3
서울	35	100.0	18	51.4	17	48.6
부산	23	100.0	14	60.9	9	39.1
대구	4	100.0	3	75.0	1	25.0
인천	16	100.0	8	50.0	8	50.0
광주	6	100.0	4	66.7	2	33.3
대전	4	100.0	3	75.0	1	25.0
울산	8	100.0	4	50.0	4	50.0
경기	72	100.0	47	65.3	25	34.7
강원	5	100.0	2	40.0	3	60.0
충북	5	100.0	3	60.0	2	40.0
충남	5	100.0	2	40.0	3	60.0
전북	5	100.0	3	60.0	2	40.0
전남	2	100.0	2	100.0	0	0.0
경북	6	100.0	4	66.7	2	33.3
경남	4	100.0	3	75.0	1	25.0
제주	1	100.0	0	0.0	1	100.0

출처 : LH공사 주거복지처(2014)

〈표 5-3〉는 국토해양부에서 대리양육 · 친인척위탁가정에 임차전용면적 85m<sup>2</sup> 이하인 주택에 대한 일반주택 전세자금 및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을 지원한 현황을 지역별로 나타낸 것이다. 2014년에는 지원받은 가정이 201세대로 2013년 225세대가 지원받은 것에 비해 24세대가 감소했다. 이는 2013년도에 비해 2014년도의 대리양육 · 친인척위탁가정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그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 72세대, 서울 35세대, 부산 23세대, 인천 16세대 순으로 많이 지원되었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지역이 친인척위탁가정보다 대리양육위탁가정에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졌으나, 강원, 충남, 제주는 친인척위탁가정에 대한 지원 비율이 각각 60.0%, 60.0%, 100%로 대리양육위탁가정보다 지원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인천과 울산은 대리양육 · 친인척위탁가정 전세임대 지원 비율이 각각 50.0%로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 ■ 가정위탁보호 아동 디딤씨앗통장 적립 현황

〈표 5-4〉 지역별 가정위탁보호 아동 디딤씨앗통장 적립 현황

단위 : 명, %, 원

구 분	월 평균 실가입 아동	월 평균 적립아동	월 평균 저축률	월 평균 적립금액	아동 1인당 월 평균 적립금액
계	10,596	10,088	95.2	361,227,749	35,808
서울	844	795	94.1	28,533,625	35,891
부산	610	590	96.9	21,323,833	36,142
대구	227	214	94.4	8,014,292	37,450
인천	544	524	96.3	21,385,695	40,812
광주	286	274	95.8	8,245,792	30,094
대전	224	211	94.0	7,142,203	33,849
울산	220	214	97.2	8,565,327	40,025
경기	1,817	1,757	96.7	67,531,768	38,436
강원	1,102	1,041	94.5	35,839,569	34,428
충북	443	422	95.3	19,869,650	47,084
충남	425	398	93.6	14,675,354	36,873
전북	711	669	94.0	23,623,167	35,311
전남	1,153	1,093	94.8	34,489,425	31,555
경북	936	889	95.1	28,565,579	32,132
경남	845	799	94.6	26,432,282	33,082
제주	209	198	94.8	6,990,188	35,304

출처 : 디딤씨앗지원사업단(2014)

〈표 5-4〉은 가정위탁보호 아동의 디딤씨앗통장 적립현황을 지역별로 나타낸 것이다. 디딤씨앗통장은 보호조치된 아동이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국가가 3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아동의 적립금액과 1:1로 매칭하여 추가 적립해 줌으로써 만 18세 이후 자립에 필요한 기초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2014년도 가정위탁보호아동의 디딤씨앗통장 월 평균 현황을 살펴보면, 실가입 아동 수 10,596명, 적립아동 수 10,088명, 저축률 95.2%, 적립금액 361,227,749원, 아동 1인당 평균 적립금액 35,808원으로 나타났다.

디딤씨앗통장 적립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월 평균 저축률은 모든 지역이 9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95.2%의 저축률을 나타내 2013년 94.0%에서 소폭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아동 1인당 월 평균 적립금액은 모든 지역이 3만원을 초과하였으며, 평균 금액은 35,808원으로 나타나 2013년 평균 33,766원보다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지역별로는 충북 47,084원, 인천 40,812원, 울산 40,025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6. 가정위탁 교육 및 홍보 현황

1) 교육

2) 홍보







## 6. 가정위탁 교육 및 홍보 현황

### 1) 교육

〈표 6-1〉 지역센터별 교육 현황

단위 : 회, 명, %

구분	계		대리양육위탁 부모교육		친인척위탁 부모교육		일반위탁부모				공무원교육		기타교육	
							예비위탁 부모교육		보수교육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계	1,477	9,486	431	2,942	192	777	92	501	73	801	138	1,509	551	2,956
	100.0	100.0	29.2	31.0	13.0	8.2	6.2	5.3	4.9	8.4	9.3	15.9	37.3	31.2
서울	34	284	5	166	5	49	4	30	1	18	0	0	19	21
	2.3	3.0												
부산	47	602	13	200	7	80	8	46	4	62	1	16	14	198
	3.2	6.3												
대구	83	513	4	28	4	20	4	18	8	86	0	0	63	361
	5.6	5.4												
인천	62	398	7	97	7	30	7	37	2	65	1	22	38	147
	4.2	4.2												
광주	34	374	6	127	6	76	4	12	2	24	5	77	11	58
	2.3	3.9												
대전	75	649	3	62	3	29	6	31	4	36	1	6	58	485
	5.1	6.8												
울산	38	261	7	100	6	47	9	17	5	38	5	30	6	29
	2.6	2.8												
경기	114	873	14	264	14	68	4	47	2	41	14	231	66	222
	7.7	9.2												
경기북부	58	286	4	68	4	15	5	24	4	33	1	22	40	124
	3.9	3.0												
강원	306	837	231	466	47	89	4	53	2	32	18	160	4	37
	20.7	8.8												
충북	116	552	10	148	9	24	5	41	2	53	12	120	78	166
	7.9	5.8												
충남	70	469	8	79	8	32	7	28	4	33	8	86	35	211
	4.7	4.9												
전북	82	892	13	261	9	33	5	30	2	49	12	156	41	363
	5.6	9.4												
전남	74	897	21	476	17	66	2	10	6	14	21	273	7	58
	5.0	9.5												
경북	88	363	15	85	15	28	12	31	5	66	14	27	27	126
	6.0	3.8												
경남	116	922	35	280	25	85	4	23	17	104	20	278	15	152
	7.9	9.7												
제주	80	314	35	35	6	6	2	23	3	47	5	5	29	198
	5.4	3.3												

〈표 6-1〉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위탁부모와 공무원, 자원봉사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실적을 지역센터별로 나타낸 것이다. 위탁유형별 부모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대리양육위탁부모교육 이수자는 2,942명, 친인척위탁부모교육 이수자는 777명이었으며, 대리양육·친인척위탁부모교육 이수자 수는 신규위탁부모교육과 보수교육을 모두 포함한다. 예비일반위탁부모교육 이수자는 501명이며, 보수교육 이수자는 801명으로 위탁종인 일반위탁부모 791명보다 높게 나타났다.

교육대상자에 따른 지역센터별 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대리양육위탁부모교육 참여 인원은 전남 476명, 강원 466명, 경남 280명 순으로 많았고, 친인척위탁부모교육 참여 인원은 강원 89명, 경남 85명, 부산 80명 순으로 많았다. 예비일반위탁부모교육 이수자 수가 가장 많은 센터는 강원 53명이었고, 아동을 양육중인 일반위탁부모의 양육능력향상을 위한 보수교육 이수자 수는 경남이 104명으로 가장 많았다. 공무원교육은 경남 278명, 전남 273명, 경기 231명 순으로 나타났고, 기타교육은 대전 485명, 전북 363명, 대구 361명 순으로 나타났다.

## 2) 홍보

〈표 6-2〉 지역센터별 홍보 현황

단위: 부, 개, 회

구분	계	홍보물					언론매체					인터넷		홍보행사		기타
		리플렛	포스터	전단	소식지	기타 홍보물	방송 (TV)	방송 (라디오)	신문	잡지	생활 정보지	홈페이지 운영	웹진	캠페인	기타 홍보 행사	
계	229,635	33,647	2,751	18,088	31,141	81,015	2,871	1,205	1,590	18	3,903	3,439	22,205	237	962	26,563
중앙	14,695	0	2,000	0	2,000	10,402	18	2	52	0	0	145	0	2	57	17
서울	23,396	5,978	30	507	509	13,256	4	2	22	2	185	172	1	27	1	2,700
부산	12,551	3,090	50	3,000	1,990	3,505	47	42	622	0	0	103	0	7	95	0
대구	4,281	2,294	110	0	1,115	290	1	2	42	0	0	339	84	2	2	0
인천	13,059	1,346	161	2,791	14	8,471	0	0	6	0	0	256	0	14	0	0
광주	5,617	526	30	346	538	2,943	365	288	134	0	229	182	0	8	28	0
대전	10,644	1,168	92	0	1,569	3,225	364	50	19	0	40	376	0	7	16	3,718
울산	1,746	99	50	0	741	523	7	16	2	0	222	36	1	5	40	4
경기	9,641	5,838	8	500	0	795	1	0	4	0	377	98	2	17	1	2,000
경기 북부	6,963	922	0	865	2,548	1,218	526	0	4	0	311	414	0	5	0	150
강원	7,079	1,002	0	0	3,533	604	630	522	41	0	517	133	24	41	0	32
충북	21,264	727	10	6,426	1,095	10,684	152	1	26	2	141	293	0	25	4	1,678
충남	2,988	323	2	0	0	2,151	0	0	106	0	309	12	0	19	2	64
전북	13,792	2,270	12	1,000	275	8,876	1	1	15	1	356	186	54	8	678	59
전남	6,598	1,045	20	813	137	1,922	364	272	158	0	0	137	32	7	0	1,691
경북	21,299	308	2	0	2,798	2,134	385	1	13	1	246	214	1,007	7	8	14,175
경남	17,726	4,351	0	0	4,043	8,142	1	4	35	0	917	170	0	32	30	1
제주	36,296	2,360	174	1,840	8,236	1,874	5	2	289	12	53	173	21,000	4	0	274

〈표 6-2〉는 지역센터별 홍보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주요 홍보활동은 홍보물제작과 배포가 주를 이루었으며, 일상생활 활용도가 높은 기타 홍보물이 81,015건으로 가장 많았고, 리플렛 배포 33,647부, 소식지 배포 31,141부 순으로 나타났다.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는 생활정보지 3,903건, 방송(TV) 2,871건, 신문 1,590건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 내용으로는 가정위탁 공익광고 송출 및 각 지역 내의 케이블 TV 자막 등을 활용한 위탁부모 모집 안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웹진과 홈페이지 운영을 통한 온라인 홍보는 총 25,644건으로 나타났으며, 웹진을 발간하는 센터는 2013년 8개 센터에서 2014년 9개 센터로 증가하였다. 홍보행사 중 캠페인은 가정위탁의 날 홍보주간, 어린이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지역 내 행사 등을 활용하여 전국에서 237회 진행되었는데, 2013년 95회 진행한 것에 비해 142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홍보 행사는 유관기관 등에 직접 찾아가거나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내방한 기관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가정위탁보호사업을 안내하는 홍보행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총 962회 진행하였고, 2013년 98회 대비 864회 증가하였다. 또한 SNS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한 기타 홍보도 26,563건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7. 가정위탁지원센터 현황

## 1) 상담원의 업무량





## 7. 가정위탁지원센터 현황

### 1) 상담원의 업무량

#### ■ 지역센터별 지원서비스 · 교육 · 홍보 업무량

〈표 7-1〉 지역센터별 지원서비스 · 교육 · 홍보 업무량

단위 : 명, 회

구분	상담원수 (관장포함)	지원서비스		교육서비스		홍보서비스	
		인원수	건수	횟수	인원수	대중매체 홍보 등	홍보물
계	139	39,321	269,038	1,477	9,486	74,282	156,658
서울	8	3,209	20,199	34	284	3,116	20,280
부산	10	2,701	15,599	47	602	916	11,635
대구	5	949	4,821	83	513	472	3,809
인천	10	2,008	14,828	62	398	276	12,783
광주	8	934	9,003	34	374	1,234	4,383
대전	7	1,142	7,565	75	649	4,590	6,054
울산	7	530	4,916	38	261	333	1,413
경기	9	4,195	20,226	114	873	14,082	11,562
경기북부	9	2,508	11,882	58	286	1,410	5,553
강원	10	3,138	20,050	306	837	1,940	5,136
충북	7	1,874	15,663	116	552	2,322	18,942
충남	9	1,825	13,520	70	469	512	2,476
전북	7	2,107	42,970	82	892	1,359	12,433
전남	6	2,971	10,627	74	897	2,661	3,937
경북	8	3,029	15,473	88	363	16,057	5,242
경남	10	4,254	31,660	116	922	1,190	16,536
제주	9	1,947	10,036	80	314	21,812	14,484

〈표 7-1〉은 각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의 상담원 수와 지원서비스·교육·홍보의 업무량을 나타낸 것이다.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의 종사자는 총 139명이며, 평균 8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2년 8월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상담원과 자립지원전담요원,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이 추가 배치되어 2012년 95명(평균 6명), 2013년 124명(평균 7명), 2014년 139명(평균 8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작년대비 상담원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센터는 부산과 충남으로, 3명씩 증가하였다. 그 다음은 경기, 경기북부, 강원이 2명씩, 인천, 광주, 전북이 1명씩 증가하였다.

각 영역별 업무량을 살펴보면, 상담·후원·학습·문화·의료 등의 지원서비스는 39,321명에게 269,038건 제공되었으며, 지역센터별로 전북이 42,970건, 경남 31,660건, 경기 20,226건 순으로 많은 서비스가 제공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14년 한 해 동안 위탁부모와 친부모, 공무원, 자원봉사자 등에게 위탁아동의 양육 또는 가정위탁보호사업에 대해 1,477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9,486명이 참여하였다. 지역센터별 교육서비스 참여 인원 수를 살펴보면, 경남 922명, 전남 897명, 전북 892명, 경기 873명 순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홍보서비스는 지역방송, 케이블TV나 전광판, 캠페인, 지역 무료배포 신문 등을 활용한 대중매체 등을 통해 74,282건의 홍보를 진행하였다. 지역센터별로는 제주 21,812건, 경북 16,057건, 경기 14,082건 순으로 많은 대중매체 등의 홍보활동을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홍보물을 활용한 홍보가 156,658건이며, 지역센터별로 서울 20,280건, 충북 18,942건, 경남 16,536건, 제주 14,484건 순으로 홍보물 배포 건수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 ■ 지역센터별 상담원 1인당 업무량

〈표 7-2〉 지역센터별 상담원 1인당 업무량

단위: 명, 회

구분	상담원 수	사례 수		지원서비스		교육		홍보
		위탁아동 수	위탁가정 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전국 평균	5	164	126	448	3,134	17	113	2,657
서울	5	258	205	642	4,040	7	57	4,679
부산	6	133	110	450	2,600	8	100	2,092
대구	3	101	80	316	1,607	28	171	1,427
인천	6	129	103	335	2,471	10	66	2,177
광주	5	70	54	187	1,801	7	75	1,123
대전	5	57	41	228	1,513	15	130	2,129
울산	5	54	39	106	983	8	52	349
경기	6	275	217	699	3,371	19	146	4,274
경기북부	4	200	152	627	2,971	15	72	1,741
강원	7	198	150	448	2,864	44	120	1,011
충북	4	141	109	469	3,916	29	138	5,316
충남	6	114	86	304	2,253	12	78	498
전북	4	243	177	527	10,743	21	223	3,448
전남	4	384	287	743	2,657	19	224	1,650
경북	7	160	124	433	2,210	13	52	3,043
경남	6	203	154	709	5,277	19	154	2,954
제주	5	67	55	389	2,007	16	63	7,259



〈표 7-2〉는 각 지역센터별 상담원 1인당 담당하는 사례 수와 지원서비스, 교육 및 홍보의 업무량을 나타낸 것이다.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중 상담원은 평균 5명이다. 상담원 수는 관장,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 자립지원전담요원, 사무원을 제외한 수이다. 상담원 1인당 담당하는 위탁아동 수는 164명, 위탁가정 수는 126세대이며, 지원 서비스는 448명에게 3,134건 제공, 교육은 17회에 걸쳐 113명을 대상으로 실시, 홍보는 2,657건으로 나타났다.

각 영역별로 광역시 단위와 도 단위의 상담원 1인당 업무량을 살펴보면 광역시 단위 7개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는 115명의 아동과 90세대의 위탁가정에 대해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323명에게 2,145건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12명에게 93회 교육을 실시하였고 1,997건의 홍보활동을 진행하였다. 도 단위 10개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는 199명의 아동과 151세대의 위탁가정에 대해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535명에게 3,827건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21명에게 127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였고 3,119건의 홍보활동을 진행하였다. 물리적인 거리와 담당 사례 수 등을 고려할 때 도 단위 가정위탁지원센터 상담원의 업무량이 과중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고려되지 않고 상담원이 배치되어 있어, 과중한 업무량과 상담원의 노력에 비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상담원의 업무는 이뿐만이 아니다. 사례관리에 따른 전산데이터 등록 및 다양한 행정업무, 조사연구 협조, 매년 발생하는 종결아동에 대한 사후관리, 자립대상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서비스와 계획수립 등 부가적인 업무량 또한 적지 않다. ‘관할지역의 위탁아동 수가 400명을 초과할 때에는 200명 초과 시마다 상담원 1명을 추가로 배치한다.’ 라는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른 현실적인 상담원배치가 이루어진다면 상담원의 업무량이 감소하여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작년 대비 상담원 1인당 아동 수(176명→164명) 및 가정 수(135세대→126세대) 등의 사례 수는 줄어들었고, 상담·후원·학습·문화·의료 등의 지원서비스 인원(407명→448명) 및 횟수(2,099건→3,134건)는 증가되었다.



## 8. 결론 및 제언

- 1) 위탁아동
- 2) 위탁가정
- 3) 가정위탁서비스
- 4) 가정위탁 교육 및 홍보
- 5) 가정위탁지원센터 업무량





## 8. 결론 및 제언

2014년 한 해 동안 수행된 가정위탁보호사업 현황분석의 각 항목에 따른 결론 및 제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위탁아동

연도별 가정위탁보호 아동의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16,359명에서 2014년 14,340명으로 2010년보다 감소하였다. 이는 가정위탁보호아동뿐 아니라, 전체 보호필요아동이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와 맞물린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지역센터별 위탁종인 아동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1,651명, 전남이 1,538명, 강원이 1,389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위탁유형별로는 대리양육위탁아동이 2012년 67.9%에서 2014년 66.9%로 감소하였으며, 친인척위탁아동은 2012년 25.6%에서 2014년 26.2%로 증가하였고, 일반위탁아동은 2012년, 2013년 6.5%에서 2014년 6.9%로 증가하였다. 위탁아동의 성비는 남아가 52.9%, 여아가 47.1%로 남아가 더 높았으며, 연령별 비율을 보면, 17~19세가 38.0%, 14~16세는 28.5%, 11~13세는 12.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 비율의 순은 작년과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청소년기의 위탁아동이 지속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위탁사유별로는 이혼이 31.7%, 부모의 별거 또는 가출이 27.9%, 부나 모의 사망이 25.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부재로 인해 경제적 빈곤 문제 등 다양한 사유가 발생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아동 양육의 어려움을 느껴 아동을 위탁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위탁아동 배치 시 형제배치된 현황을 살펴보면 49.8%로 가장 높았고, 단독배치는 49.7%, 형제분리배치는 0.5%로 나타났다. 대리양육위탁아동은 형제배치가 높게 나타났으며, 친인척위탁아동 및 일반위탁아동의 경우는 위탁아동의 단독배치가 형제배치보다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형제가 함께 의뢰되었을 때 형제가 따로 배치되는 형제분리배치의 경우는 혈연관계인 대리양육·친인척위탁가정은 0.2%, 0.6%로 저조하였고, 일반위탁가정은 그보다 높은 2.4%로 나타났다. 하지만 형제가 함께 의뢰된 경우에는 대부분 형제가 함께 배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위탁보호 결정 시 위탁아동의 연령은 11~13세가 26.4%, 8~10세가 24.3%, 14~16세가 20.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리양육·친인척위탁아동은 11~13세 아동이 각각 28.1%, 25.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일반위탁아동은 4~7세가 32.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일반위탁아동은 다른 위탁유형에 비해 영·유아 위탁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위탁아동의 위탁기간을 살펴보면, 평균 5년 1개월로 위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리양육위탁아동은 평균 5년 1개월, 친인척위탁아동은 평균 5년, 일반위탁아동은 평균 5년 5개월로 나타났으며, 일반위탁아동의 배치 시 연령이 낮은 만큼 위탁 기간도 긴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 ■ 신규위탁아동 현황

신규위탁아동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였으며, 2013년 대비 2014년에 214명 감소하였다. 위탁유형별로는 대리양육·친인척위탁아동이 2013년 대비 2014년 각각 1.2%p, 1.1%p 감소하였으나, 일반위탁아동은 2.2%p 증가하였다.

지역센터별 신규위탁아동은 경기도가 213명, 전남이 178명, 강원이 146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위탁중인 아동이 많은 지역에서 신규위탁아동도 많이 발생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신규위탁아동의 성별은 남아가 54.3%, 여아가 45.7%로 남아의 비율이 더 높았으며, 연령별 비율을 보면, 14~16세가 27.8%, 17~19세가 23.7%, 11~13세가 18.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 비율은 위탁중인 아동과 동일하게 청소년기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신규위탁아동의 보호사유는 이혼이 31.4%, 부나 모의 사망이 23.2%, 부모의 별거/가출이 21.0%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이는 작년과 동일한 결과로 확인할 수 있다. 대부분이 가정해체로 인한 사유로 보호필요아동과 신규위탁아동이 발생하는 만큼 가정의 해체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반위탁아동의 경우 별거/가출의 사유가 18.5%로 가장 높게 나타나 대리양육·친인척위탁아동의 가정위탁보호사유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으며, 이혼, 미혼부(모)/혼외출생이 각각 12.5%로 대리양육·친인척위탁아동의 위탁사유와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 이는 혈연관계로 아동을 위탁양육하지 않는 경우 주사유가 가정의 해체뿐만 아니라 한부모가정의 아동양육 어려움으로 인해 아동을 위탁하는 비율도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신규위탁아동(1,713명) 중 위탁사유가 학대·방임인 경우가 45명으로 2.6%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 방임 및 유기가 27명(60.0%)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체학대가 11명(24.4%), 중복학대가 6명(13.3%)으로 나타났다. 신규위탁아동 중 장애를 가진 아동은 12명으로 전체 신규위탁아동(1,713명) 중 0.7%에 해당하는데, 지적장애를 가진 아동이 8명으로 66.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학대피해아동 및 장애를 가진 아동의 경우 특수한 욕구에 따른 전문적인 개입이 필수적이며, 그에 맞는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 위탁종결아동 현황

위탁종결아동은 2011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11년 이후부터 감소추세였으며 2014년에는 2013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다. 특히 2012년 8월 아동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탁아동의 보호기간이 연장되어 2012년에서 2013년 위탁종결아동은 833명 감소하였다.

위탁종결아동의 성별은 남아가 58.3%, 여아가 41.7%로 남아가 더 많았으며, 본 결과는 가정위탁보호되고 있는 전체 아동 성별 분포와 연관된 결과로 파악된다. 위탁종결아동의 평균 연령은 18세로 나타났는데, 연령별로 살펴보면, 20세 이상이 58.8%, 17~19세가 19.8%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리양육·친인척위탁종결아동은 평균 18세, 일반위탁종결아동은 평균 12세로 대리양육·친인척위탁아동에 비해 종결 연령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위탁아동의 평균종결연령이 18세인 것은 아동의 종결사유와도 관련있는 결과이다. 아동의 종결사유 역시, 만 18세 이상으로 보호 연령이 도달되어 종결된 경우가 57.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외 위탁아동의 종결사유로는 친가정복귀가 20.9%로 그 뒤를 이었다.

위탁종결아동의 평균 위탁기간은 5년 5개월로 나타났으며, 대리양육위탁종결아동은 평균 5년 8개월, 친인척위탁종결아동은 평균 5년 3개월, 일반위탁종결아동은 평균 4년으로 나타났다. 대리양육·친인척위탁아동은 종결연령인 만 18세가 될 때까지 위탁양육되고 있는 경우가 각각 60.2%, 61.9%로 가장 많기 때문에 평균위탁기간이 일반위탁아동보다 길게 나타났다.

위탁종결 후 배치 현황은 자립준비가 28.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친가정복귀가 21.7%, 취업이 16.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위탁유형별로는 대리양육·친인척위탁아동은 자립준비가 각각 29.6%, 30.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일반위탁아동의 경우 친가정복귀가 57.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위탁종결사유의 결과와 연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정위탁종결연령이나 종결사유, 위탁중인 아동의 연령 현황을 보면, 대부분의 위탁아동이 청소년기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위탁종결아동의 종결 후 배치 결과도 자립준비가 28.1%로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이는 위탁아동의 성공적인 자립준비를 위한 지원이 필수적일 것이다. 가정위탁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한 자립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를 활성화하여 위탁아동들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원체계의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2) 위탁가정

2014년 위탁가정 세대는 총 11,042세대이며, 2013년에 비해 131세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유형별로는 대리양육위탁가정이 65.3%, 친인척위탁가정이 27.6%, 일반위탁가정이 7.2%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에 비해 대리양육위탁가정은 0.5%p 감소하였으나, 친인척위탁가정은 0.1%p, 일반위탁가정은 0.5%p 증가하였다.

지역센터별 위탁가정 세대 수가 많은 곳은 경기 1,298세대, 전남 1,147세대, 강원 1,048세대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센터의 위탁가정 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대리양육위탁가정은 전남(82.1%), 강원(74.9%), 제주(73.7%) 순으로 나타났고, 친인척위탁가정은 광주(39.2%), 부산(36.2%), 경기(34.5%)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위탁가정은 대구(17.0%), 대전(13.0%), 울산(11.7%) 순으로 나타났다. 대리양육위탁가정의 경우 도 단위 지역센터의 비율이, 친인척·일반위탁가정의 경우 광역시단위 센터의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위탁부모의 연령은 대리양육위탁부모의 경우 60~79세가 78.6%, 친인척·일반위탁부모의 경우 40~59세가 각각 65.7%, 76.3%로 높게 나타났다. 위탁부모의 직업은 위탁부모 중 주 양육자 한 명의 직업으로 조사되었다. 파악되지 않는 세대를(37.2%) 제외하고 대리양육위탁부모는 무직이 30.1%, 친인척위탁부모는 기타가 20.4%, 일반위탁부모는 전업주부가 33.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위탁부모의 학력은 주 양육자 한 명의 학력으로 주로 조사되었으며, 파악되지 않는 세대(53.8%)를 제외하고, 대리양육위탁부모는 무학이 19.3%, 친인척위탁부모는 고등학교 졸업이 21.9%, 일반위탁부모는 고등학교 졸업이 38.3%, 대학교 졸업이 34.8%로 높게 나타났다.

위탁가정의 소득은 파악되지 않는 세대(71.2%)를 제외하고, 대리양육위탁가정이 0~100만원 미만인 18.3%, 친인척위탁가정이 50~150만원 미만인 15.1%, 일반위탁가정이 300만원 이상이 33.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위탁가정의 종교는 파악되지 않는 세대(42.7%)를 제외하고 대리양육·친인척위탁가정은 무교가 각각 26.2%, 22.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일반위탁가정은 기독교가 53.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위탁가정 참여 동기는 파악되지 않는 세대(34.3%)를 제외하고 대리양육·친인척위탁가정은 혈연관계가 각각 54.4%, 51.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일반위탁가정은 사회적 이타심 실현이 47.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혈연관계인 대리양육·친인척위탁가정에 비해 일반위탁가정의 경우 부모의 학력, 소득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종교적 이념을 가지고 사회적 이타심을 실현하기 위한 동기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비일반위탁가정 수는 전체 2,034세대이며, 지역별로는 대전 303세대, 경기북부 230세대, 경기 199세대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도 단위 지역센터에서 관리하는 아동 수가 많은 만큼 예비위탁부모의 수도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종결위탁가정 수는 전체 1,613세대이며, 위탁유형에 따른 위탁가정 종결사유를 살펴보면, 대리양육·친인척위탁가정은

위탁아동이 종결되어 위탁가정이 자연스럽게 종결되는 경우가 각각 81.7%, 78.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일반위탁가정은 위탁부모의 경제적 상황, 사망 등의 사유로 가정이 종결되는 경우가 53.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대리양육·친인척위탁아동 대다수의 종결사유가 보호 종결이 되는 연령(만 18세)에 도달하여 종결이 되는 것과 연관된 결과로 확인할 수 있다.

■ 신규위탁가정

신규위탁가정 1,319세대 중 대리양육위탁가정이 798명(60.5%), 친인척위탁가정이 368명(27.9%), 일반위탁가정이 153명(11.6%)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리양육위탁가정은 전남이 81.3%, 강원이 73.2%로 높게 나타났으며, 친인척위탁가정은 광주가 45.0%, 경기가 41.9%로 높게 나타났다. 일반위탁가정은 울산 25.0%, 대전 20.0%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신규위탁아동과 동일하게 대리양육위탁가정은 도 단위 지역센터가, 친인척·일반위탁가정은 광역시 단위 지역센터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신규위탁부모연령은 대리양육위탁부모는 60~79세가 71.8%, 친인척·일반위탁부모는 40~59세가 각각 57.0%, 80.4%로 높게 나타났다. 신규위탁부모의 직업은 위탁부모의 직업과 동일하게 신규위탁부모 중 주 양육자의 직업을 나타낸 것이다. 파악되지 않는 세대(53.9%)를 제외하고, 대리양육위탁부모는 무직이 21.7%, 친인척·일반위탁부모는 전업주부가 각각 6.3%, 35.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일반위탁부모의 경우는 전문직이 14.4%, 기타가 13.1%, 종교인이 11.1% 순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신규위탁가정의 가정위탁 참여 동기와 연관된 결과로 확인할 수 있다. 신규위탁가정의 소득은 파악되지 않는 세대(70.7%)를 제외하고, 대리양육위탁가정은 50~100만원 미만인 8.5%, 친인척위탁가정은 100~150만원 미만인 6.0%, 일반위탁가정은 300만원 이상이 53.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혈연관계에서 아동을 위탁 양육하는 경우보다 비혈연관계에서 아동을 위탁 양육하는 가정이 경제적 수준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신규위탁가정의 참여동기는 파악 안되는 세대(45.4%)를 제외하고, 대리양육·친인척위탁가정은 혈연관계에서 아동을 위탁 양육하는 경우가 각각 47.1%, 47.3%로 높았으며, 일반위탁가정의 경우 사회적 이타심 실현이 57.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비혈연관계에서 아동을 위탁 양육하는 일반위탁가정의 경우 혈연관계로 인하여 아동을 위탁 양육하는 대리양육·친인척위탁가정의 경우보다 사회적 이타심 실현으로 인하여 아동을 양육하기에 소득 수준에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리양육·친인척·일반위탁가정은 위탁유형별 아동 및 부모의 특성이 다르게 도출되었다. 대리양육·친인척위탁가정의 경우 부모의 연령은 고연령이 대부분이었으며, 아동의 경우 청소년기 아동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일반위탁가정의 경우 부모의 연령은 40~50대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영·유아 연령이 많은 부분 차지하였다. 이에 유형별 특성에 맞는 서비스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대리양육·친인척위탁가정은 혈연관계로 인하여 아동을 위탁 양육하게 되는 경우 아동을 위탁 양육하려는 준비없이 아동을 맡게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심리적 서비스 지원 등 아동을 긍정적으로 양육하기 위한 지원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반위탁가정도 사회적 이타심 실현으로 아동을 위탁하기는 하지만 위탁부모의 연령이 40~59세가 많은 만큼 양육의 세대 반영을 위한 지속적인 서비스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3) 가정위탁서비스

#### ■ 지원서비스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위탁아동, 위탁부모, 친부모 등에게 상담 및 교육서비스 등을 제공한 현황을 살펴보면, 위탁부모 136,444건(50.7%), 위탁아동 83,795건(31.1%), 기타 41,386건(15.4%), 친가정 7,413건(2.8%)로 나타났다. 2013년대비 상담원이 증원된 만큼 서비스 건수도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위탁부모를 위탁유형별로 살펴보면 대리양육위탁부모서비스 74,972건(27.9%), 일반위탁부모서비스 40,449건(15.0%), 친인척위탁부모서비스 21,023건(7.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리양육위탁부모서비스가 27.9%로 가장 많은 서비스가 이루어졌지만 위탁부모 1인당 평균 서비스 제공 건수를 살펴보면 일반위탁부모가 25건, 대리양육위탁부모가 7건, 친인척위탁부모가 5건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즉 일반위탁부모에게 많은 서비스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유형별 제공되는 서비스의 시점이 대리양육·친인척위탁부모의 경우는 책정 이후이며, 일반위탁부모의 경우 책정 이전부터 진행되기 때문이다.

지역별로 기타 서비스를 제외한 아동 1인당 서비스 제공 건수를 살펴보면, 광역시 단위 지역센터가 도 단위 지역센터에 비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도 단위 지역센터가 물리적 이동 거리가 멀고, 상담원 수 대비 아동이 많기 때문이다. 이에 물리적 거리 및 아동 수를 대비한 상담원 인력배치의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볼 수 있다.

#### ■ 경제적서비스

국가는 위탁아동양육을 위해 양육보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아동의 양육을 거부하고, 연락이 두절된 친부모의 재산이 확인되거나, 친가정복귀를 위해 친부모와 연락을 하고 있는 경우 등 5.3%의 아동이 생계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대리양육·친인척위탁가정의 경우 국토교통부로부터 일반주택의 전세자금 및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을 지원받고 있는데, 2014년에는 총 201세대(대리양육위탁가정 120세대, 친인척위탁가정 81세대)가 지원을 받았다. 이는 2013년에 비해 24세대 줄어든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보호필요아동 수의 감소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디딤씨앗통장은 대부분 저소득층의 자녀인 위탁아동이 성인이 되었을 때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자산 형성의 목적으로 지원되고 있다. 이는 아동이 디딤씨앗통장에 저축을 하면 국가가 3만원 이내에서 아동의 저축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추가 적립해 주고 있으며, 월 평균 실가입아동은 10,596명이고, 매월 10,088명의 아동이 361,227,749원씩 적립을 하고 있다.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지원한 서비스는 상담원이 증원된 만큼 증가하였는데, 질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상담원 1인당 담당하는 사례 수를 줄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반위탁부모에 비해 대리양육·친인척위탁부모의 1인당 지원서비스를 늘리기 위해서는 서비스 지원 시기를 고려하여 책정 전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민·관의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대리양육·친인척위탁부모는 혈연관계로 인하여 아동 양육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아동을 양육하기 전 교육을 충분히 받고, 아동 양육의 질을 높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위탁부모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및 현실적인 아동 양육비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위탁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위탁부모의 연령은 천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시점이 많기 때문에 아동을 양육하기 위한 비용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아동 초기 양육 시 과도한 양육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초기정착금 지원 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정위탁아동 책정 시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동시에 책정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동시 책정이 되지 않아 생계비 지원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으며, 「2015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의해 보장시설 생활자에 대한 수급권자 범위 특례 적용으로 인한 부양의무자예외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생계비를 지원받지 못한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국민기초생활수급 담당 공무원 및 가정위탁 시·도 담당 공무원의 업무 협조를 통한 업무 진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4) 가정위탁 교육 및 홍보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실시한 교육 실적을 살펴보면, 기타교육을 2,956명, 대리양육위탁부모교육을 2,942명, 공무원교육을 1,509명, 일반위탁부모보수교육을 801명, 친인척위탁부모교육을 777명, 예비일반위탁부모교육을 501명이 이수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는 위탁부모교육뿐 아니라 보호필요아동의 가정 내 보호를 위한 가정위탁 관련 교육을 공무원에게도 활발히 진행함을 알 수 있다.

홍보실적을 살펴보면 홍보물을 이용한 홍보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일상생활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기타 홍보물이 81,015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를 제외한 인터넷을 활용하여 홍보를 한 경우도 25,644건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그 중 웹진을 활용하여 홍보를 하는 경우가 22,205건으로 높게 나타났다.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는 생활정보지가 3,903건, 방송(TV)가 2,871건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교육 및 홍보실적 또한 상담원이 증원된 만큼 2013년보다 증가하였으며, 특히 홍보에서는 전단, 기타 홍보물을 통한 홍보, 방송(라디오)를 통한 홍보, 웹진을 통한 홍보, 홍보행사가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동을 양육하기 위해 위탁부모교육뿐 아니라 공무원교육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가정위탁보호사업은 국가 사업을 민간에서 위탁받아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민·관의 협력이 중요한 사업이다. 이에 보호필요아동 발생 시 아동의 가정 내 보호를 위해서는 가정위탁책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교육 진행을 통하여 아동에 대한 건강한 성장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가정위탁보호의 경우 혈연관계인 대리양육·친인척위탁가정이 93.1%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혈연관계인 아동을 양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동을 양육하기 위한 환경 및 심리적 상황이 마련되어 있는 일반위탁가정의 비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이에 가정위탁의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인지도가 낮은 가정위탁에 대해 알리고, 일반 시민이 가정위탁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에 일반인들에게 접근성이 높은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홍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5) 가정위탁지원센터 업무량

전국 17개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수는 139명으로 2013년에 비해 15명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센터 당 평균 8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이는 2012년 8월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의해 직원배치기준(센터의 장 1명, 상담원 6명,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 1명, 자립지원전담인력 1명, 사무원 1명 이상을 두고, 관할지역 위탁아동 수가 400명을 초과할 때에는 200명 초과 시마다 상담원 1명을 추가 배치)을 2015년 8월까지 충족하도록 되어있어 증가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아직 배치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며, 2014년 기준 사무원 및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 배치가 되지 않은 지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사례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상담원 수는 평균 5명으로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의한 필수인력배치 시 평균 8명에 비해 적은 것으로 보인다. 상담원이 1인당 담당하는 사례 수는 164명, 126세대이며, 지원서비스는 448명에게 3,134건 제공, 홍보는 2,657건 진행으로 전년도보다 종사자 인원이 증가한만큼 전반적으로 1인당 담당 사례 수는 줄고, 지원서비스는 증가한 것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도 단위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는 1인당 199명, 151세대의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있어 광역시 단위의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 1인당 사례관리 수 115명, 90세대보다 2배 가량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물리적인 거리를 고려한 상담원 배치를 진행해야 과중의 업무가 주어지지 않을 것이며,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2012년 8월 개정된 아동복지법 직원배치기준에 의해 2015년 8월까지 인원이 100% 충원된다고 하더라도 14,340명의 아동을 142명의 상담원들이 사례관리를 진행하게 된다. 즉 1인당 100.9명의 아동을 담당하여 사례관리를 진행하게 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상담원 1인당 사례관리 기준은 10case 정도가 적정하다고 하였으나, 현재 개정된 법에 의해 인력이 100% 배치된다고 하더라도 그에 10배에 해당하는 아동 수를 한 상담원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2011 가정위탁제도 활성화를 위한 미국연수보고서,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하지만 2014년 기준으로 종사자는 필수인력배치 기준의 64.1%만 배치되었다. 특히 광역시·도 단위에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가 1개소씩만 설치되어 있기에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는 상담원 1인당 관리해야 하는 사례 수가 평균 164명이다. 이에 위탁아동들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른 직원배치기준을 준수해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한 명의 상담원이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사례 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광역시·도 단위의 거리상 위치를 고려하여 사례관리할 수 있는 적정 수를 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 2014 가정위탁보호 현황보고서

---

발행일	2015년 6월
발행처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주 소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119, 2층
연락처	TEL. 02) 796-1406 FAX. 02) 790-7266

---